

농림수산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SCM) 개발 연구

2010. 10.

RA  ET.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용상의 주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작성되었음.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3. 출처를 밝히면 본 보고서의 인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제할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얻어야 함.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지역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SCM)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0.

(주)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이사 박영범

□ 책임연구원 : 대 표 박 영 범

□ 연 구 원 : 지사장 임 성 규

팀 장 정 상 택

부팀장 이 영 진

□ 연구보조원 : 컨설턴트 김 현 준

컨설턴트 박 혜 영

컨설턴트 김 소 진



# 【목 차】

## 제1부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	7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1
3. 연구 추진 .....	13

## 제2부 학교급식 현황 및 식재료 이용실태

1. 학교급식 관련 제도의 변화 .....	19
2. 학교급식 일반현황 .....	31
3.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현황 .....	37
4.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	44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	56
6. 소결,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와 학교급식시스템 구축 .....	68

## 제3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1. 총괄 .....	75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및 운영형태 .....	78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93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	125
5. 산지유통전문시설의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 분석 .....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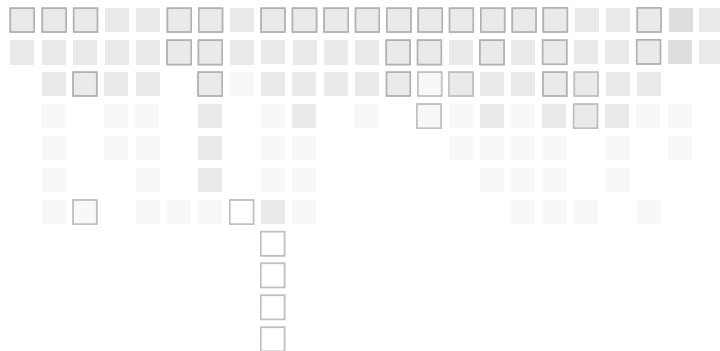
## 제4부 지역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1. 지역 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	139
2. 지역 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전략과제 .....	143

## 제5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1. 주요 이슈별 대응방향 총괄 .....	161
2. 지역 우수 농산물 확보 .....	170
3.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효율적 공급시스템 .....	177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의 핵심기능 .....	180
5.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학교 역할 및 과제 .....	184
6.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제안 .....	189





# 제1부

## 연구개요

---



# 1. 연구 배경

## 1.1. 안전한 식재료,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요구 지속

### □ 직영급식의 틀 구축, 지속되는 학교급식 개선 요구

-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2003년 초·중·고교 전면급식 실시
-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통해 논란이 지속되던 위탁급식이 설 자리를 잃고 직영급식 중심의 학교급식 체계 구축
- 위탁급식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형성,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학교급식이 지향하는 기본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윤’ 중심의 운영원리 및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제도적 제재를 받고 쇠퇴의 길을 걸음
- 직영급식 학교수가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개선 요구는 여전함

### □ 현행 식재료 공급 방식의 문제점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제약 및 공공조달의 제도적 한계가 나타남
- 최저가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의 조달방식은 저가 식재료 납품체계를 고착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 취지와 괴리가 발생
- 공동구매제도 권장 등 제도적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식재료 조달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보다는 가격 및 편의성 중심의 공급체제로 귀결되었음

□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등 우수식재료에 관한 요구 여전

- 학교급식 조례제정 등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관련 예산 증대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공급, 생산자단체 또는 학교에 대한 차액지원 형태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개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확대와 맞물려 식재료의 품질개선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음

## 1.2. 농식품 정책사업과 학교급식의 연계, 효율성 제고

□ 다품목 소량 발주, 물류시간 제약으로 효율성 저하

- 식재료 품질 외 학교급식이 갖는 독특한 품목 및 물류체계는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 생산·유통 주체의 진입을 저해
- 개별 단위학교별 발주체계에 따른 표준화·규격화 미흡, 제한된 입고 시간에 의한 과도한 물류비, 서로 다른 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의 적용 등이 대표인 효율성 저해 요인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 제정·보급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이 귀결되는 계약의 주체는 개별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현실적 개선은 미미함

□ 농식품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과 주체의 가능성 확인

- 2000년부터 시작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약정에 의한 원물조달과 규모화,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관리와 규격화, 공동계산에 의한 농

업인 소득증대를 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정책사업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사업 등을 연계한 산지유통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

- 또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학교급식 기반시설을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활용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교육계와 농업계가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육성 정책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높아졌으나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육성정책에서 장기 발전 방향으로 설정한 학교급식과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농식품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과 주체의 결합으로 효율성을 높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정책에 따라 발굴·육성된 산지유통주체 등은 생산자단체의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갖춰 학교급식 사업의 효율적 공급주체가 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을 필두로 GAP농산물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관리 및 표시, 인증 농산물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그대로 적용되어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작부체계 마련 등 현실적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된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의미가 큼

### 1.3.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농산물 연계 논의 활성화

-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의 품질에 관한 관심 증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증대 및 지역의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의 공급주체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음
- 특히, 학교급식법으로 제도화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급식의 가장 중요한 이슈 및 화두로 부각됨
- 지역 내에서 교육계, 농업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각계각층의 참여로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 공급시스템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효과적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모색

-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는 관행적 식재료 구매와 다른 안전성 및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제로 생산, 수발주, 물류, 거래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개념을 도입하고 체계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식재료 공급 외 농업·농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은 농업·농촌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및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음
- 생산자단체 및 농업계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농업·농촌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식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임
- 즉,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업이 담당하는 본연의 의무인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2.1. 연구 목적

- 학교급식 현황 분석 및 지역농산물 활용 증대 방안 마련
- 학교급식과 산지유통전문시설(APC 등)의 연계 방안 마련
-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연계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
- 지역농산물 사용 식재료의 품질관리 방안 마련

### 2.2. 연구 내용

- 학교급식 일반 현황 및 식재료 이용 실태 분석
  - 학교급식 일반 현황 분석 : 실태, 이슈 분석
  -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 현황 : 식재료 비중 및 형태, 공급 및 구매 방식, 전산정보화 실태
  -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단기적 개선 방안 및 중장기적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시·군 단위 특화품목과 광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전 기초 자료 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 서울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스템 사례 분석
  - 사례 분석을 통한 현재 학교급식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산지유통전문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유통센터로의 기능

### 확대 가능성 분석

- 학교급식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 □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Vision) 설정

- 생산과 소비, 농식품산업과 교육의 “상생”을 통한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비전 제시
- 비전에 따른 구체적 목표 제시

###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효과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마련

- 상업성을 배제한 생산자단체와 현장 학교간의 직거래 방안
- 가용한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확보 및 효율적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 마련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상 기능을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및 물류 등 사업실행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단위별 역할 및 실행과제 도출
- 농식품 인증제도와 연계한 단계적 사업 확장 구상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안



### 3. 연구 추진

#### 3.1. 과제별 연구 방법

- 학교급식 일반 현황 및 식재료 이용 실태 분석
  - 학교급식 관련 각종 문헌 조사 실시
  -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연구 및 연계기관 등에 제시된 각종 D/B 수집 및 분석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 학교급식 사례분석을 위한 조사지 개발 (조사지 포함 내용 : 급식주체 사업범위 및 규모 등 사업현황, 원물조달(계약재배), 협의체운영, 계약방식, 공급단가결정, 수·발주공급물류, 검수·검품 및 클레임 대응, 정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제도, 기타 등)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급식 유형별 대표 사례 선정
  - 선정 사례에 대한 학교급식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D/B 수집, 종합 분석
-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및 목표 설정
  - 학교급식 실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농산물 연계 및 비전/목표 설정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학교급식의 다양한 주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 선정 : 생산주체(생산자 단체 등)-사업주체(학교급식 사업주체), 소비주체(학교급식 영양교사, 학부모 등)-지원주체(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기타주체(학교 및 연구소 등 전문가)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과제 해결 방안 자문 및 의견 수렴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효과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

- 학교급식 실태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익성을 전제로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학교급식의 다양한 주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 선정 : 생산주체(생산자 단체 등)-사업주체(학교급식 사업주체), 소비주체(학교급식 영양교사, 학부모 등)-지원주체(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기타주체(학교 및 연구소 등 전문가)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과제 해결 방안 자문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 공무원 외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협의회 실시

[전문가 협의회 참석자 현황]

이름	소속 및 직책	비고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용미	(사)소시모 성남지부 국장	
김인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사업팀장	
김재민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팀 과장	
김평전	농림수산물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김해곤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민	경기도청 친환경농업팀 팀장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이경미	전국학교영양사회 부회장	
이연숙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주무관	
이택용	농협중앙회 친환경유통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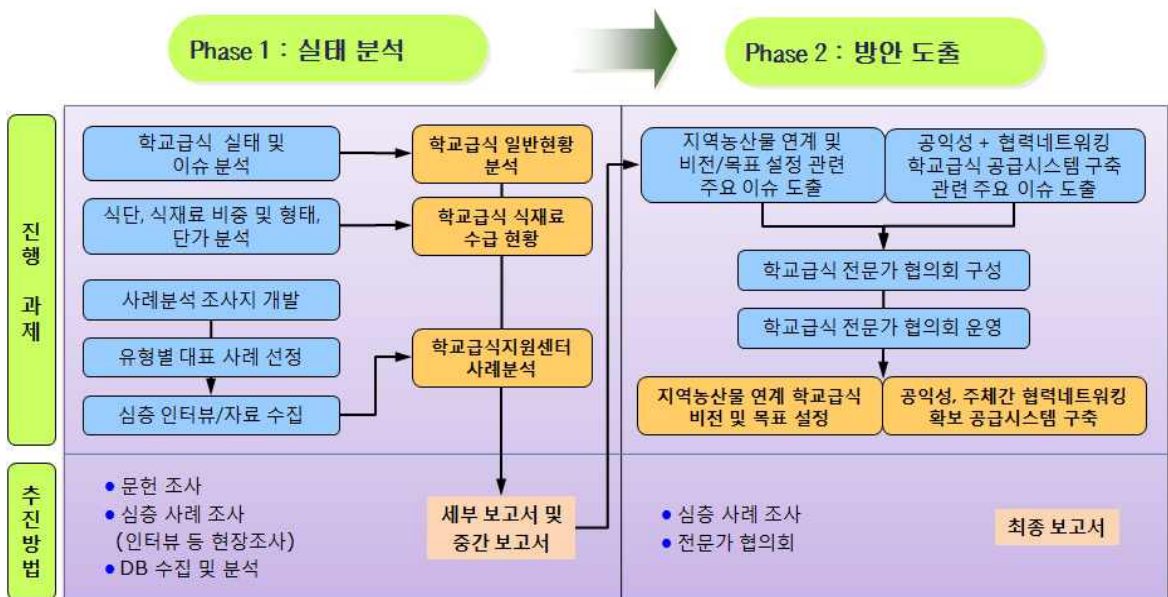
이름	소속 및 직책	비고
정일정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	
정재훈	(사)클린팜당 사무국장	
정희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무관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 2010년 10월 1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 개발 연구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청취

### 3.2. 연구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3개월
- 연구 추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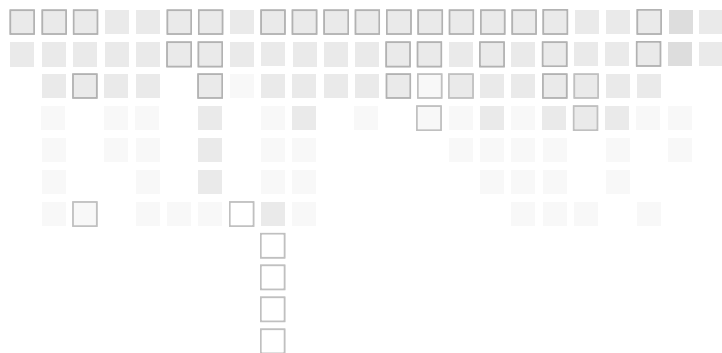
#### [연구 추진 단계]



- 연구추진은 2단계로 단계를 설정하여 진행
- **1단계** :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분석으로 학교급식 일반현황, 식재료 수급 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분석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 시사점 도출 중심
- **2단계** :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방안 도출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비전 및 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 세부 추진 일정

추진 과제	7월		8월		9월		10월
	상	하	상	하	상	하	상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	■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 일반현황 및 식재료 이용실태분석							
- 학교급식 일반현황 분석	●						
-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 현황	●	●					
-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스템 사례 분석			●	●			
- 사례분석을 통한 운영시스템 시사점 도출				●			
- 산지유통전문시설의 급식활용 가능성 분석			●	●	●	●	
<input type="checkbox"/> 중간보고회				■			
<input type="checkbox"/>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설정							
- 학교급식 비전 및 목표 설정				●			
- 비전 목표에 따른 주요 이슈(과제) 도출				●			
<input type="checkbox"/>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마련							
- 공급체계 구축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 생산자단체와 학교간 직거래 방안						●	
- 고품질 농산물의 확보 및 효율적 공급시스템						●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 기능						●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학교 역할 및 과제						●	
- 농식품사업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안						●	
<input type="checkbox"/> 최종보고회							■



## 제2부

# 학교급식 현황 및 식재료 이용실태

---



# 1. 학교급식 관련 제도의 변화

## 1.1. 학교급식 변천과정

### □ 학교급식법 제정 도입기

- 학교급식법 제정(1981년)이전의 학교급식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재해 아동의 구호를 위해 UNICEF 등 외국원조기관의 농산물원조로 초등학교에 빵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시작
  - 이후 1967년 학교보건법(법률 1928호, 1967. 3.20) 제12조에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라는 학교급식의 실시근거를 명시
  - 1977년 학교급식규칙이 별도로 제정(문교부령 제401호, 1977. 1.14)되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8년에는 학교급식규칙이 개정(문교부령 제432호, 1978. 11.23)
- 학교급식법 제정(1981년)이후의 학교급식
  - 학교급식법령의 제정(법률 제3356호, 1981. 1.29)
    - 1980년대 복지국가 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인 구호급식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됨
    -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의 전환과 함께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9월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 104060호, 1981. 9.8)
    - 1993년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제정(문교부령 제637호, 1993. 8.10)됨으로써 학교급식 확대실시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2007년 1월 19일까지 운영됨

[학교급식의 변천과정(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까지)]

연도	변천과정	주요내용
1953 ~ 1972	빵 무상급식 실시	전쟁 재해아동 구호를 위해 초등학교 빵 무상급식 실시
1968	자체조리급식 시범실시	도시지역에서 학교 자체조리 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
1972	농촌 자활급식 실시	농촌에서 자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자활급식 실시
1973 ~ 1977	빵·우유급식 실시	정부예산으로 빵·우유급식 실시
1977	빵 급식 폐지	식중독 사고 이후 빵 급식 전면 폐지
1981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 제 3356호)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1981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0460호)	학교급식 실시 법적기반 마련
1992	장애아동 급식 전면실시	장애아동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급식 전면실시
199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문교부령 제 637호)	학교급식 확대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마련
1993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 제 4593호)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한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1996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 제 5236호)	위탁급식제도 도입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급증
1998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제 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1999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 601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근거 규정마련
1999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2학기부터 고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1998 ~ 2002	중학교 급식추진	초·중·고등학교 연계급식을 위한 급식학대 요구증대로 중학교 급식 추진
2003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 6935호)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
2003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 18188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근거 마련
2003	학교급식 전면실시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 실시
2006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위탁급식이 직영으로 전환



## □ 학교급식 전면화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 ■ 학교급식 전면화

-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03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실시됨

### ■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전개

- 2002년 2월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농민단체들임
- 이러한 고민을 조례 제정 운동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에 알린 것은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들로서, 같은 해 5월 전북의 23개 단체가 모여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례(안)를 만들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제정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됨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2003년 전라남도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성공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발의운동뿐만 아니라 의원발의(경북, 경남), 단체장 발의(대전)에 의한 조례제정이 확산되었고 이에 주민발의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됨
- 자생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은 2003년 11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의 발족으로 전국적인 운동의 구심점을 갖게 됨
- 이후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인천시, 제주시가 주민발의 조례제정, 경기도와 서울시의 주민발의 청구 및 117개(광역 16, 기초 101) 지자체에서 주민발의 조례 청구가 잇따르는 등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진행

-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직영전환
  - 2003년 3월 서울지역 14개학교(경기 2개학교)에서 1,800여명의 학생이 감염되는 동시다발적인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
  -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급식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 2003년 3월 위탁급식 위생사고 이후 사회의 직영전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급식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추진
    - 2003. 4월 국회 교육위원회 및 2003년 국정감사 요구사항
    - '03 ~ '06년(4년간) 681개교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1,495억원의 예산 투입
  - 집단 식중독사고 발생 후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
  - 2003년 출범된 '학교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위탁급식의 폐지와 직영급식전환,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우리농산물 사용 등으로 정하고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끌어 냄
  - 학교급식법개정('06.7.19)으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강제화 되면서 '07~'09년 말까지 3년간 1,166개교가 직영으로 전환됨(교내위탁1,105교, 외부위탁 61교)

##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2006년)

- 개정배경
  - 양적인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정책에서 질적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식정책으로의 전환
  - 2006년 수도권 학교에서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및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주요 변경내용

(1) 학교급식 경비부담제도 변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학교급식 식품비의 시설·설비비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을 확대
- 학교설립경영자의 급식운영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
-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의 폐지

(2)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설

- 학교급식위원회의 의무규정화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확대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보호대상 학생, 도서·벽지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식재료의 최저 품질기준과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정
- 식재료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품질인증표시, 지리적 특상품의 지리적 표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
- 학교급식관계공무원에게 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청 차원의 지도·점검 강화

(5) 직영급식 원칙

- 학교급식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단,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부위탁방식을 도입
-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업무위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더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

(6) 학교급식관련 징계 및 처벌조항 도입

- 식재료구입 등 학교급식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에게는 징계, 학교급식공급자에게는 법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1.2.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수립

### □ 수립배경

- 급격하게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추어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인식 확대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급식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반 취약
  - 학교급식 업무과중 및 지도·감독 시스템 미흡
  - 학교급식 소요재원 확보의 어려움 발생
-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과 만족도를 높여 교육복지시책의 중심축으로 정착시키고 및 발전을 추진

□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개요

▪ 학교급식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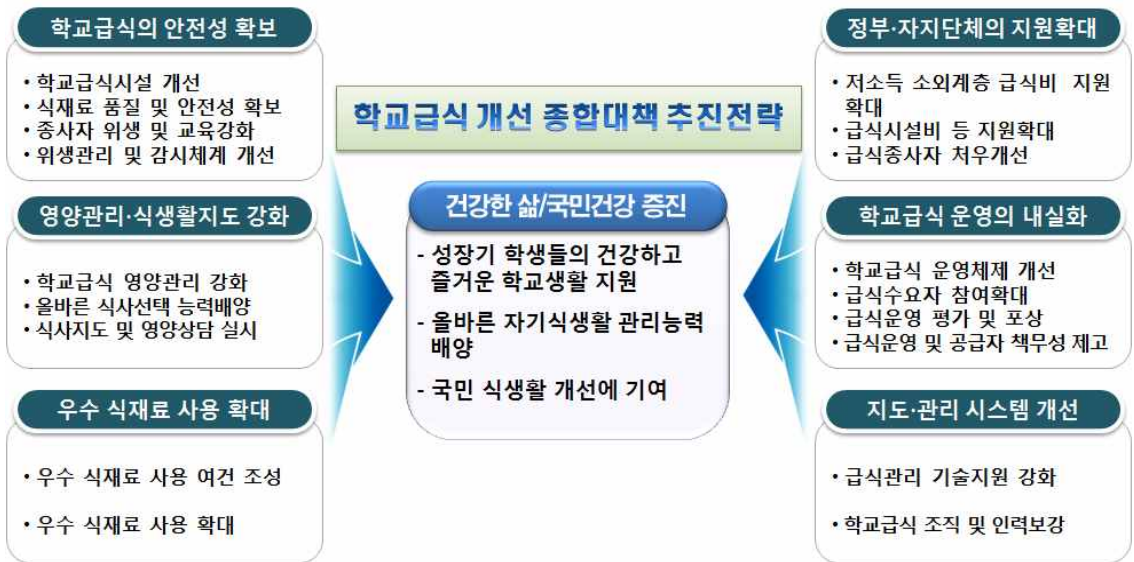


▪ 학교급식 개선목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학교급식 개선목표]

구분	2006년	2011년	비 고
학교급식 만족도	55%	65%	
직영급식 실시율	86.5%(9,331개교)	97.3%(10,497교)	
식중독 발생건수	4건	1건	급식 10만 건당
학교급식 현대화율	24.5%(2,205개교)	35%(3,215개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율	25%(2,254개교)	100%(9,186개교)	‘10년까지 완료
식당 미보유 학교비율	23.7%(2,555개교)	20%(2,156개교)	
학생 고도비만율	8명	8명	학생 1,000명당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	77.1%	75%	
학교급식비 지원율	17%(1,312천명)	21%(1,633명)	특수, 농산어촌포함
영양상담 실시율	-	50%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3,784교/563억원	6,000개교/1,000억원	

■ 추진전략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으로의 전환 강조

■ 직영전환을 위한 대책마련

- 대형 식중독 사고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되어 위탁급식 학교의 3년내 직영전환 또는 부분위탁 전환이 의무화 됨
- 학교에서는 위생사고 책임문제 및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직영전환을 기피하고 있는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직영전환추진에 따른 계획수립 및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

■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및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

- 경쟁입찰시 최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품질과 신선도 등 질적인 측면의 한계가 발생됨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을 통한 우수식재료 구매, 학교식재료 공동구매제도 등 식재료 구매방법의 다양화 추진
- 개별 학교단위의 식재료 구매물량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안전하

고 질 좋은 식재료 구매가 어려움에 따라 시·군·구별 지역거점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우수식재료 지원방안을 모색

###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수립

#### □ 개요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07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07~'10)' 수립에 부응하여,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음

#### □ 주요 추진과제

- 학교급식의 질 향상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학교 급식운영의 내실화,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강화,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 추진
-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 우수식재료 사용 관련 주요 추진방침

- 2006.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07~'09년 말까지 943개교의 직영 전환을 추진
-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 단,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학교별 계약종료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별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운

영 확대 및 자치단체별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적극 추진,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생산 등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의 사용 확대·유도
- 자기고장 농·축·수산물 사용운동 전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지역의 생산자 표시(실명제), '교육농장' 체험학습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
- 식재료 원산지 심의·확인 및 표시제 시행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및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검수는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가 입회하여 복수 대면검수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 및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

#### 1.4. 식생활 교육 지원법(2009)의 제정

##### □ 제정배경

- 식생활 및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부적절한 식생활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사례 증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식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민교육 추진의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 전통 식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품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어촌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 가정과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지원을 명시
-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보완, 기본이념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기구로써 농림수산물부 장관 소속의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1.5.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 수립배경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09. 11월)을 계기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주요내용

-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시행

-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녹색생활 지침'의 개발·보급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유도 및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녹색 식생활 정보114'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으로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의 종합제공
- 지자체의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교육조례' 제정 권장
- 식생활 교육을 통한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
  - '가족 밥상의 날', '식생활 교육의 달'의 지정 및 '가정식생활 수첩' 개발과 보급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천
  - 유치원·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한 '식생활 연구 학교'의 지정과 '녹색 식생활체험 교실' 운영
- 농산어촌과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식교육 추진
  -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연계한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및 운영
  - 팜스쿨, 농촌교육농장, 전통식품 체험학교 등과 연계한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운동 차원의 가족·학교·회사별 체험농장 갖기 운동 전개

## 2. 학교급식 일반현황

### 2.1. 학교급식 실시 현황

#### □ 급식 학교수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312교 중 11,303교에서 급식실시(99.9%)
  - 급식 학교 수 : ('07) 11,106개교 → ('08) 11,225개교 → ('09) 11,303개교
- 급식운영 형태
  - 직영급식 10,262교(90.8%) : 단독조리 7,816교(76.2%), 공동조리 2,446교(23.8%)
  - 위탁급식 1,041교(9.2%) : 교내조리 954교(91.6%), 외부운반 87교(8.4%)

#### □ 급식 학생수

- 1일 평균 734만명 급식(전체학생 대비 98.5%)
  - 급식 학생 수 : ('07) 760만명 → ('08) 745만명 → ('09) 734만명
- 교당 평균 급식학생수 : 649명

#### □ 학교급별 급식현황

- 학교급별 운영형태는 초등학교가 99.9%, 특수학교가 98.6% 직영운영형태. 중학교 86.1%, 고등학교 73.1%로 상대적으로 낮음

#### [학교급별 급식현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830	5,830	100	3,483	3,446	98.9	5,822(99.9)	8(0.1)
중 학교	3,106	3,104	99.9	1,980	1,971	99.5	2,671(86.1)	433(13.9)
고등학교	2,226	2,222	99.8	1,966	1,900	96.6	1,624(73.1)	598(26.9)
특수학교	150	147	98.0	23	22	95.6	145(98.6)	2(1.4)
계	11,312	11,303	99.9	7,452	7,339	98.5	10,262(90.8)	1,041(9.2)

\*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위탁급식 학교수 : ('05) 1,655개교(15.4%) → ('07) 1,325개교(11.9%) → ('09) 1,041개교(9.2%)

□ 시도별 급식현황

▪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시도별 급식학교 및 학생수]

구분 시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	전체	급 식					%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294	584	371	304	26	1,285	99.3	1,321,858	593,455	350,259	338,395	4,620	1,286,729	97.3
부산	623	296	171	143	13	623	100	488,963	211,692	134,857	140,798	1,616	488,963	100
대구	437	215	123	91	8	437	100	398,891	162,661	109,636	104,225	1,213	377,735	94.7
인천	469	225	126	111	7	469	100	423,286	180,603	114,755	107,398	1,046	403,802	95.4
광주	299	145	84	65	5	299	100	263,513	121,472	70,222	70,902	917	263,513	100
대전	289	138	86	61	4	289	100	250,774	115,242	66,375	65,011	669	247,297	98.6
울산	229	116	61	49	3	229	100	170,792	87,703	29,821	52,736	443	170,703	99.9
경기	2,102	1,120	559	397	26	2,102	100	1,827,614	877,889	482,091	438,466	3,258	1,801,704	98.6
강원	638	353	164	114	7	638	100	221,076	105,359	58,174	56,384	973	220,890	99.9
충북	480	258	131	82	9	480	100	236,382	111,711	63,070	58,167	1,333	234,281	99.1
충남	746	431	192	117	6	746	100	298,591	143,906	77,908	73,428	871	296,113	99.2
전북	760	417	204	130	9	760	100	288,892	135,286	77,765	74,742	1,099	288,892	100
전남	842	434	247	154	7	842	100	278,039	130,567	75,097	71,305	879	277,848	99.9
경북	975	497	278	193	7	975	100	378,062	179,662	98,573	98,401	1,426	378,062	100
경남	948	495	265	181	7	948	100	510,492	243,047	136,627	126,302	1,256	507,232	99.4
제주	181	106	42	30	3	181	100	95,456	46,019	25,331	23,669	437	95,456	100
<b>계</b>	<b>11,312</b>	<b>5,830</b>	<b>3,104</b>	<b>2,222</b>	<b>147</b>	<b>11,303</b>	<b>99.9</b>	<b>7,452,681</b>	<b>3,446,274</b>	<b>1,970,561</b>	<b>1,900,329</b>	<b>22,056</b>	<b>7,339,220</b>	<b>98.5</b>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수 기준 경기(24.5%), 서울(17.7%), 경남(6.8%)의 순
- 학생수 기준 광역시 44.5%,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47.9%차지

## 2.2. 급식소요 비용

### □ 예산규모

#### [부담주체별 예산]

구 분	금 액	비율
보호자 부담금	3조187억원	(62.8%)
교육비특별회계	1조5,170억원	(31.6%)
지방자치단체지원금	2,202억원	(4.6%)
발전기금/기타	481억원	(1.0%)
계	4조8,040억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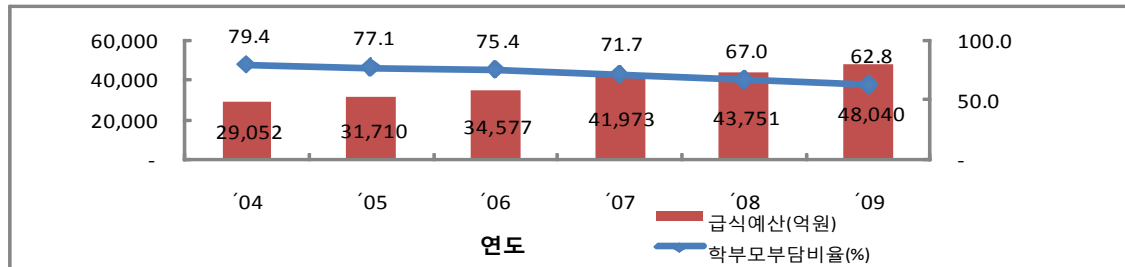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지출항목별 예산]

구 분	금 액	비율	
식품비	2조7,143억원	(56.5%)	
운영비	인건비	1조1,724억원	(24.4%)
	연료비 기타	3,757억원	(7.8%)
	시설 유지비	265억원	(0.6%)
	소 계	1조5,746억원	(32.8%)
시설 설비비	5,151억원	(10.7%)	
계	4조8,040억원	(100%)	

\*자료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연도별 급식예산 및 보호자 부담비율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급식예산은 지속적으로 향상, 보호자 부담비율은 지속하락
-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서 2011년 목표했던 75%를 초과하여 보호자 부담금이 식품비대비 117.4%수준을 보임

□ 시도별 급식예산 및 부담주체별 현황

- 시도별 급식예산 현황

[시도별 급식예산 현황]

구분	시도	학생수	항목별 예산액							
			식품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시설 (백만원)	계 (백만원)	1인당 단가 (천원)	1식당 식품비 (원)		
	서울	1,321,858	428,985	259,352	89,286	777,623	588	1,803		
	부산	488,963	141,074	71,233	27,717	240,024	491	1,603		
	대구	398,891	110,552	66,623	23,469	200,644	503	1,540		
	인천	423,286	146,191	74,360	32,839	253,390	599	1,919		
	광주	263,513	106,735	52,181	21,524	180,440	685	2,250		
	대전	250,774	93,451	43,852	4,719	142,022	566	2,070		
	울산	170,792	58,179	38,274	9,019	105,472	618	1,892		
	경기	1,827,614	703,667	400,428	117,093	1,221,188	668	2,139		
	강원	221,076	77,717	48,755	37,706	164,178	743	1,953		
	충북	236,382	92,394	58,863	13,339	164,596	696	2,171		
	충남	298,591	125,199	83,768	18,287	227,254	761	2,329		
	전북	288,892	112,383	63,477	11,606	187,466	649	2,161		
	전남	278,039	138,076	63,451	29,602	231,129	831	2,759		
	경북	378,062	145,238	105,711	20,307	271,256	717	2,134		
	경남	510,492	199,259	123,669	29,810	352,738	691	2,168		
	제주	95,456	35,232	20,562	28,767	84,561	886	2,051		
	계	7,452,681	2,714,332	1,574,559	515,090	4,803,981	645	2,023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가공

- 시도별 급식예산은 경기도가 1조 221억원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으며, 급식예산 중 7,030억원(57.6%)이 식품비로 편성됨(식품비 전체평균 56.5%)
- 1식당 식품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759원)로 1식당 식품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대구(1,540원)보다 1,219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식품비(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평균 1,817원)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189원)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담주체별 현황

[시도 부담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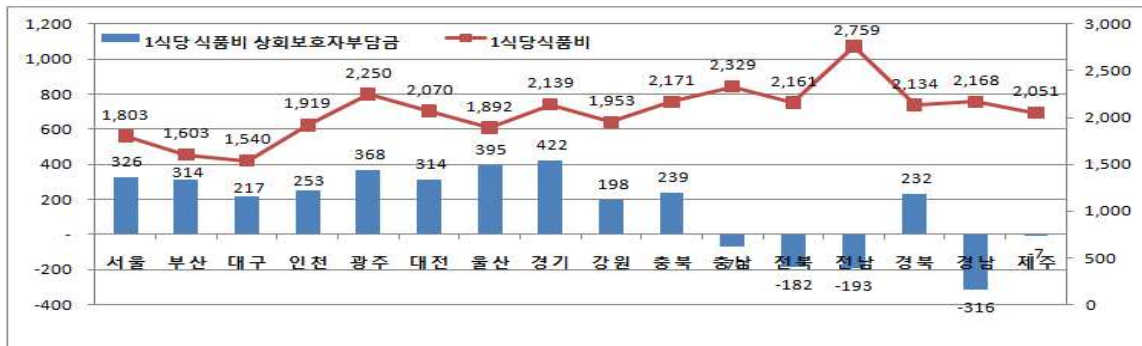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시도	보호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 등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506,515	65.1%	261,059	33.6%	8,398	1.1%	1,651	0.2%	767,672.7
부산	168,761	70.3%	64,632	26.9%	2,562	1.1%	4,069	1.7%	233,490.2
대구	126,162	62.9%	65,201	32.5%	2,023	1.0%	7,258	3.6%	191,458.4
인천	165,461	65.3%	70,822	27.9%	12,688	5.0%	4,419	1.7%	236,376.2
광주	124,177	68.8%	50,568	28.0%	3,038	1.7%	2,657	1.5%	174,841.8
대전	107,607	75.8%	29,359	20.7%	3,645	2.6%	1,411	1.0%	137,062.5
울산	70,311	66.7%	33,251	31.5%	936	0.9%	974	0.9%	103,660.2
경기	842,521	69.0%	312,882	25.6%	56,434	4.6%	9,351	0.8%	1,155,497.6
강원	85,593	52.1%	71,048	43.3%	6,486	4.0%	1,051	0.6%	156,736.4
충북	102,543	62.3%	55,554	33.8%	4,171	2.5%	2,328	1.4%	158,193.1
충남	121,414	53.4%	85,166	37.5%	19,588	8.6%	1,086	0.5%	206,670.9
전북	102,923	54.9%	64,411	34.4%	18,813	10.0%	1,319	0.7%	167,423.3
전남	128,403	55.6%	69,572	30.1%	31,146	13.5%	2,008	0.9%	198,060.7
경북	160,978	59.3%	90,304	33.3%	15,942	5.9%	4,032	1.5%	251,374.6
경남	170,191	48.2%	149,140	42.3%	29,650	8.4%	3,757	1.1%	319,421.5
제주	35,112	41.5%	44,077	52.1%	4,675	5.5%	697	0.8%	79,282.6
계	3,018,672	62.8%	1,517,046	31.6%	220,195	4.6%	48,068	1.0%	4,537,222.7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가공

- 보호자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75.8%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시로 41.5% 비율을 보임
  - 보호자 부담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41.5%), 강원(52.1%), 충남(53.4%), 전북(54.9%), 전남(55.6%), 경남(48.2%)이며 그 이유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됨<sup>1)</sup>
  - 교육청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로 52.1%를 나타내고, 대전이 2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당해연도 시설비 투자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추측됨
  -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전남이 13.5%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0.9%에 불과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식품비 상회 보호자 부담금 현황

### [식품비 상회 보호자 부담금]



\*자료 :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가공

- 학교급식에서의 보호자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정책적 과제이며 한단계 도약을 위한 목표는 식품비 수준과의 비교임
- 식품비와 보호자 부담금의 차이가 가장 큰 경기도로 422원. 경남, 전남 등은 식품비에 비해 보호자 부담금이 오히려 작았음.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무상급식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결과임

1) 2010. 2. 1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자료 참고 : '09 농산어촌 1,812개교, 24만명, 887억원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농산어촌(일부지원) 1,952개교, 58만명, 474억원 지원



### 3.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현황

#### 3.1. 식재료 비중 및 형태

##### □ 부류별 식재료 사용현황

- 부류별 식재료 사용현황은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광역학교급식 사례를 기준으로 추정(경기도)
  - 사례지역자료 : 2010년 1학기 초중 76개교(73,081명) 농산물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전국 연간사용량 추정분석
- 경기도 농산물 식재료 사용실적 추정분석 결과

##### [경기도 부류별 농산물 연간사용 예상물량]

(단위 : kg)

구 분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 연간 사용예상물량	비 율
과채류	7,591,980	23.6%
조미채소류	6,051,134	18.8%
근채류	3,927,745	12.2%
서류	3,517,389	11.0%
엽채류	3,472,103	10.8%
잡곡류	2,482,376	7.7%
과일류	2,000,762	6.2%
나물류	1,393,951	4.3%
버섯류	1,290,884	4.0%
임산물류	180,851	0.6%
양념류	97,097	0.3%
건과류	67,420	0.2%
기타	24,874	0.1%
특용작물류	8,268	0.0%
총합계	32,106,833	100.0%

\* 주 : 2010년 경기도 안성(안성마춤농협) 1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실적자료 추정분석결과

- 경기도의 농산물 연간 사용량은 32,106톤으로 추정됨(가공식품, 축산, 수산 제외)

□ 경기도 월별, 부류별 농산물 사용 추정치<sup>2)</sup>

(단위 : kg)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과채류	283,860	659,095	746,401	774,827	1,226,003	693,223	314,110	930,119	714,306	714,306	535,730	7,591,980
조미채소류	223,327	689,050	722,986	575,300	692,593	412,118	223,327	669,982	669,982	669,982	502,487	6,051,134
근채류	146,485	457,540	463,279	389,641	447,359	229,001	146,485	439,455	439,455	439,455	329,591	3,927,745
엽채류	128,772	399,974	403,555	344,949	396,790	220,601	128,772	386,317	386,317	386,317	289,738	3,472,103
서류	128,952	427,105	398,143	329,589	392,582	261,362	128,952	386,855	386,855	386,855	290,141	3,517,389
과일류	73,840	271,132	302,020	184,022	128,912	140,768	76,136	228,408	216,554	216,554	162,416	2,000,762
잡곡류	92,356	294,277	293,335	242,676	277,987	150,381	92,356	277,069	277,069	277,069	207,802	2,482,376
나물류	51,818	165,766	168,929	135,986	151,131	85,553	51,818	155,453	155,453	155,453	116,590	1,393,951
버섯류	47,530	145,364	153,922	129,032	142,038	90,759	47,530	142,589	142,589	142,589	106,942	1,290,884
임산물류	6,722	19,734	18,624	16,365	25,941	11,121	6,722	20,166	20,166	20,166	15,124	180,851
양념류	3,615	11,529	10,848	9,265	11,741	5,809	3,615	10,846	10,846	10,846	8,134	97,097
견과류	2,340	7,575	5,672	6,282	8,548	8,343	2,340	7,019	7,019	7,019	5,264	67,420
기타	925	3,494	3,048	2,046	2,513	1,515	925	2,775	2,775	2,775	2,081	24,874
특용작물류	222	625	753	555	733	2,658	222	666	666	666	500	8,268
총합계	1,190,765	3,552,260	3,691,515	3,140,535	3,904,871	2,313,213	1,223,310	3,657,719	3,430,053	3,430,053	2,572,540	32,106,833

- 사례지역의 월별 농산물 사용실적을 추정분석한 결과 방학기간이 포함된 2월, 8월 사용물량이 가장 낮음
- 부류별로 가장 많은 물량을 나타내는 것은 과채류로 7,591톤이며 조미채소 6,051톤, 근채류 3,927톤의 순임

2) 사례지역의 3~7월 자료는 실제 사업량이며 2월, 8월 방학이 포함된 달은 3~6월 평균물량의 1/3수준으로 추정분석하였고, 9~11월은 3~6월 평균물량, 12월은 월평균 물량의 3/4수준으로 추정분석 하였음

\*\* 경기도 학교급식인원수 1,827,614명을 기준으로 인당 농산물 사용물량을 기준하여 추정분석

□ 경기도 월별, 부류별 농산물 1인당 평균 사용량 추정

(단위 : kg)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과채류	0.1553	0.3606	0.4084	0.4240	0.6708	0.3793	0.1719	0.5089	0.3908	0.3908	0.2931	4.1540
조미채소류	0.1222	0.3770	0.3956	0.3148	0.3790	0.2255	0.1222	0.3666	0.3666	0.3666	0.2749	3.3109
근채류	0.0802	0.2503	0.2535	0.2132	0.2448	0.1253	0.0802	0.2405	0.2405	0.2405	0.1803	2.1491
엽채류	0.0705	0.2189	0.2208	0.1887	0.2171	0.1207	0.0705	0.2114	0.2114	0.2114	0.1585	1.8998
서류	0.0706	0.2337	0.2178	0.1803	0.2148	0.1430	0.0706	0.2117	0.2117	0.2117	0.1588	1.9246
과일류	0.0404	0.1484	0.1653	0.1007	0.0705	0.0770	0.0417	0.1250	0.1185	0.1185	0.0889	1.0947
잡곡류	0.0505	0.1610	0.1605	0.1328	0.1521	0.0823	0.0505	0.1516	0.1516	0.1516	0.1137	1.3583
나물류	0.0284	0.0907	0.0924	0.0744	0.0827	0.0468	0.0284	0.0851	0.0851	0.0851	0.0638	0.7627
버섯류	0.0260	0.0795	0.0842	0.0706	0.0777	0.0497	0.0260	0.0780	0.0780	0.0780	0.0585	0.7063
임산물류	0.0037	0.0108	0.0102	0.0090	0.0142	0.0061	0.0037	0.0110	0.0110	0.0110	0.0083	0.0990
양념류	0.0020	0.0063	0.0059	0.0051	0.0064	0.0032	0.0020	0.0059	0.0059	0.0059	0.0045	0.0531
견과류	0.0013	0.0041	0.0031	0.0034	0.0047	0.0046	0.0013	0.0038	0.0038	0.0038	0.0029	0.0369
기타	0.0005	0.0019	0.0017	0.0011	0.0014	0.0008	0.0005	0.0015	0.0015	0.0015	0.0011	0.0136
특용작물류	0.0001	0.0003	0.0004	0.0003	0.0004	0.0015	0.0001	0.0004	0.0004	0.0004	0.0003	0.0045
총합계	0.6515	1.9437	2.0199	1.7184	2.1366	1.2657	0.6693	2.0014	1.8768	1.8768	1.4076	17.5676

- 경기도 1인당 농산물 사용물량이 가장 많은 부류는 과채류로 약 4,15kg(조미채소, 근채류, 엽채류, 서류 순)으로 추정됨

□ 전국 식재료 농산물 예상이용량(농산물)

(단위 : 천명, 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학생수(천명)	1,322	489	399	423	264	251	171	1,828	221	236	299	289	278	378	510	95	7,453
과채류	5,491	2,031	1,657	1,758	1,095	1,042	709	7,592	918	982	1,240	1,200	1,155	1,570	2,121	397	30,959
조미채소류	4,377	1,619	1,321	1,401	872	830	565	6,051	732	783	989	957	921	1,252	1,690	316	24,675
근채류	2,841	1,051	857	910	566	539	367	3,928	475	508	642	621	598	812	1,097	205	16,017
엽채류	2,511	929	758	804	501	476	324	3,472	420	449	567	549	528	718	970	181	14,159
서류	2,544	941	768	815	507	483	329	3,517	425	455	575	556	535	728	982	184	14,343
과일류	1,447	535	437	463	288	275	187	2,001	242	259	327	316	304	414	559	104	8,159
잡곡류	1,795	664	542	575	358	341	232	2,482	300	321	406	392	378	514	693	130	10,123
나물류	1,008	373	304	323	201	191	130	1,394	169	180	228	220	212	288	389	73	5,684
버섯류	934	345	282	299	186	177	121	1,291	156	167	211	204	196	267	361	67	5,264
임산물류	131	48	39	42	26	25	17	181	22	23	30	29	28	37	51	9	737
양념류	70	26	21	22	14	13	9	97	12	13	16	15	15	20	27	5	396
견과류	49	18	15	16	10	9	6	67	8	9	11	11	10	14	19	4	275
기타	18	7	5	6	4	3	2	25	3	3	4	4	4	5	7	1	101
특용작물류	6	2	2	2	1	1	1	8	1	1	1	1	1	2	2	0	34
총합계	23,222	8,590	7,008	7,436	4,629	4,406	3,000	32,107	3,884	4,153	5,246	5,075	4,884	6,642	8,968	1,677	130,926

-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 사용추정분석을 통해 전국급식학교의 농산물 사용예상물량은 약 130,926톤으로 추정되었음

□ 전국 학교급식농산물 상위30대 품목 사용추정물량

(단위 : kg)

연번	품목명	전국사용물량 추정	비율	누적치
1	양파	15,949,194.9	12.2%	12.2%
2	감자	11,451,442.3	8.7%	20.9%
3	잡곡	10,122,680.9	7.7%	28.7%
4	무	8,583,421.6	6.6%	35.2%
5	당근	6,527,524.8	5.0%	40.2%
6	오이	4,629,506.0	3.5%	43.7%
7	수박	4,545,550.6	3.5%	47.2%
8	양배추	4,501,599.4	3.4%	50.6%
9	애호박	4,066,716.5	3.1%	53.8%
10	시금치	3,273,395.5	2.5%	56.3%
11	마늘	3,016,968.6	2.3%	58.6%
12	대파	2,779,305.0	2.1%	60.7%
13	방울토마토	2,464,494.6	1.9%	62.6%
14	얼갈이	2,450,880.3	1.9%	64.4%
15	사과	2,361,483.7	1.8%	66.2%
16	숙주나물	2,336,117.7	1.8%	68.0%
17	참외	2,232,369.8	1.7%	69.7%
18	멜론	1,819,229.9	1.4%	71.1%
19	딸기	1,555,100.4	1.2%	72.3%
20	고구마	1,548,559.1	1.2%	73.5%
21	청피망	1,543,609.8	1.2%	74.7%
22	알감자	1,343,276.3	1.0%	75.7%
23	바나나	1,204,250.4	0.9%	76.6%
24	근대	1,175,467.9	0.9%	77.5%
25	배	1,102,566.9	0.8%	78.4%
26	아욱	1,061,064.5	0.8%	79.2%
27	표고버섯	1,045,718.0	0.8%	80.0%
28	팽이버섯	985,043.5	0.8%	80.7%
29	느타리버섯	902,065.8	0.7%	81.4%
30	양송이버섯	901,276.9	0.7%	82.1%

- 전국 학교급식 상위 30대 품목을 추정한 결과 양파가 가장 사용물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음(양파, 감자, 잡곡, 무, 당근, 오이 순)

### 3.2. 학교의 식재료 구매 방식

#### □ 식재료 구매 방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현황]

구분	공동구매(1,560개교)				개별구매(7,573개교)				합계
	급식지원 센터구매	전자계약 (G2B등)	일반계약		급식지원 센터구매	전자계약 (G2B등)	일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학교수	160	914	171	315	451	3,775	513	2,834	9,133
(%)	1.8	10.0	1.9	3.4	5.0	41.3	5.6	31.0	100

\*자료 : 2010년,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공동구매 17.1%(1,560개교), 개별구매 82.7%(7,573개교, 이중 학교단위 수의계약 31.0%/2,834개교)

[식재료 구매방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전자조달 (가격경쟁)	비리발생 요인 원천차단 효과 (관계자 개입차단: 객관성, 공정성 담보)	식재료 품질 및 음식의 맛 저하, 납품과정에서 성실성 결여(가격 우선)
수의계약 (업체지정)	상대적으로 식재료의 질, 맛 우수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성실성 유지)	학교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b>비리요인 내재</b>

\*자료 : 2010년,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 식재료 구매의 문제점

- 수의 계약 방식의 문제점
  - 식재료 개별구매 82.7%중 31%가 수의 계약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리발생(수의 계약과정의 금품수수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 납품업자의 영세성 및 학교의 강력한 거래교섭력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규모의 경제발생이 어려운 구조
  - 학교는 납품업자에 비해 강한 거래교섭력을 가지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을 저가시장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개별학교 측면
    - 급식예산의 부족 : 학교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식단을 구성하면서 조달가격이 낮아지는 현상발생
    -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조달처의 한정 :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납품업체 문제
    - 학교급식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 사업담당 영양교사가 품질, 가격, 위생 등 학교급식 전반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업무과다로 급식사업 운영의 애로 발생(영양교사 비정규직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
  - 기타
    - 위탁급식의 문제 : 학교급식 위탁업자의 이윤추구에 따른 급식의 품질과 안정성 저하 문제 제기(직영급식의 원칙확립)
- 교육과학기술부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대책
-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수의 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및 분할발주 근절
  -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확대 : 2~3개교를 묶어서 공동구매추진
  - 지역거점 학교급식센터 운영활성화 : 일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리차단과 품질저하 방지

## 4.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 4.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sup>3)</sup>

#### □ 학교급식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제정현황, '10년 2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기초 단체수	25	16	8	10	5	5	5	31	18	12	16	23	20	14	22	230
조례 제정수	12	9	2	5	5	5	5	30	18	12	16	23	18	14	22	196
비중 (%)	48.0	56.3	25.0	50.0	100.0	100.0	100.0	96.8	100.0	100.0	100.0	100.0	90.0	100.0	100.0	85.2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현황(2010년2월 기준)을 살펴보면, 광역시는 16개 지역 모두 제정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0개중 196개가 제정(85.2%비중차지)
- 기초자치단체 중 50%이하의 조례제정비중을 가진 지역으로 서울, 대구, 인천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25%인 대구임

#### □ 지역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내용이 명시된 각시도별 조례현황

- 대부분의 각시도별 조례에 지역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내용을 명시
- 광역시 16개 지역 중 대구,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조례에 지역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내용이 명시되었음.
- 지역우수 및 친환경농산물내용이 모두 명시된 지역으로는 광주, 대전, 울산이나, 50%이상 지역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강원(61%), 충남(56%)임

3) 김미소, 2010학교급식조례제정현황분석자료(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재가공



[지역우수 및 친환경농산물내용이 명시된 각시도별 조례현황]

구분	적용	미적용
서울(서울시, 12)	서울,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종로구 용산구, 도봉구	서대문
부산(부산시, 9)	부산, 기장군, 해운대, 북구, 남구 영도구, 금정구,	사하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대구시, 2)	달성군	대구, 중구
인천(인천, 5)	인천, 연수구, 강화군, 서구, 남구	남동구
광주(광주, 5)	광주, 북구,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
대전(대전, 5)	대전,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	-
울산(울산, 5)	울산, 북구, 동구, 울주군, 남구, 중구	-
경기(경기, 30)	경기, 구리시, 여주군, 안성시, 군포시 김포시, 안양시, 고양시, 남양주,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화성시, 의왕시 시흥시, 수원시, 광명시, 양평군, 용인시 동두천, 과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가평군, 광주시, 연천군, 하남시	양주시, 부천시
강원(강원, 18)	강원, 인제군, 철원군, 양구군, 평창군, 원주시 춘천시, 영월군	속초시, 강릉시, 태백시, 횡성군, 화천군 정선군, 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충북(충북, 12)	충북, 음성군, 충주시, 영동군, 청원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괴산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충남(충남, 16)	계룡시, 아산시, 서산군, 보령시, 태안군 청양군, 당진군	충남, 예산군, 천안시, 부여군, 공주시 홍성군,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금산군
경북(경북, 23)	경북, 안동시, 영양군, 고령군, 김천시 경주시, 청송군, 예천군,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구미시, 경산시, 영주시, 영덕군	울진군, 상주시, 봉화군,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울릉군, 포항시
경남(경남, 18)	경남,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사천시 밀양시, 함양군, 창녕군, 진해시	김해시, 고성군, 마산시, 의령시, 함안군
전북(전북, 14)	전북, 익산시,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전남(전남, 22)	전남, 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보성군, 무안군, 강진군, 고흥군 영암군, 여수시, 해남군, 장흥군	광양시, 구례군, 영광군, 곡성군,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	제주	-

□ 공급(생산자)단체 내용이 포함된 각시도별 조례 현황

-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명시한 지역은 27개 기초단체에 불과함(기초단체수 230중 12%차지)

[공급(생산자)단체 내용이 포함된 각시도별 조례현황]

구분	적용	미적용
서울(서울시, 12)	관악구, 중랑구, 서대문	서울,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용산구, 도봉구
부산(부산시, 9)	-	부산, 기장군, 해운대, 북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대구시, 2)	-	대구, 달성군, 중구
인천(인천, 5)	-	인천, 연수구, 강화군, 서구, 남구, 남동구
광주(광주, 5)	광산구, 서구,	광주, 북구, 동구, 남구
대전(대전, 5)	-	대전,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
울산(울산, 5)	-	울산, 북구, 동구, 울주군, 남구, 중구
경기(경기, 30)	-	경기, 구리시, 여주군, 안성시, 군포시, 김포시, 안양시, 고양시, 남양주,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화성시, 의왕시, 시흥시, 수원시, 광명시, 양평군, 용인시, 동두천, 과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광주시, 연천군, 하남시, 부천시
강원(강원, 18)	강릉시, 정선군, 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강원, 인제군, 철원군, 양구군, 평창군, 원주시, 속초시, 춘천시, 태백시, 횡성군, 화천군, 동해시, 고성군, 영월군
충북(충북, 12)	단양군	충북,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영동군, 청원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보은군
충남(충남, 16)	금산군	충남, 계룡시,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공주시, 서산군, 홍성군, 논산시, 연기군,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
경북(경북, 23)	울진군, 고령군, 봉화군, 김천시, 경주시, 청송군, 문경시, 군위군, 울릉군, 영주시, 영덕군	경북, 안동시, 영양군,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예천군, 청도군,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 포항시
경남(경남, 18)	합안군	경남,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김해시, 고성군,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마산시, 사천시, 밀양시, 함양군, 창녕군, 의령군, 진해시
전북(전북, 14)	전북,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순창시, 진안군, 김제시, 임실군, 남원시, 완주군, 군산시
전남(전남, 22)	-	전남, 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보성군, 무안군, 광양시, 강진군, 고흥군, 영암군, 여수시, 구례군, 해남군, 영광군, 곡성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	-	제주

□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용이 포함된 각시도별 조례 현황

- 광역단체 중 학교급식지원센터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전북임
- 기초자치단체 중 학교급식지원센터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역은 전체 230곳 중 55곳임(24%)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용이 포함된 각시도별 조례현황]

구분	적용	미적용
서울(서울시, 12)	서울,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중랑구, 서대문, 용산구	도봉구
부산(부산시, 9)	-	부산, 기장군, 해운대, 북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대구시, 2)	-	대구, 달성군, 중구
인천(인천, 5)	강화구	인천, 연수구, 서구, 남구, 남동구
광주(광주, 5)	북구,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
대전(대전, 5)	대덕구, 동구	대전, 유성구, 서구, 중구
울산(울산, 5)	-	울산, 북구, 동구, 울주군, 남구, 중구
경기(경기, 30)	경기	구리시, 여주군, 안성시, 군포시, 김포시, 안양시, 고양시, 남양주,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화성시, 의왕시, 시흥시, 수원시, 광명시, 양평군, 용인시, 동두천, 과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광주시, 연천군, 하남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용이 포함된 각시도별 조례현황]

구분	적용	미적용
강원(강원, 18)	원주시, 강릉시, 정선군, 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고성군, 춘천시	강원 , 인제군, 철원군, 양구군, 평창군 속초시, 태백시, 횡성군, 화천군, 동해시 영월군
충북(충북, 12)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충북, 청원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남(충남, 16)	-	충남, 계룡시,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공주시, 서산군, 홍성군, 논산시 연기군,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 금산군
경북(경북, 23)	경북, 울진군, 고령군, 봉화군, 김천시 경주시, 청송군, 문경시, 군위군, 울릉군 영주시,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예천군, 청도군,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 포항시
경남(경남, 18)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경남,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김해시 고성군,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마산시, 사천시, 밀양시, 함양군, 의령군 진해시
전북(전북, 14)	전북, 익산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부안군,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김제시, 임실군, 군산시
전남(전남, 22)	영암군, 여수시,	전남, 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보성군, 무안군, 광양시,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해남군, 영광군, 곡성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	-	제주

## 4.2. 학교급식관련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공약<sup>4)</sup>

### □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우수농산물취급 관련 공약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시도지사 비율은 44%(7/16)이고, 시도교육감 비율은 63%(10/16)임
-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우수농산물과 연계함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 무상급식실시 관련 공약

- 무상급식실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
- 무상급식실시에 대해 찬성한 시도지사 당선자의 비율은 68%(11/16)이었으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비율은 88%(14/16)임
- 반대의 입장도 전면무상급식실시가 아닌 연차별 무상급식 실시 및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함

###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관련 공약

-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시·도지사들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입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은 경북, 경남임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시·도교육감들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입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은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전남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당선자 후보자시절 공식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각시·도지사 및 각시·도교육감 학교급식관련 공약내용 요약]

구분		친환경농산물 지역우수농산물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센터	직거래/계약재배 생산단체
서울	시도지사		○(소득하위30%)		
	교육감	○	○	○	
경기	시도지사		○		
	교육감	○	○		
인천	시도지사	○	○		
	교육감		○		
부산	시도지사	○	○		
	교육감		○		
대구	시도지사				
	교육감		○(저소득선별적)		
광주	시도지사		○		
	교육감	○	○	○	○
대전	시도지사	○	○		
	교육감		○(저소득선별적)		
울산	시도지사				
	교육감	○	○		○(계약재배)
강원	시도지사				
	교육감	○	○		
충북	시도지사		○		
	교육감	○	○		
충남	시도지사	○	○		
	교육감		○	○	
전북	시도지사		○		
	교육감	○	○	○	○(직거래)
전남	시도지사	○	○		
	교육감	○	○	○	
경북	시도지사			○	
	교육감		○		
경남	시도지사	○	○	○	
	교육감	○	○		
제주	시도지사	○	○		
	교육감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자료 재인용

[참고. 각시·도지사 및 각시·도교육감 학교급식관련 공약내용]

구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li> <li>- 무상급식예산 : 2,584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무상급식전면실시</li> <li>- 무상급식 초·중학교 우선 실시, 고등학교로 확대</li> <li>- 지역교육청에 급식지원센터 설치</li> <li>- 친환경·우수지역 농산물 보급</li> <li>-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을시작으로단계적무상급식실시</li> <li>- 예산범위안에서 저소득층무상급식확대 시행</li> <li>- 수도권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 구축</li> <li>· 결식아동급식확대</li> <li>- 이행기한 : 2010년지원</li> <li>- 인원 : 약11만4천명(토/일요일/방학중미취학아동도혜택)→매년지원인원확대</li> <li>- 재원조달방안 : 2014년까지 총 4천여억원(국비,시·군비포함)→예산확대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초/중학교)</li> <li>-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2014년)</li> <li>-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li> <li>- 지역 농촌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한 친환경급식 실시</li> <li>·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의 점진적 확대</li> <li>· 소요예산 : 6,613억원(2014년 기준)</li> <li>·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 자체예산,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초중)</li> <li>- 연간1,502억(국비:시비 5:5)</li> <li>- 2011년~201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에는 모든 초중교에 무상급식실시</li> <li>-2013년에는 고교에 무상급식실시 검토</li> </ul>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2011~2014)</li> <li>· 중·전문계교 무상급식 확대시행(2012~2014)</li> <li>- 교육청예산 및 시·구·교육청 매칭펀드</li> </ul>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선별급식실시</li> </ul>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무상급식 단계적실시</li> <li>- 2011년 초등학교1~3학년</li> <li>- 2012년 초등학교전체</li> <li>- 2013년 중학교 무상급식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무상급식</li> <li>- 초중특수학교 전체, 저소득층 30%무상급식</li> <li>- 시기 : 2010년 하반기부터 연차실시</li> <li>-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무상의무급식협의체구성</li> <li>-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지원센터 설치(기초단체 시설 투자)</li> <li>- 11년부터 광주시와 대응투자 협의를 통해 각각50%씩 부담</li> <li>- 5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생산단지 조성</li> <li>- 육식, 채식 선택식단제 시범실시</li> <li>- 재원:교육청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대응투자</li> </ul>

구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무상급식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추진</li> <li>-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학교급식지원 중합계 획수립(2010년)</li> <li>-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임기 내 단계적 전면시행</li> <li>- 2014년까지 완전시행/시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선별급식 실시</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단' 설치</li> <li>· 지역 농가에서 재배하는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li> <li>· 좋은 식재료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가정식학교급식 식단'운영</li> <li>·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학교급식안전지킴이'제도화</li> <li>·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수준의 고급화 실현</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무상급식 추진자문단 구성운영</li> <li>- 2011년(1단계):초등/특수</li> <li>- 2012년(2단계):초등/중/특수</li> <li>- 2013년(3단계):초등/중/고/특수</li> </ul> </li> </ul>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도비나 시군과의 매칭을 통한 예산확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2011년부터)</li> </ul> </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 함께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구성 운영</li> <li>- 친환경무상급식 실시</li> <li>- 이행 기간 : 2010년~2012년</li> <li>-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급식 확대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확대 실시(2014년까지)</li> <li>무료급식 확대 및 급식 지원 센터 설치</li> <li>- 지역농수축산물(친환경 포함) 학교급식 활용</li> </ul> </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무상급식 단계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직거래 개설로 식재료 확보, 학교급식 투명성·안전성 확보</li> <li>- 지자체별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직거래 계약</li> <li>-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li> <li>- 직영급식으로 모두 전환</li> <li>- 초중(2011년부터),고(2012년부터)</li> </ul> </li> </ul>



구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특별회계 반영</li> <li>-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초중학생 676개교, 약20만명대상)</li> <li>- 기한: '11년 농어촌지역/ '13~'14:도시지역</li> <li>- 재원:688억원(교특349억,도비174.5억,시군174.5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2012년까지)</li> <li>-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의무급식협의체' 구성</li> <li>-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지원센터' 설치(기초단체 사설 투자)</li> <li>-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각각 친환경 무상급식 50%씩 부담</li> </ul> </li> </ul>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군 1학교급식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li> </ul>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 2010년~2014년(임기내 사업)</li> <li>-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li> <li>-재원:4,000억원(국비+도비+시군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2014년까지) 실시</li> </ul> </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부터 3단계로 나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무상급식 점진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초중(기시행)</li> <li>- 읍면전문계고(2011년)</li> <li>- 초등(2012년), 중등(2013년)</li> <li>- 전문계고(2014년), 일반계고(2015년)</li> </ul> </li> </ul>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

### 4.3.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동향

□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센터<sup>5)</sup>(2010년 5월 기준)가 운영 중이며, 향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증가 예상
- 경남, 대전, 충북지역 등 설립 논의 진행

□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내용

구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b>농협중앙회</b>	계통유통사업장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 주요역할 -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 및 안정적인 식재료공급 - 표준식단 개발 및 식재료의 생산계획과 가격조정 - 학교급식관련 정책, 교육, 홍보 사업총괄 · 추진방안 - 농정활동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치 -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사업 수행을 통한 사업방향 설정 - 신규투자대신 투자금액의 일부를 기존시설 보완에 활용
<b>경기</b>	·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곤지암, 2011년 완공목표) - 인증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수집, 가공한 뒤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공급예정
<b>인천</b>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없으나, 향후 건립필요성 공감. ·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일괄공급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농협의 직접참여 운영 검토

5)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화하고 있는 곳임. 「명칭」 사용여부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시기 : 2011년 시행</li> <li>- 안정적 식재료 확보를 위한 농산물 생산량 확보</li> </ul>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경남을 크게 나누어 광역급식지원센터 1개소, 북부/중동부/서부 권으로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외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계획 중(기존조직활용 등을 감안한 연합사업단 운영체제 고려)</li> <li>· 표준식단, 공동구매 시범사업 거창 등 3개 시군에서 실시예정</li> <li>· 거창군 - 관련 연구용역진행중</li> </ul>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지원센터</li> <li>- 조례에 의거 15개 설치예정(2015년)</li> <li>- 경북도에서 시군구에 공보(신규시설 30억, 기존시설활용15억지원)</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조성(신규)</li> <li>- 저온저장시설 및 전처리시설 등 유통·물류·가공시설 지원</li> <li>※ '20년까지 5개소 조성, 개소당 2,000백만원 투자</li> <li>- 당진에서 농협중심으로 준비중('10.11월중 준공)</li> <li>- 천안에서 급식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검토('14년 설치예정)</li> <li>※ 도 친환경육성 중장기 계획중 급식센터신규설치계획</li> </ul>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군</li> <li>- 옥천군에서 설립,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운영, 09년 3월 준비위발족</li> <li>- 2010년 지원센터 설립계획 준비중</li> <li>· 음성군</li> <li>- 음성읍 신천리 과수유통지원센터내에 설치(음성군구상)</li> <li>- 농협이 운영주체로 계획</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초 물류센터 설치운영주체를 지역농협연합사업단으로 모아 지다 농협과 논의가 중단됨 → 2011년 본격 가동목표 협의 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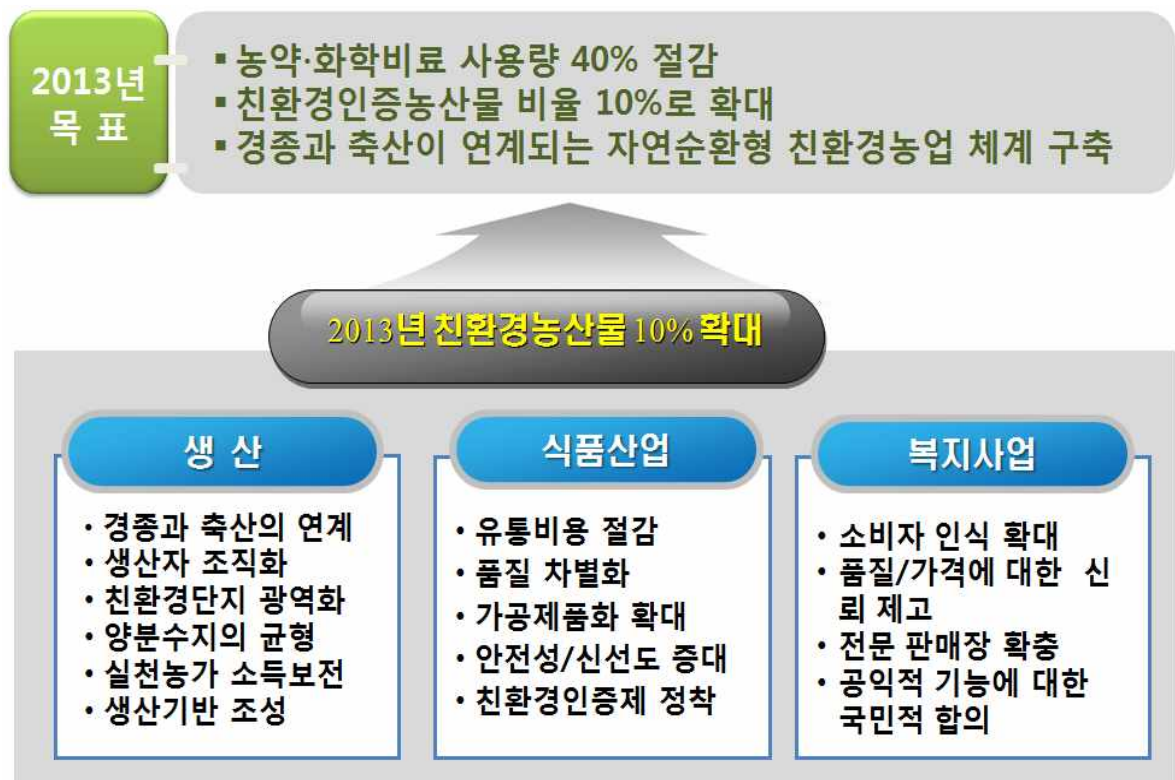
\*자료1. : 「학교급식 활성화대책회의」, 농협 식품유통부

\*자료2.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및 혁신학교 육성지원방안」, 민주당·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정책간담회 자료

##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sup>6)</sup>

### 5.1. 정책방향

- 정부는 2013년까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의 40%를 절감하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음



6)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실제로는 대부분 친환경농산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5.2. 생산현황

### □ 친환경인증 농산물 증가

- WTO, FTA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로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이 크게 증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통계 작성 초년도인 '99년 27천톤(전체농산물의 0.1%)에 불과하던 친환경농산물이 '09년 2,358천톤(12.2%수준)으로 약87배 증가
- 참여농가수도 전년대비 15%증가한 19만 9천호, 재배면적도 14%, 생산량은 7.8%증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8)2,188천톤 → ('09)2,358천톤(증7.8%)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08)174천ha → ('09)202천ha(증14%)
- '09년 친환경농산물 총 생산량 중 유기농산물이 약5%를 차지하며, 무농약농산물 37%, 저농약농산물 58%를 차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단위: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	계	27	35	87	200	365	461	798	1,128	1,786	2,189	2,358
	유기	7	6	11	21	33	37	68	96	107	115	109
	무농약	12	16	32	77	120	167	242	320	444	554	880
	저농약	8	13	44	102	212	257	488	712	1,235	1,519	1,369
전체농산물대비 비중	0.1	0.2	0.4	1.1	2.1	2.5	4.4	6.2	9.7	11.9	12.2	

\*자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생산통계는 1999년부터 작성

\*전체 농산물대비 친환경 농산물 비중:(친환경농산물 인증량/농산물 총생산량)x100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이]



[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면적, 농가호수 ]

(단위:호,ha,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농가호수	2,448	4,678	11,892	23,301	28,951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면적	2,039	4,554	11,239	22,238	28,218	49,807	74,995	122,802	174,107	201,688
	인증량	35,409	87,278	200,374	365,203	460,735	797,747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유기	농가호수	353	439	877	1,451	1,458	5,403	7,167	7,507	8,460	9,403
	면적	296	448	1,062	1,894	2,516	6,095	8,558	9,729	12,033	13,343
	인증량	6,538	10,626	16,249	24,438	23,446	68,091	95,404	107,179	114,649	108,810
무농약	농가호수	1,060	1,645	4,084	7,426	9,776	15,278	21,656	31,540	45,089	63,653
	면적	876	1,293	3,727	6,756	8,442	13,803	18,066	27,288	42,938	71,039
	인증량	15,694	32,274	76,828	120,368	167,033	242,068	320,309	443,989	554,592	879,930
저농약	농가호수	1,035	2,591	6,303	13,127	15,892	32,797	50,812	92,413	119,004	125,835
	면적	867	2,811	5,911	12,154	15,154	29,909	48,371	85,865	119,136	117,306
	인증량	13,174	44,334	102,432	211,558	256,956	487,588	712,380	1,234,706	1,519,070	1,369,034

\*자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농림수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 인증현황

-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유한 곳은 전남지역으로 104,682ha에 이르며,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도의 적극적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재배면적 비중도 33.8%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09) ]

(단위:호,ha,,%)

구 분	합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경지면적 대비 (%)	경지면적 대비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경지면적	(%)
계	198,891	201,688	9,403	13,343	63,653	71,039	125,835	117,306	100	1,736,798	11.6
서울	84	35	4	-	60	22	20	13	0.0	1,340	2.6
부산	509	377	2	2	183	142	324	233	0.2	7,611	5.0
대구	768	598	24	94	138	67	606	437	0.3	9,644	6.2
인천	994	1,049	90	121	579	703	325	225	0.5	20,630	5.1
광주	481	342	8	4	46	59	427	279	0.2	11,286	3.0
대전	133	76	8	4	16	7	109	65	0.0	4,831	1.6
울산	771	658	3	9	189	129	579	520	0.3	12,000	5.5
경기	7,431	7,424	1,024	1,815	2,919	2,325	3,488	3,284	3.7	183,466	4.0
강원	6,116	14,889	851	1,281	3,467	11,903	1,798	1,705	7.4	111,647	13.3
충북	6,560	5,453	789	734	2,435	1,930	3,336	2,789	2.7	118,919	4.6
충남	9,663	15,521	1,427	1,581	1,602	1,400	6,634	12,540	7.7	237,681	6.5
전북	11,937	12,563	806	1,384	4,531	4,501	6,600	6,678	6.2	205,668	6.1
<b>전남</b>	<b>110,385</b>	<b>104,682</b>	<b>1,193</b>	<b>2,745</b>	<b>37,246</b>	<b>40,015</b>	<b>71,946</b>	<b>61,922</b>	<b>51.9</b>	<b>309,803</b>	<b>33.8</b>
경북	26,610	23,318	2,060	1,612	5,326	3,881	19,224	17,825	11.6	278,665	8.4
경남	15,148	12,247	895	838	4,198	2,904	10,055	8,505	6.1	164,122	7.5
제주	1,301	2,456	219	1,119	718	1,051	364	286	1.2	59,485	4.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도별 품목류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최근5개년)]

(단위: 톤, %)

구분		곡류	서류	과실류	특용작물	채소류	기타	합계
05년	유기	8,022	3,326	4,055	906	42,902	97	59,308
	무농약	34,050	7,226	12,417	72,254	115,876	245	242,068
	저농약	42,799	5,099	272,046	402	167,242	-	487,588
	합계	93,654	15,651	288,518	73,562	326,020	342	797,747
06년	유기	22,736	5,586	5,330	2,252	59,213	288	95,405
	무농약	53,392	5,856	13,713	111,193	135,938	216	320,308
	저농약	95,951	13,779	3,712,503	2,983	228,416	-	4,053,632
	합계	172,079	25,221	390,293	116,429	423,567	504	1,128,093
07년	유기	26,245	4,733	6,196	3,152	66,577	276	107,179
	무농약	78,506	10,700	22,530	146,060	185,780	413	443,989
	저농약	223,141	36,124	492,835	5,495	477,048	63	1,234,706
	합계	327,892	51,557	521,561	154,707	729,405	752	1,785,874
08년	유기	26,108	4,069	16,006	-	62,354	6,112	114,649
	무농약	106,624	33,830	31,080	-	231,045	152,014	554,593
	저농약	260,747	39,879	528,821	-	684,822	4,801	1,519,070
	합계	393,479	77,778	575,907	-	978,221	162,926	2,188,311
09년	유기	29,861 (6.3)	4,307 (5.9)	7,216 (1.2)	5,674 (3.7)	54,068 (5.2)	7,684 (30.4)	108,810 (4.6)
	무농약	161,894 (34.3)	48,454 (66.4)	76,148 (12.6)	139,411 (90.2)	442,975 (43.0)	11,048 (43.7)	879,930 (37.3)
	저농약	279,193 (59.3)	20,261 (27.7)	519,657 (86.2)	9,519 (6.2)	533,832 (51.8)	6,572 (26.0)	1,369,034 (58.1)
	합계	470,948	73,022	603,021	154,604	1,030,875	25,304	2,357,77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 친환경농산물 품목류별 출하량을 보면(2009년 기준)곡류 470,948톤, 과실류 603,021톤, 채소류 1,030,875톤으로 채소류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채소류의 경우 전체 출하량 1,030,346톤 가운데 유기가 54,068톤으로 5.2%를 차지하고, 무농약 442,975톤(43%), 저농약 533,832톤(51.8%)으로 무농약과 저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함

### 5.3. 소비현황

#### □ 소비패턴의 변화

-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소비형태는 양중심에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음
- 이러한 식품소비 트렌드는 외식비중의 확대,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 친환경제품의 소비확대, 식품의 고급화, 기호식품의 소비증가, 식품의 간편화·다양화·전문화로 요약할 수 있음

####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건강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09년 1인당 평균소비량(친환경농산물출하량/인구): 48.5kg  
(‘00년)0.7kg/년 → (‘04년)9.6 → (‘06)23.3 → (‘07)36.8 → (‘08)43.8 → (‘09) 48.5)

---

7) 자료: 통계청

[1인당 친환경농산물 평균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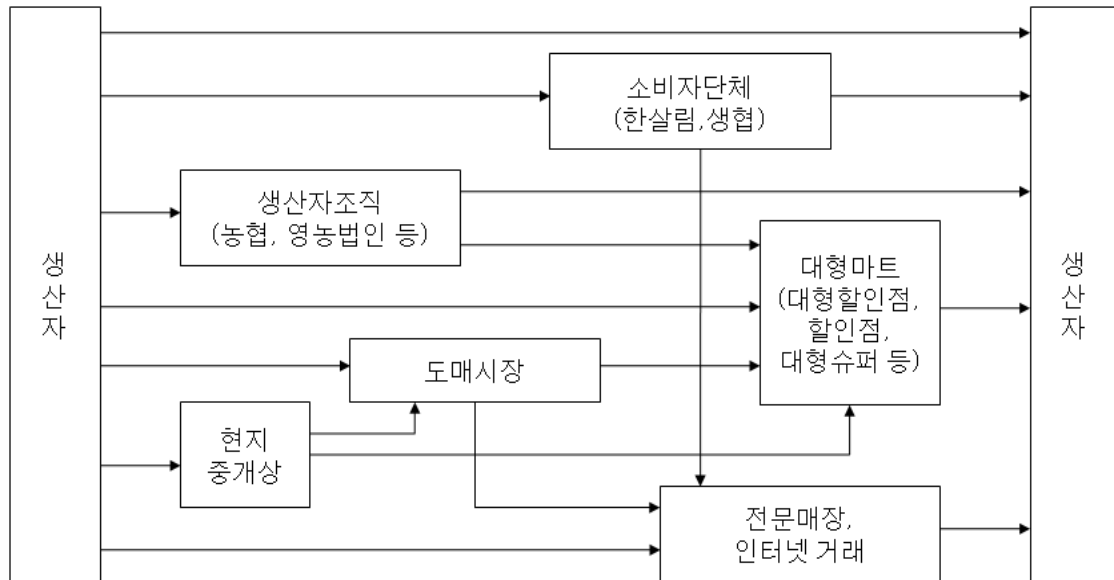


#### 5.4. 유통구조 및 시장규모

##### □ 유통구조현황

- 최근 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직거래, 소비자단체 판매비중은 감소한 반면,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판매비중은 급격히 증가함
-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일부 계층 또는 집단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일반 소비자들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함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출하처별 구성비를 보면, 직거래 비중이 10~15%, 생산자조직과 대형마트(하나로클럽)를 통한 거래비중이 40~50%, 한살림과 생협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거래비중이 15~20%, 전문매장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비중이 20~25%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경로 ]



\*자료 :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살림, 초록마음, 올가, 신시,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 전문매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업태별 친환경농산물 취급점포수('08.12월 기준)]

(단위 : 개소)

연 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52	604	1,091	1,266	1,585	1,722	2,133
농 협	108	112	170	200	200	186	208
할 인 점	131	221	259	268	329	347	336
대형슈퍼	7	46	46	124	171	245	276
백 화 점	75	98	98	68	69	71	73
전문매장	31	50	425	465	502	507	595
기 타	(16)	77	93	141	314	366	6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시장규모

- 친환경농산물이 전체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증가하면서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함
  - 전체농산물대비 친환경농산물 비중 : ('99) 0.1% → ('09) 12.2%
-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인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말 기준 약3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채소류 시장규모는 10,814 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류가 9,074억원, 곡류는 7,7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류	총계
시장 규모	2004년	1,560	2,138	612	107	322	4,738
	2005년	2,137	3,149	935	136	1,251	7,608
	2006년	3,678	4,081	3,178	216	1,953	13,106
	2008년	7,751	10,814	9,074	1,144	3,143	31,927
비중	2004년	32.9%	45.1%	12.9%	2.3%	6.8%	100.0%
	2005년	28.1%	41.4%	12.3%	1.8%	16.4%	100.0%
	2006년	28.1%	31.1%	24.2%	1.6%	14.9%	100.0%
	2008년	24.3%	33.9%	28.4%	3.6%	9.8%	100.0%

\*자료 : 2006~2007,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시장유통규모(2008년)



□ 시장규모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저농약 신규인증제 폐지되는 2010년에는 4조940억원이고, 저농약 인증제 자체가 폐지되는 2015년에는 4조9,216억원으로 전망
- 2020년에는 전체농산물의 20%수준인 7조67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5	2020
곡 류	5,242	7,751	9,069	10,090	13,462	13,834	19,866
쌀	4,660	7,218	8,445	9,370	12,396	12,605	18,100
채소류	6,238	10,814	12,653	13,798	17,008	16,479	23,665
과실류	7,134	9,074	10,617	10,912	9,937	5,047	7,248
서류	590	1,144	1,338	1,527	2,180	2,479	3,559
특작·기타	2,596	3,143	3,678	4,613	8,369	11,377	16,337
총계	21,799	31,927	37,355	40,940	50,955	49,216	70,676

\*자료 :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5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곡류 30%, 채소류35%, 과실류 20%, 서류35%, 특작류20%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 2009년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단계별 구성비는 유기8%, 무농약29%, 저농약63%
- 저농약인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2015년에는 유기23%, 무농약 77%로 전망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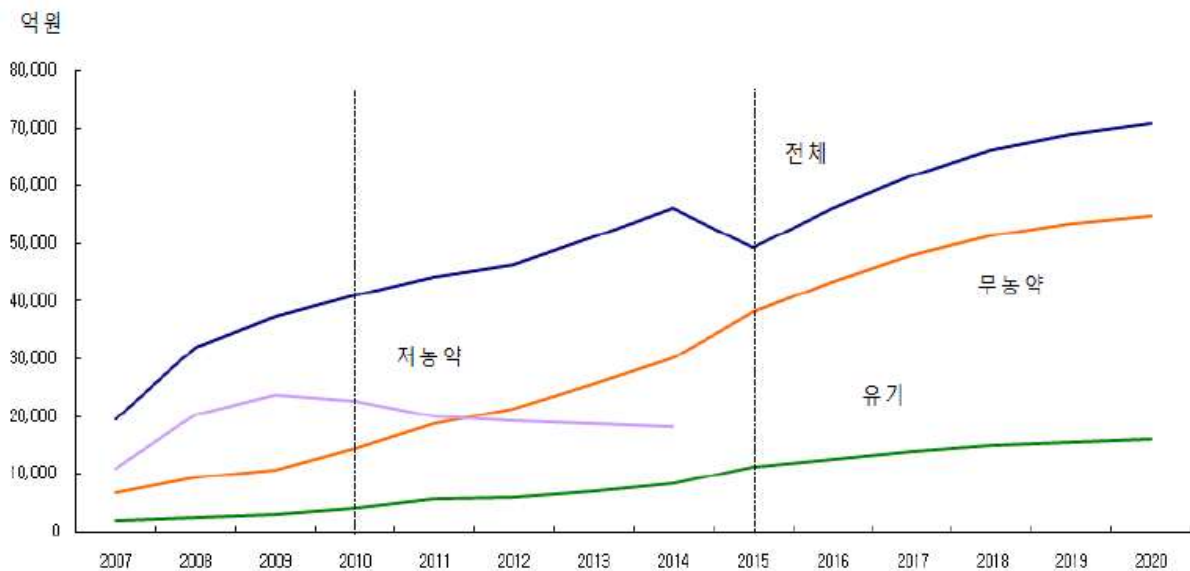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5	2020
유기	1,721	2,536	2,967	4,090	7,037	11,134	15,989
무농약	6,312	9,193	10,756	14,345	25,368	38,082	54,687
저농약	13,766	20,198	23,632	22,505	18,550	-	-
계	21,799	31,927	37,355	40,940	50,955	49,216	70,676

\*자료 : 2009,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외2명

\*주 :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5년 이후 저농약 완전 폐지를 적용함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5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 전국학교급식 필요물량

- 제2부 3장 학교급식재료 수급현황에서 보았듯이 전국학교급식의 농산물 예산물량은 약130,926톤으로 추정
- 전체친환경농산물중(2009년기준)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은 서류 14,343톤(19.6%), 과실류 8,159톤(1.4%), 채소류 85,810톤(8.3%), 특용작물 34톤(0.02%)으로 적지 않은 수치
-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있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
- 엽채류의 경우 기상이변(여름철 고온, 일조량 부족,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의 어려움 발생
- 또한, 전국 학교급식농산물 품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는 구근류(감자, 양파, 당근 등)의 경우에는 작기에 따라 공급이 어려운 품목이기에 타 광역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물량수급 필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전국급식필요물량(2009년기준)]

(단위 : 톤, %)

구분		서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	기타
09년	유기	4,307	7,216	54,068	5,674	
	무농약	48,454	76,148	442,975	139,411	
	저농약	20,261	519,657	533,832	9,519	
	합계	73,022	603,021	1,030,875	154,604	
전국급식 필요물량	필요물량	14,343	8,159	85,810	34	
	비율	19.6%	1.4%	8.3%	0.02%	

## 6. 소결,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와 학교급식시스템 구축

### 6.1. 학교급식에 대한 농업계 참여 제한 및 대응 미흡

#### □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노력과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 한국전쟁 후 초등학교 무상 빵 급식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몇 차례의 전면적 도약이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교육계의 지속적이고 헌신적 노력과 민관협력 체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큰 뜻을 공유하고 작은 차이를 극복한' 상호협력과 발품을 팔며 현장을 파고드는 헌신적 노력은 학교급식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었음

#### □ 농식품계의 학교급식 참여 미흡

- 일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농업계 전반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농식품산업 본연의 임무인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의 출발점인 학교급식이 갖는 잠재력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반구축과 체질개선을 우선하였음
-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제도적 장벽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처럼 작은 시장인 학교급식의 현재만을 바라보았던 것도 사실임



## 6.2. 생산자단체의 학교급식 참여 의미와 중요성

-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농식품산업 본연의 임무
  -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농식품업계의 과제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농식품업계가 쌓아온 기반구축과 체질개선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농식품산업 본연의 임무이며, 학교급식은 농식품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늠하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을 키우는 것임
  - 장기적 안목과 관점의 사업구상과 학교급식 사업참여가 필요함
  
- 학교급식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주체로서 농업관련 단체 위상 확보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바람직한 방향은 생산자단체와 학교의 직거래로 설정되지만 제도에 의한 현실적 모습은 생산자단체가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소매상인과의 가격중심의 경쟁에 내몰렸던 것이 현실임
  - 국가의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가 본연의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학교급식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관련 단체가 학교급식의 의사결정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본틀로 제시함

- 즉,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물려 농식품 업계는 학교급식의 객체에서 주체로 위상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익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 6.3.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및 농업계의 전면 대응

####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확대

-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
- 또, 학교급식 사업의 성숙과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함
- 한국 농업의 특성에서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한 약정출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확인되었으며, 산지유통 정책 및 사업이 이를 중심으로 진행됨
- 친환경농산물은 10년 전에 비해 생산량이 약 87배나 증가하였고 농식품 인증 및 표시제도도 정립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의 핵심수요처로 삼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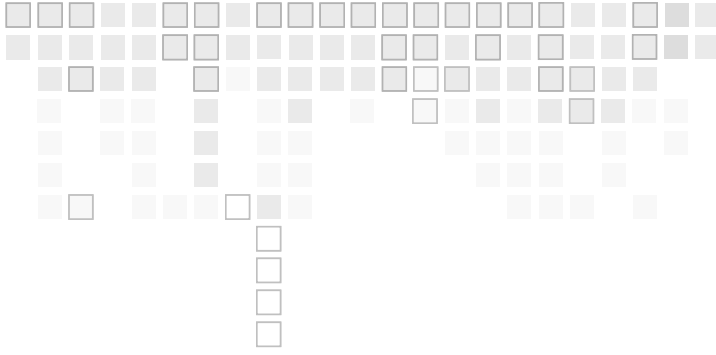
□ 기반시설을 활용한 유통기능 수행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의 표준화, 규격화 및 안정적 원물조달 노력은 상당한 수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는 시장과 비교하여 분산적이며 체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조직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음
- 교육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산지유통 부문은 농식품업계가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
- 산지유통체계 개편의 지속적 방향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금지원 및 주체육성,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사업방식과 시설인프라는 짧은 기간에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험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임

□ 사업참여자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필요

- 생산자단체가 지역협의체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고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업을 주도한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임
-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막 얻게 되었으며, 지역 공동의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공급자이자 경험을 갖춘 주체가 운영자로 타당하다는 공감에서 생산자단체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기본적인 잣대는 공익성이기 때문임





## 제3부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분석

---



# 1. 총괄

## □ 식재료 수급의 점점, 학교급식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교급식법에 제도적 근거를 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심을 받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입장에서는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곳이고,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영세 유통업체와의 가격경쟁을 극복하고 품질중심의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임
- 즉,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식재료 수급의 점점으로써 그 기능을 정립하고 역할을 증대할 필요성을 갖춘 협의체계 및 운영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임

## □ 사회적 협의를 통한 안전성 확보 중심의 급식체계 구축 가능

- 교육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의사결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공동의 협의체로 전환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식재료에 대한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음
-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 달성을 갖대려 협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특성을 배제하고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는데도 적합함

## □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과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체계보다는 그 명칭의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임의적 명칭사용도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5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1개소임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명(센터명)	이 용 학교수	운영 현황
서울	• 서울시강서친환경급식 유통센터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설치, 우수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학교에 식재료 공급</li> <li>- '10년에 서울시가 90억원을 투입, 「친환경급식유통센터」로 명칭을 변경, 250개교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추진</li> </ul>
경기	• 양평지방공사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군에서 100% 출자,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 친환경식재료 공급</li> </ul>
충북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260여 품목 공급 - 세척 및 신선편이 시설 완비,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li> </ul>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농협급식지원센터</li> <li>• 나주농협연합사업단</li> <li>• 목포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li> <li>• 영암농협급식지원센터</li> <li>• 장성농협급식지원센터</li> </ul>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 기능을 갖춘 기존의 산지유통시설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li> </ul>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경영강영농조합</li> <li>• 영주농협급식지원센터</li> </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쌀 및 지역농산물 공급</li> <li>▶ 영주농협 급식지원센터는 도비+영주시+농협 공동투자(12억원, '10.5.4 준공)</li> </ul>
경남	•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채소·과일류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학교별 직거래 - 전처리장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li> </ul>

\* 자료 : 2010.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SCM)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 조사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9개소(본격적 사업운영 실적이 없는 영암 및 장성은 제외) 및 경기도 16개 시군의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클린팜당, 규모화된 시설을 갖추고 관내외 학교급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등 총 11개소
- 조사 시기 : 2010. 8. 3. ~ 20.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지에 의해 사업담당자를 연구원이 직접 대면조사
- 조사 내용 : 사업현황, 지방자치단체 지원현황, 사업단계별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 식재료 수급체계, 유통시설 현황 등

##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및 운영형태

### 2.1.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정립 혼란

#### □ 학교급식법상 유통시설로 정의

-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설치한 우수식자재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시설로 정의
- 시도지사 등 광역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에서는 정의 및 운영근거 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에 대한 논란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통시설로 정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간과되었다는 비판을 가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통시설로 국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등 같은 법으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된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구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함

### 2.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및 역할

####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2007-2011년) 『시·군·

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해석을 제시

- 『시·군·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고 규정

[학교급식운영체제로써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현물 지원 가능
  -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현금 지원 가능
  -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은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 추진
  -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한 업무 위임 가능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능(심의 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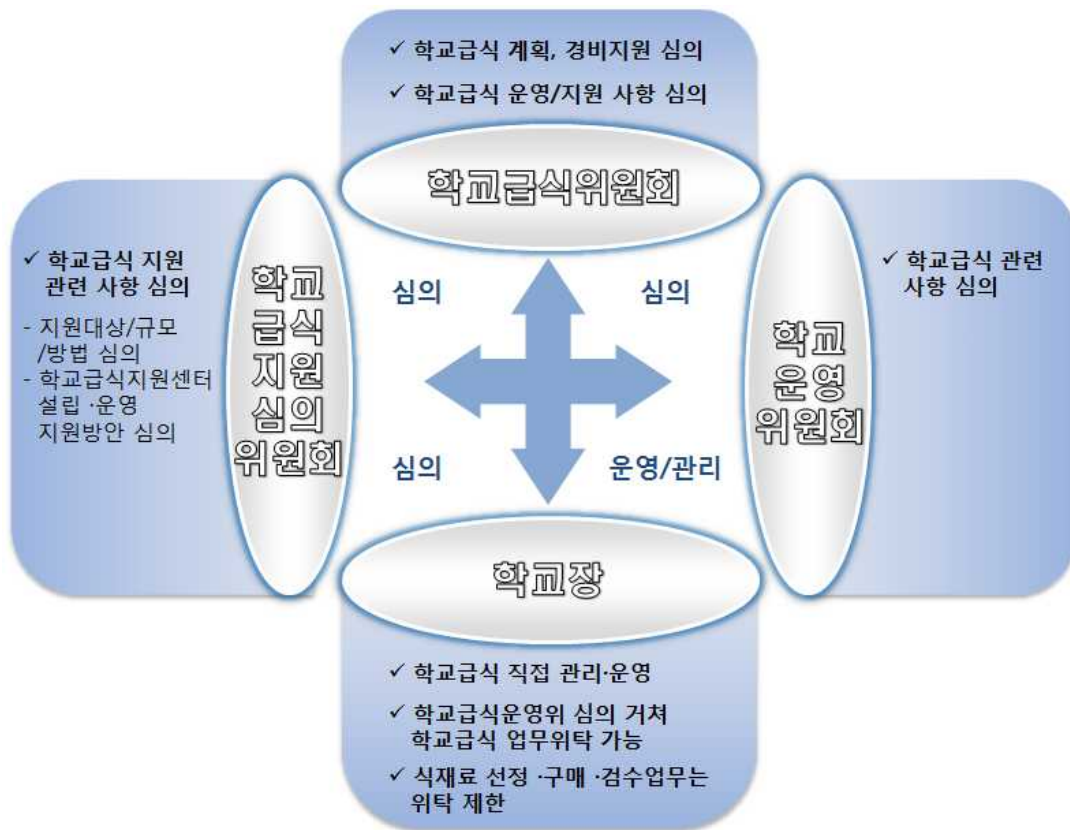
####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
-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설치
- 역할
  -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 유통 및 공급관리
  -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 시·군·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처리, 가공공장, 물류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업무 및 시설의 일부를 위탁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적용 현황 및 특이점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을 수정 또는 가감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 조례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상북도지사가 설치 주체에 포함
- 기존 교육청 관련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설치 조직의 기능 중복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관리·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주체가 존재하며, 이외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급식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학교급식 관련 조직·주체의 역할이 상호 중첩되어 일부 혼선이 발생
  -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포함
  - 학교장: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

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제한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유사 조직·주체 개념]



### 2.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

- 교육과학기술부는 5가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sup>8)</sup>을 제시
- 제1안: 지원센터 물류·유통 통합직영형



<b>특 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일원화 가능</li> <li>○ 급식지원센터에서 1차 전처리, 물류, 유통까지 담당</li> <li>○ 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li> </ul>
<b>장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내 모든 학교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li> </ul>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모든 학교를 공급, 관리하기가 어려움</li> <li>○ 초기 투자비, 운영비가 많이 소요</li> <li>○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됨</li> <li>○ 급식소요 전 품목을 취급해야 하며, 많은 인력이 소요</li> <li>○ 식자재 일괄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li> </ul>

8) 2007,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제2안: 지원센터 유통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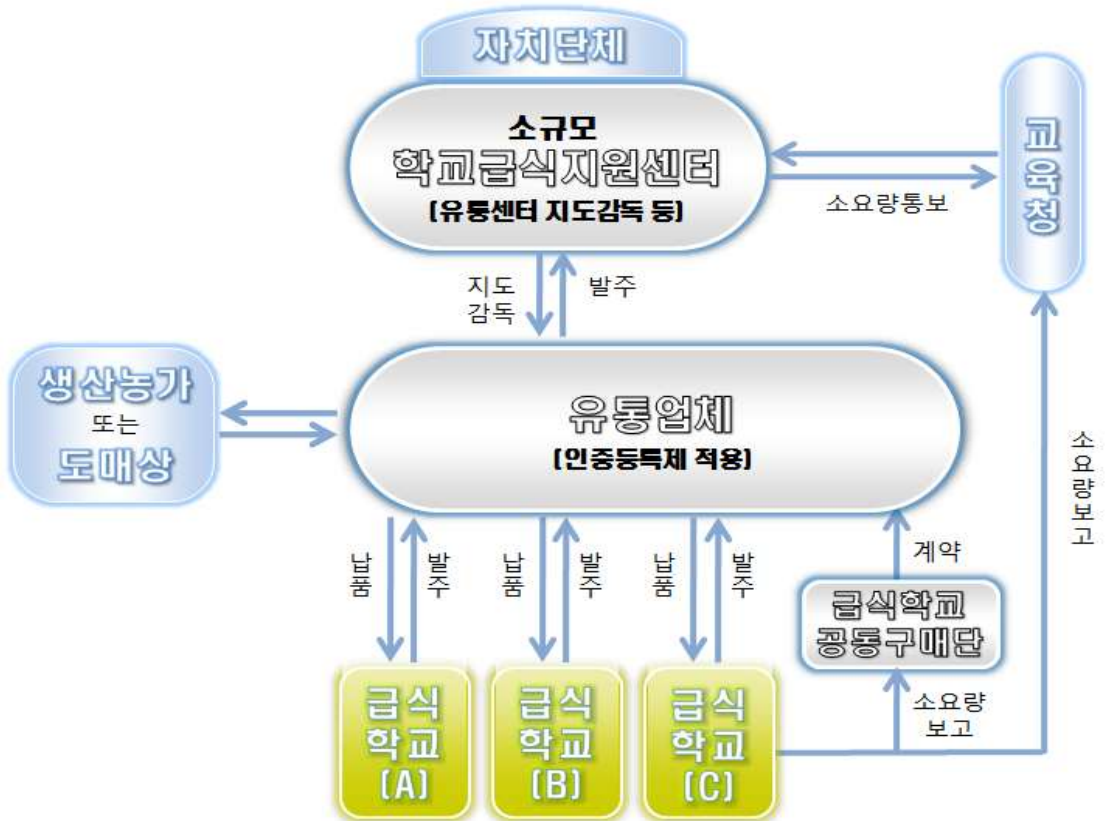


<b>특 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물류의 전처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음</li> <li>○ 급식지원센터 미 취급 품목은 등록인증 유통업체를 통하여 조달</li> <li>○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품목을 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적음</li> <li>○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li> </ul>
<b>장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유통업체의 활용이 가능(단, 인증받은 우수업체)</li> </ul>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li> <li>○ 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업체 인증등록, 지도 감독, 물류, 지원기능</li> </ul> </li> <li>○ 지원센터 미 취급 품목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li> <li>○ 취급품목에 대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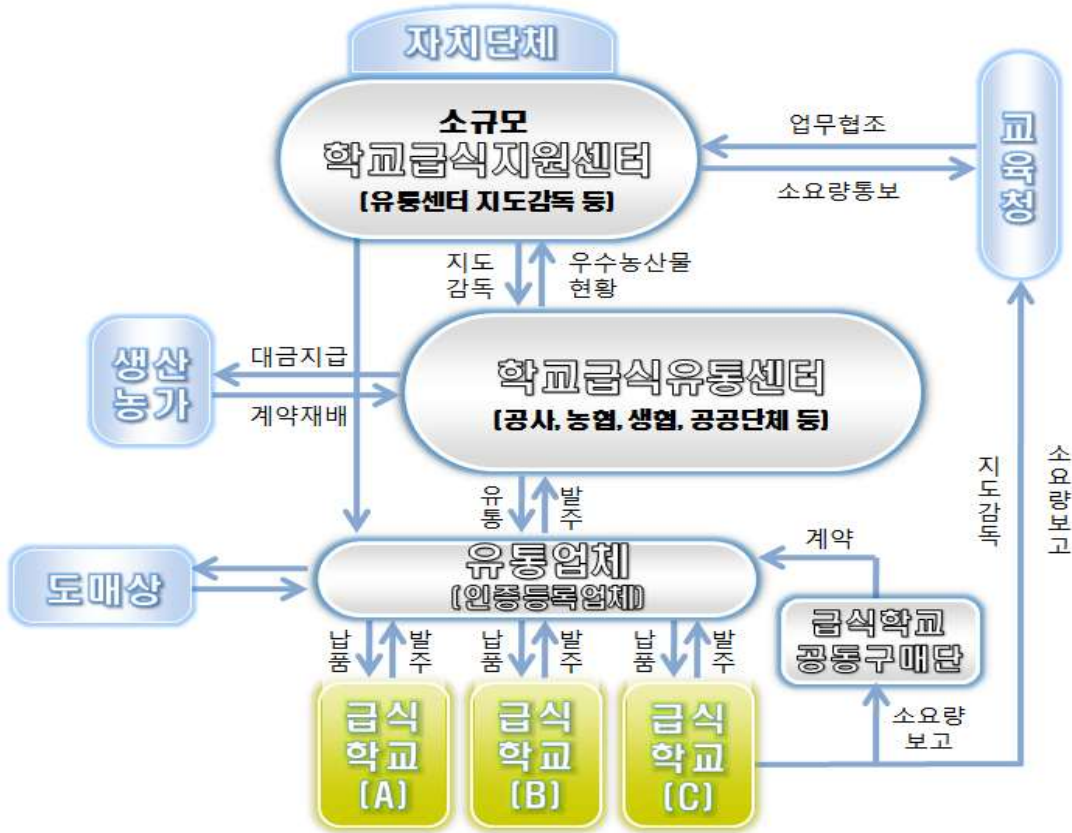


□ 제4안: 인증등록 유통업체 관리형 - 도시형(공동구매제 적용형)



<b>특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지원센터만 설치하고, 별도의 물류센터를 건립할 필요 없이 등록·인증된 유통업체를 활용하여 물류를 공급하고 급식지원센터는 유통업체를 지도 감독</li> <li>○ 기존유통업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등록·인증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유통업체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음</li> </ul>
<b>장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가 가장 적게 소요</li> <li>○ 기존의 유통업체의 활용이 가능(단, 인증 받은 우수업체)</li> </ul>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인증등록업체의 선정 및 지속적 관리 감독 요구</li> <li>○ 우수 농산물 활용도 저하 우려</li> </ul>

□ 제5안: 위탁 유통센터 혼합형 - 도·농 복합형(공동구매제 적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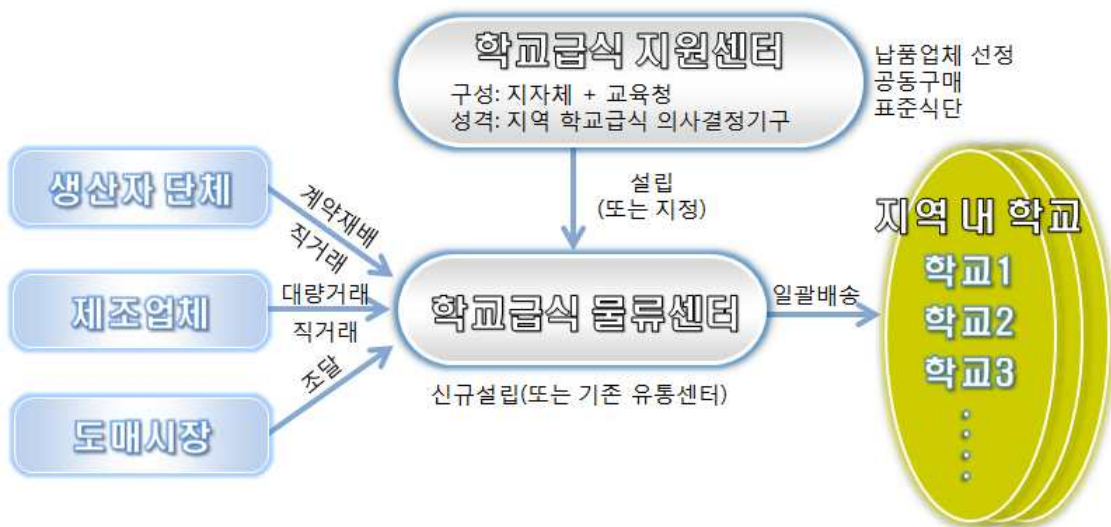


<b>특 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지원센터에서 유통센터를 지도하고 기존의 유통업체를 대리점 체계로 활용하는 방안,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 최소화</li> <li>○ 급식지원센터 기능과 물류유통센터 기능을 분리하여 물류유통센터 기능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경영하여 효율적 운영가능</li> <li>○ 급식지원센터는 모든 품목을 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적음</li> <li>○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서 공동부담</li> </ul>
<b>장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센터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기존업체까지 활용할 수 있음</li> </ul>
<b>문제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단체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에 대한 갈등 우려</li> <li>○ 위탁경영하는 급식유통센터는 비영리성, 공익성이 요구됨</li> <li>○ 취급품목에 대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위험성 내재</li> </ul>

□ 물류센터 유·무별 지원센터 모델(안)<sup>9)</sup>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1안: 물류센터가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지역 내 식재료 구매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및 공동구매 등을 담당함. 교육청은 표준식단을 작성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제공함
  - 대량 취급을 통한 물류 효율화를 위해 학교급식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함. 이때 학교급식물류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거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물류센터가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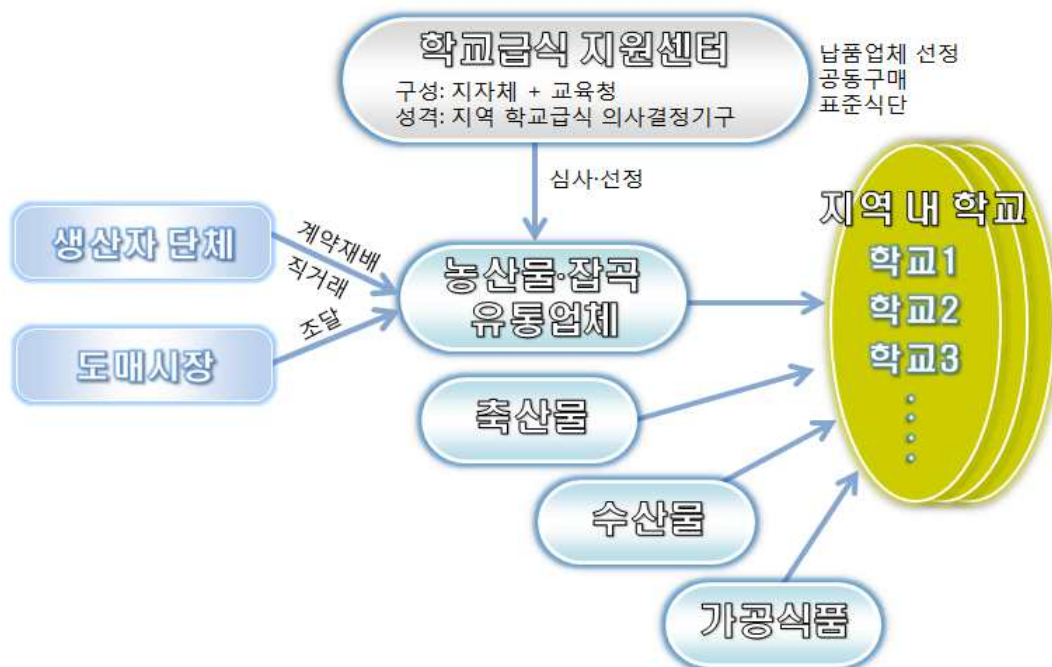


9) 자료:2006,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농협경제연구소; 2006,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평가 및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제2안: 물류센터가 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물류센터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유통시설을 물류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모두 여의치 않은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내 학교급식 의사결정 기구로서 납품업체의 선정 및 공동구매를 담당. 교육청은 표준식단을 작성
- 식자재를 학교로 배송하는 역할은 식자재 납품업자가 담당.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등이 직접 학교에 배송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물류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자료: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농협경제연구소 안진용 수석연구원」 참조 (「'2006년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평가 및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재인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안) 분류<sup>10)</sup>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안) 분류]

구분		협의체 (지원센터)	유통센터 (물류센터)	유통업체 (배송업체)	공동구매단	생산자 계약 대상	학교 계약 대상 (발주 대상)
교육 과학 기술부 제시 (안)	제1안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			×	지원센터	미구분 (지원센터)
	제2안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		별도	×	지원센터, 유통업체	미구분 (지원센터, 유통업체)
	제3안	지원센터 담당	별도 (유통센터)		×	유통센터	미구분 (유통센터)
	제4안	지원센터 담당	별도 (유통업체)		○	유통업체	유통업체
	제5안	지원센터 담당	별도	별도	○	유통센터	유통업체
추가안	제6안 <sup>11)</sup>	지원센터 담당	별도 (유통업체)		지원센터 담당	유통업체	미구분 (지원센터)
	제7안	지원센터 담당	별도	별도	×	지원센터	지원센터

- 크게 협의체 기능, 유통센터의 운영, 배송수행 및 공동구매단 운영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각종 계약업무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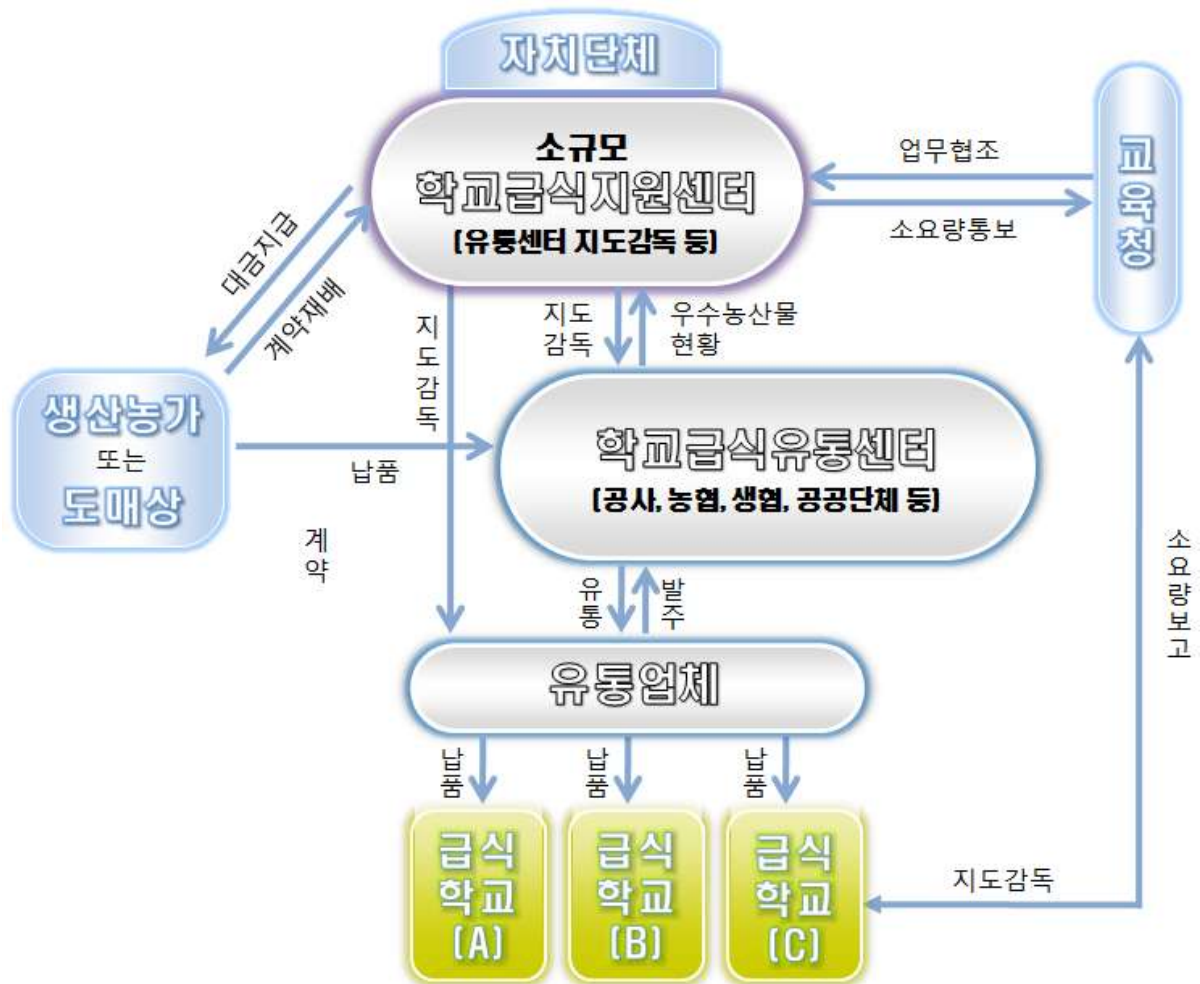
10) 여기서는 기존의 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델(안)은 3장에서 정리하여 제시

11) 물류센터가 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를 의미함. 물류센터가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제3안과 중복되어 생략함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본 역할인 협의체 기능은 모든 모델(안)에 포함
- 제1안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의체 및 물류센터, 배송업체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며,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발주를 하고, 생산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을 맺는 모델임
- 제2안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의체 및 물류센터의 기능을 하되, 배송업체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 모델임. 해당 모델은 생산자와 계약대상이 되는 주체와 학교가 발주를 하는 주체가 2개(지원센터 및 유통업체)인 형태로, 계약·발주 관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음
- 제3안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의체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물류센터 및 배송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유통센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모델임
- 제4안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의체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별도의 물류센터 없이 배송업체를 활용하는 모델임. 단, 제1~3안과 달리 학교에 급식품 공동구매단이 존재
- 제5안의 경우 제4안의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모델임
- 제6안 물류센터가 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안)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의체의 역할을 담당. 물류센터의 기능이 없는 대신 배송업체가 학교로 배송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3안과 유사하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품 공동구매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7안의 경우 협의체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외에 물류센터와 배송업체를 각각 둔 모델로 교육과학기술부 제5안과

유사함. 그러나 공동구매단이 없다는 점과 생산자 및 학교와의 계약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제7안: 협의체 + 물류센터 + 배송업체(공동구매단 제외) 모델]





###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3.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요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협 신선편이센터
해당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16개시군)	경기 양평군	경기 안성시
사업범위		학교급식 도매시장관리	학교급식	학교급식, 대형유통, 소매 판매	학교급식, 대형유통, 외식업체 납품
학교급식사업 범위 및 규모		서울시 관내 1학기 196개교 2학기 254개교	경기도 관내 1학기 204개교 2학기 244개교	관내 19개교 관외 173개교	관내 27개교 관외 70개교
학교급식 사업시작 연도		2010년 (센터준공과 함께)	2010년	2005년	2009년
인력 규모	전체	12명	4명	55명	14명
	급식	총 12명 : 센터총괄 2, 가격/산지/수발주 3, 배송업체/CS 3, 검수검품/안전성 검사 2	총 4명 : 사업총괄 1, 사업담당 1, 정산 및 회계 2	(관내) 총 10명 수발주, 물류 등	(관내) 총 3명 : 수발주1, 물류1, 총괄 1
전체 사업규모		학교급식 150억(1학기), 년 300억 이상 예상. 도매시장관리사업 (미추정)	102억원(1학기) 년 210억원 예상	200억원	150억원
학교급 식사업	규모	300억	210억원	130억원	80억원
	비중	-	100%	65%	60%
	관내	300억	210억원	20억원	32억원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해당시군		경남 김해시	전남 순천시	경북 문경시	전남 나주시
사업범위 및 규모		학교급식 중심 일부 직거래	학교급식 신선편이 전처리	학교급식(쌀), 산물벼 판매	학교급식, 전처리 및 농산물 유통
학교급식사업 범위 및 규모		관내 72개교 서울시 200개교	관내 72개 관외 15개	관내 37개교 관외 4개교	관내 118개교
학교급식 사업시작 연도		2007년	2004년	2007년	2005년
인력 규모	전체	35명	22명	3명	11명
	급식	총 18명 : 산지매입4, 학교담당5, 회계/작업장9 (배송 외부용역8)	행정 3명 배송 15명 소분포장 4명	총 3명 : 대표이사, 공장장, 회계 (이외 15명 법인출자능가 자발적 지원)	총 3명 : 급식총괄1, 급식정산1, 리콜/운송/업무 전반1
전체사업규모		68억원	150억원	8억원	학교급식만 38억원
학교급 식사업	규모	68억원	70억원	5억원	38억원
	비중	100%	46%	60%	-
	관내	15억원	63억원	4억원	28억원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해당시군		경북 영주시	전남 목포시	충북 청원군	
사업범위 및 규모		학교급식, 전처리사업, 친환경쌀수매	학교급식	온라인 판매, 학교급식, 대형유통	
학교급식사업 범위 및 규모		관내 39개교 유치원 30-40개	관내 65개교('09) → 20개('10)	관내 40개교	
학교급식 사업시작 연도		2008년	2004년	2009년	
인력 규모	전체	3명	10명	24명	
	급식	총 3명 : 지원팀장1, 시설관리1, 배송관리1	총 10명 : 정산4, 구매1, 소분작업5	총 7명 : 총괄1, 구매1, 수발주1, 작업장4	
전체사업규모		500억(영주농협 경제사업)	25억원	95억원	
학교급 식사업	규모	10억	25억원	12억원	
	비중	2%	100%	15%	
	관내	6억원	25억원	12억원	

##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현재(2학기 기준) 서울시 관내 254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진행
- 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유통센터 준공(2010년)과 함께 시작하여 현재 센터총괄 2명, 가격/산지/수발주 3명, 배송업체CS 3명, 검수검품/안전성검사 2명 등 총 12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되며, 2010년 매출규모는 약 300억원 예상(1학기 매출액 150억원)

### ■ (사)클린팜당

- 경기도 G마크농산물(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사업 사업주체인 (사)클린팜당은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참여하여 구성된 생산자 중심 조직
-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 244개교(2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G마크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매출규모는 약 210억원 예상(1학기 매출액 102억원)
- (사)클린팜당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유통센터(시설)가 없으며, 경기도내 3개 거점조직(G마크사업단, 안성마춤농협, 양평지방공사)을 지정하여 수발주 및 유통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 산지 거점조직 시설의 활용으로 인해 자체 운영인력은 사업총괄 1명, 사업담당 1명, 정산 및 회계 2명 등 4명으로 매출액 대비 인력이 매우 적은 편임

## □ 광역 급식지원센터 연계,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 양평지방공사

- 양평지방공사는 관내 및 관외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외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사업의 거점조직으로 참여하여 관내 19개교, 관외 173개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음

- 전체인력 55명 중 총 10명이 학교급식사업 전담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매출규모는 관내 20억원, 관외 110억원 등 약 130억원 정도
  -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는 2009년 관내 우수농산물학교급식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경기도 G마크학교급식사업의 거점조직으로 참여, 관내 27개교 및 관외 70개교에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전체인력 14명 중 사업총괄 1명, 수발주 1명, 물류 1명 등 총 3명이 학교급식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2010년 매출액은 관내 32억원, 관외 80억원 등 총 112억원으로 예상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07년 친환경학교급식을 시작하여 현재 관내 72개교, 서울시 200개교 등 272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매출규모는 관내 15억, 관외 53억 등 총 68억원이며, 산지매입 4명, 학교담당 5명, 회계/작업장 9명 등 총 18명으로 운영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관내·관외 학교급식)
-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는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 시작, 현재 관내 72개교 및 관외 15개교(구례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학교급식사업 외 신선편이사업, 전처리 사업 등을 진행하여 전체 사업 규모는 150억원, 이 중 학교급식사업은 관내가 63억원, 관외가 7억원 등 70억원(46%)임
    - 운영인력은 행정 3명, 배송 15명, 소분포장 4명 등 총 22명임
  -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
    -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은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목반을 통해 관내 37개교 학교와 서울지역 4개교에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공급

- 총 3명의 관리인력(대표이사, 공장장, 회계)과 법인에 출자한 농가들(15 농가)의 자발적 지원(배송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식납품 이외에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쌀을 출하
- 총사업규모는 8억원으로 이 중 학교급식사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5억원(60%) 정도임

####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관내학교급식)

##### ■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은 학교급식, 전처리사업 그리고 일반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사업은 2005년에 시작하여 현재 나주시 관내 118개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전체 인력 11명 중 학교급식사업 전담인력은 3명(급식총괄1명, 급식정산 1명, 리콜/운송/업무전반 1명 등)이며, 학교급식 매출규모는 38억원임

##### ■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처리시설을 활용한 전처리사업과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 현재관내 39개교 및 30~40개의 유치원/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지원팀장 1명 및 시설관리 1명, 배송관리 1명 등 총 3명이 학교급식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매출규모는 약 6억원임

##### ■ 목포시농협유통센터

- 목포시농협유통센터는 2004년부터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관내 20개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정산 4명, 구매 1명, 소분작업 5명 등 총 10명으로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매출규모는 약 25억원임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09년도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 시작, 현재 청원군 관내를 중심으로 40개교에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음
-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온라인판매 및 대형유통 납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매출액은 95억원에 이룸
- 전체 인력 24명 중 학교급식사업 전담인력은 7명(총괄 1, 구매1, 수발주 1, 작업장 4)이며, 학교급식 매출규모는 1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범위별 현황]

구 분	사업범위	대상 급식지원센터	평균 매출규모(년)	평균 학교수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팔당클린	255억	249개
광역 급식지원센터 연계/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관외) / 시군단위	안성마춤신선편이센터 양평지방공사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93억	187개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관내/관외 학교급식)	관외/ 관내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70억	87개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관내 학교급식)	관내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1억	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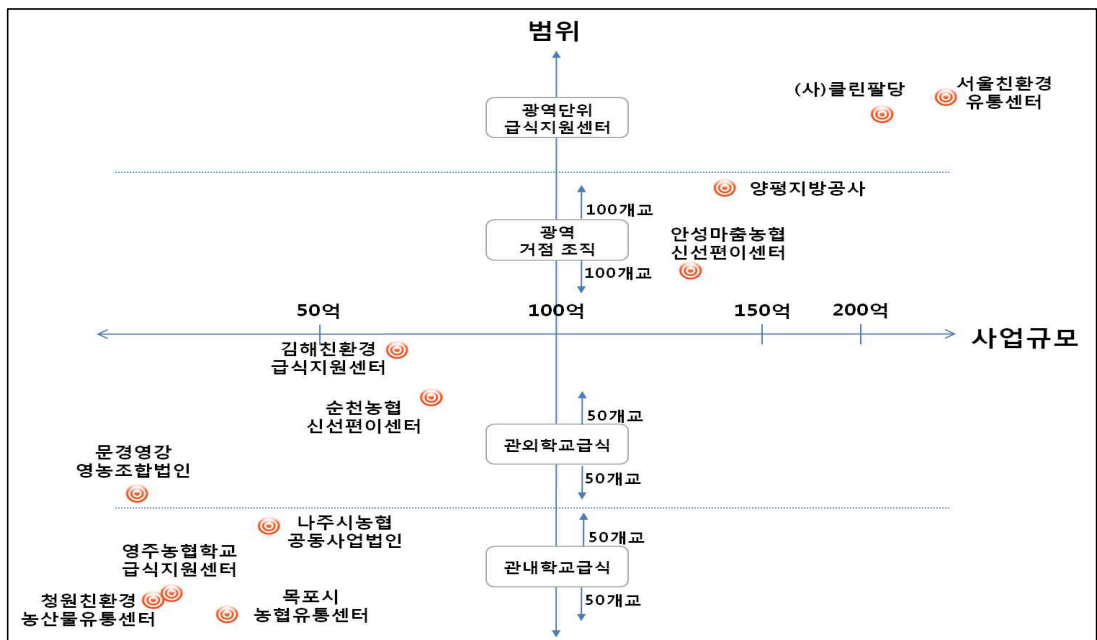
\* 주) 친환경쌀만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은 비교표에서 제외

□ 사업범위 및 사업연계에 따른 매출규모

- 관내학교급식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주 및 목포 등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비해, 관외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더 나아가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매출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즉, 지역의 범위에 비례하여 사업 및 매출규모가 증가함

-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규모화된 수급 및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조달이 가능하여야 함. 단순 매출액 규모로 살펴보면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에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매출의 규모화를 추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관외학교급식으로의 사업 확장을 하거나 다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특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함
  -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의 경우 2009년 학교급식사업 매출규모는 약 20억 수준이었으나,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사)클린팜당)와의 연계를 통해 2010년 100억원 규모로 매출규모 증가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관내 및 경남도내 인근시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학교급식에 참여함으로써 원물조달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음

[학교급식 사업범위 및 연계에 따른 매출규모 비교]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주체	대상급식지원센터	비고
지자체(공사형태 등)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양평지방공사	
농협	(사)클린팔당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영주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사)클린팔당은 '10년 조합공동사업법인추진  목포시농협유통센터는 지자체와 공동투자를 통해 농협이 운영
영농조합법인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 3.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사업 관련 지자체 지원 현황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협 신선편이센터
학교급식 조례제정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우수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방식	학생 1인당 150원 학교에 현금지원, 서울시와 해당구청 6:4-7:3 보조비율, 친환경농산물 70%이상, 친환경축산물 50% 이상 사용의무	학생 1인당 초등 140원, 중고등 180원 학교에 현금지원, 광역3: 기초7 보조(쌀 제외), 의무품목(40) 사용규정을 통한 일반농산물 사용 제한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액 보조 차액에 대한 명확한 비율은 없으며, 시장가격 조사에 따라 변동 적용 지원	우수(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현물지원(일반농산물 대비 차액(30%)을 사업주체에 지원)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취급 제재	제재사항 없음 (100% 관외 농산물 사용)	제재사항 없음 (관내물량 우선수급 원칙)	제재사항 없음	제재사항 없음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학교급식 조례제정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방식	학생 1인당 330원 학교에 현금지원(쌀, 축산 모두 포함)		정부미 가격기준 차액 지원	쌀 포함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용 60%를 사업주체에 지원하는 현물지원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취급 제재	타산지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원금 없음	순천관내 및 전라남도산으로 제한	제재사항 없음 (친환경쌀 관내사용 유도)	나주시/전남 관내 농산물 공급, 관외 상품 보조금 지원불가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 조례제정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有(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방식	학생 1인당 초중등 250원, 고등 200원 학교에 현금지원, 친환경쌀 정부미가격기준 차액지원 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	전년 10월 가격협의회 결정 사항을 군에서 지원(전체 공급가 약 50%수준) 보조금 규모 유동적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취급 제재	제재사항 없음 (관내 기반부족)	타산지 허용품목 규정. 이외 사용적발시 1회 경고, 2회 3개월 공급중단, 3회 해당연도 중단	제재사항 없음 (가급적 군내 농산물 사용유도)	

## □ 학교급식 조례제정 현황

- 현행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두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사용에 대한 지원조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안성시의 경우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원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 □ 학교급식 보조금 규모 및 지원형태

- 현금지원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영주시, 김해시 등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해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해당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금지원에 대해 서울시(친환경농산물 70% 사용이상, 친환경축산물 50% 사용이상), 경기도(40개 의무품목 사용규정), 김해시(타산지농산물 사용에 대한 보조 불가) 등은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현금지원 방식상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으나, 영주시의 경우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대상 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음
- 현물지원
  - 안성시 및 양평군, 문경시, 나주시, 청원군 등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여 그 차액(또는 일정 금액)을 사업주체에 지원하고 있음
  - 안성시는 우수(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약 30%를 사업주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청원군은 전체공급가의 약 50%를, 나주시는 쌀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의 60%를 사업주체에 지원하고 있음
  - 양평군은 시장가격 조사에 따라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변동 적용하여 지원하며, 문경시는 친환경쌀에 한해 정부미와의 가격차액(매년 초 학교급식심의회를 통해 관내 친환경쌀 가격결정)을 지원함

□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제재사항

- 목포시는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허용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품목 이외 사용이 적발될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단계적인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3개월 공급중단, 3회 적발시 해당연도 공급중단)
- 나주시는 나주 및 전라남도 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 보조금(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의 60%를 사업주체에 현물지원)을 지급하지 않음
  - 김해시도 타산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도 나주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의 관내 수급을 1순위로, 관내수급이 어려울 때 전라남도산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외 경기도와 청원군에서는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으나, 관내물량 수급을 우선 유도하고 있음
-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친환경생산기반 미흡 및 품목수급 불균형(서울, 문경, 안성 등) 등으로 타산지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음
- 관내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수급을 위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혹은 다른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구축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3.3.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총괄(관내 학교급식에 한함)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팜당	양평 지방공사	인성미충농협 신선편이센터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문경영양 영농조합법인
학교와 계약	×	○	○	○	○	○
(주요)급식 품목	농수축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쌀
학교수발주	×	×	○	○	○	○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	× (구축 중)	○	○	○	×
산지수발주	×	×	○	○	○	자체가 산지
산지 물류	×	×	○	○	○	자체가 산지
소분/포장/피킹	×	×	○	○	○	○
전처리/가공	×	×	○	○	○	○
(산지 물량) 검수검품	○	×	○	○	○	자체가 산지
안전성 검사	○	○	○	○	○	×
학교 물류	×	×	○	×	○	○
학교와 정산	×	×	○	○	○	○
산지와 정산	×	×	○	○	○	자체가 산지
보조금 정산	×	×	○	○	×	○
클레임 처리	×	×	○	○	○	○
기타	사업총괄 관리	사업총괄 관리				쌀 품목만 급식

구분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영주농협학교급 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농산 물유통센터
학교와 계약	○	○	○	○	○
(주요)급식 품목	농산물 쌀	농산물	농산물 쌀	농산물	농산물
학교수발주	○	○	○	○	○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	○	×	×	○
산지수발주	○	○	○	○	○
산지 물류	×	○	○	×	×
소분/포장/피킹	○	○	○	○	○
전처리/가공	○	○	○	×	○
(산지 물량) 검수검품	○	○	○	○	○
안전성 검사	○	○	○	○	○
학교 물류	○	×	○	○	○
학교와 정산	○	○	○	○	○
산지와 정산	○	○	○	○	○
보조금 정산	×	○	×	○	×
클레임 처리	○	○	○	○	○
기타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단위별 역할 구분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클린팔당)는 상당한 사업규모로 인해 사업 총괄관리 외에 학교급식사업의 실무부문은 일부 역할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클린팔당은 학교와의 수의계약 및 안전성검사(샘플채취 후 외부기

관의뢰)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물량에 대한 검수/검품 및 자체 시설을 활용한 안전성검사와 자체 수발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사)클린팔당 개발 중)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시군단위를 기반으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양평과 김해 등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약과 수발주, 물류, 포장, 가공(전처리), 검수/검품, 정산, 클레임 등 학교급식 제반업무 전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보조금 지원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양평, 안성 등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물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보조금 정산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구분]

구분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단위 연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관외/관내
해당 지원센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양평지방공사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등
학교급식 사업역할	광역 학교급식사업 총괄	광역 학교급식사업 기능보완 학교급식사업 실행단계 총괄	학교급식사업 실행단계 총괄
세부역할	연계조직(거점, 배송업체) 조정 및 관리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학교-광역-거점) 검수/검품 및 안전성 검사(유통물류시설보유시)	광역지원센터 기능 보완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산지 및 학교) 물류(산지 및 학교) 포장(소분, 피킹포함) 및 가공 검수/검품 및 안전성 검사 정산 및 클레임 처리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산지 및 학교) 물류(산지 및 학교) 포장(소분, 피킹포함) 및 가공 검수/검품 및 안전성 검사 정산 및 클레임 처리

### 3.4. 학교급식지원센터 세부 역할

구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학교와 계약	배송업체(권역별 선정)가 학교와 수의계약 실시, 계약기간은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1-2개월 단위	사업주체가 학교와 수의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학교별 상이(수의계약 상한 금액 한계/학교자체 사정 등)	사업주체와 학교가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사업주체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과 차이없음)	사업주체와 학교가 수의계약 체결
수발주	학교와 배송업체간 월단위 수발주 진행. 배송업체별 발주내용을 센터에서 통합, 통합된 학교발주 내용은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 산지에서 확인 가능	학교-거점-산지간의 직접적인 수발주 체계. 학교-거점간 주단위(거점별 수발주 프로그램 상이), 거점-산지 일단위. 사업주체는 거점-산지간 발주물량 관리	사업주체 직접 수발주(양평지사에서 시행). 학교에서 NEIS 활용 엑셀파일 발주(인터넷/팩스), 산지에는 일일단위 팩스로 발주	사업주체 직접 수발주. 학교에서는 NEIS를 통해 엑셀파일로 이메일, 팩스 등 이용 주단위 발주. 자체 시스템으로 산지 주단위 수발주
산지 물류	산지에서 학교발주에 맞게 소분/포장/전처리 상태로 입고되며, 피킹작업까지 수행	산지(출하회/관외)별 차이(자체입고 또는 거점 순회수집)	학교배송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순회수집	관내 지역농협 순회수집, 관외 업체/지입차 활용
소분/포장/피킹		소분/포장 산지 자체(일부 품목별 상이), 거점 피킹작업	산지에서는 원물 수급으로 소분/포장/피킹/전처리 기능 모두 사업주체 수행	소분/포장/피킹/전처리 기능 자체 수행
전처리/가공		3개 거점에서 실행 (일부 산지 실행)		
(산지 물량) 검수검품	전량 검수/검품 실시	거점에서 샘플 검사 실시(육안검사)	샘플 육안검사 실시 (생산검품팀 자체 검품기준)	자체 육안검사 및 잔류농약검사 실시
안전성 검사	자체 안전성 검사소에서 일반농산물 전수 간이검사, 친환경농산물 샘플검사 실시	사업주체가 거점 입고 물량에 대해 샘플 채취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자체 잔류농약검사 실시	자체분석실을 통해 잔류농약검사 실시
학교 물류	배송업체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학교별 배송	16개 시군별 배송업체를 선정하여 학교 배송	양평지사 직접 배송(6대 차량)	배송업체에 위탁운영(총 10대 운영, 8-9시 입고)
학교와 정산	학교와 배송업체가 정산	학교와 직접 정산(30일 결제)	학교→사업주체(월 단위)→산지	학교와 직접 정산(월단위)
산지와 정산	배송업체와 산지 정산. 이후 산지에서 일정 수수료 센터 납입	거점에서 산지와 정산(15일 결제) (농협중앙회 선지급 기능 부여)	정산까지 37일 결제 (산지의 경우 필요/요구시 선지급 가능)	월단위 정산 실시 (공급단가협의회, 결정간가 지급방식, 선지급 가능)
보조금 정산	학교에서 해당 구청에 청구/수령	학교에서 해당 지자체에 청구/수령 (거점 확인서 지원)	사업주체가 보조금 청구/수령(60일 결제)	사업주체가 보조금 청구/수령
클레임 발생 및 처리	학교당1일0.07건(상태/포장/규격 불량) 배송업체 처리	학교당1일0.02건(상태/중량)발생. 거점/배송업체 처리	중량미달 클레임 일부(월20만원미만), 사업주체 직접 처리	학교당주2회정도발생(규격/상태/중량). 사업주체 직접 처리
기타	사업주체는 서울시 학교급식사업 총괄	사업주체는 경기도 학교급식사업 총괄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학교와 계약	지자체지원 인증업체 2곳 선정. 최저단가 입찰제 실시(가격을 학교에 제시하는 편)	면단위 15개교는 수의계약(사업성으 로인한 경쟁업체 진입주저) 시내권:최저가입찰	사업주체와 학교가 수의계약(1년) 체결	사업주체(보조금 지원 대상임)와 학교가 수의계약 진행
수발주	NEIS 엑셀변환 후 메일전송, 1분작업으로 전용 파일변환 활용, 월단위 발주 실행, 산지 2-3일전 발주(업체류 등)	자체시스템 및 NEIS를 검용(자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음) 주단위 수발주	학교에서 발주(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발주 확인 후 도정/배송 실시. 쌀만 취급하여 수시발주로 일정기간의 수발주 없음	자체개발 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사용, 학교수발주 내용을 엑셀 변환하여 산지(공급농협) 전달. 주단위 수발주.
산지 물류	자체차량 5대 순회수집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위탁운송	전량 수매를 통한 원료곡 확보	1일 2회 산지농협 농가 원물 수집
소분/포장/피킹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소포장 기능 수행 (그 외 기능 불필요)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전처리/가공	전처리 기능 수행	전처리기능수행	도정 기능 수행 (전처리 불필요)	전처리 기능 수행
(산지 물량) 검수검품	육안으로 1박스 샘플검사, 산지 생육관리 철저	배송담당자가 표준규격기준에 따른 육안검수/검품	친환경쌀재배단지내 품질 검사 및 관리	육안검사로 검수검품 실시
안전성 검사	미파악	미파악	미파악	미파악
학교 물류	배송차량 8대 (1대당 8개교 이상, 학교와의 강력한 신뢰 구축)	자체차량(5대), 지입차량(10대) 활용	배송차량 2대 운영. 특정 도착시간 없음	한화 푸디스트 배송 대행(공급가 10% 배송비)
학교와 정산	학교와 직접 정산 (30일 결제, 익월 10일까지)	1개월 단위 결제	학교와 직접 정산(30일 결제, 익월 초까지)	학교와 직접 정산 (매월 공급사실 확인서/계산서 발행)
산지와 정산	산지(회원)와 직접 정산 (30일 결제, 선결제 지원 불가)	익일 단위 결제	전량 수매 (수매가 지급)	산지와 직접 정산 (30일 결제)
보조금 정산	학교에서 월별 보조금 청구 (사업주체와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수수료 2.6%발생)	년 1회 보조금정산	사업주체가 시에 보조금 청구/수령	사업주체가 시에 보조금 청구/수령
클레임 발생 및 처리	매출의 5%정도가 클레임 비용임 사업주체 100% 책임의 직접 처리	1일 5회 정도 발생 배송후 영양사와 대면검수, 클레임 발생시 직접처리 클레임발생분에 대해 농가교육시 권고사항 전달	0.01% 정도 발생 직접 클레임처리	1일 3-5건 발생(미입고, 품위부량 등)
기타			친환경쌀만 학교급식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학교와 계약	수의계약, 위탁급식, 통합조리, 전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	수의계약 및 입찰 병행(계약가의 90%수준에서 최종 계약, 입찰 전환 후 마진율 급감)	매월 급식학교 수의계약 추진	
수발주	학교/산지와 전화, 팩스, 배송차량 등으로 주단위 수발주 실행. 수발주 관련 자체 전산시스템 미구축(향후 예정)	NEIS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다운받은 후 파일 송부. 학교와는 월단위 수발주, 산지와는 경제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단위 수발주 실행	자체 학교급식 지원프로그램 운영(일부 학교에서만 사용), 대부분 학교 엑셀표 변환 발주(월단위), 산지는 팩스, 전화, 문제 발주(주단위)	
산지 물류	농가차량이용, 순회수집 병행	농가/농가단체 자체차량 이용한 센터 입고	농가/납품자 직접 입고 방식	
소분/포장/피킹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소분/포장/피킹 기능 모두 수행	
전처리/가공	전처리 기능 수행	전처리 기능 수행	전처리 기능 수행	
(산지 물량) 검수검품	샘플검사를 통해 육안검사, 당도검사, 잔류농약검사 시행	미파악	샘플검사 실시 (자체 품질, 규격기준 보유)	
안전성 검사	샘플검사를 통해 잔류농약검사 시행	미파악	미파악	
학교 물류	배송차량 7대 운영	배송차량(지입) 12대 운영	배송차량(지입) 10대 운영	
학교와 정산	학교와 직접 정산 (30일 결재, 익월 10일까지)	학교와 직접 정산 (30일 결재)	학교와 직접 정산 (30일 결재)	
산지와 정산	산지와 직접 정산 (30일 결재, 선결재 지원 가능)	익일 정산	1주일 단위 결재 (선금금 운영)	
보조금 정산	학교에서 분기별 보조금 청구/수령 (확인서 지원)	사업주체가 월단위 청구/수령	학교에서 월단위 보조금 청구/수령	
클레임 발생 및 처리	주 1-2회 정도 발생(중량/신선도) 직접 처리	1일 10%(매출액 대비)수준, 대부분 품위, 직접 처리	주 5건 정도 발생(매출액 대비 0.6%). 대부분 상태불량, 파손. 직접 처리	
기타				

## □ 학교와의 계약

- 대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와 학교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서울시친환경유통공사의 경우 배송업체와 학교간 계약 체결
- 수의계약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 G2B 입찰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 수의계약, G2B입찰 병행 : 양평지방공사,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등
-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수의계약, 위탁급식, 통합조리, 전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 수발주 시스템

- 대부분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발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사용(입력)하는 경우는 순천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일함
- 순천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래하는 학교에서 NIES 입력 자료를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발주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자체 수발주 시스템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
  - 월단위 발주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주단위 발주 : (사)클린팔당,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는 향후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친환경쌀만 취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발주 체계 불필요
- 산지와 수발주는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메일(문서 전달),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이루어짐
  -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농협 경제종합시스템 활용). 단,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제외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체 산지만 해당함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활용 : 양평지방공사,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 □ 산지 및 학교 물류

- 산지 물류의 경우 자체 순회수집, 농가 직접 입고, 업체/지입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양평지방공사,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등은 학교 배송차량을 활용하여 산지 농산물 순회 수집
- 학교 물류의 경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사)클린팔당과 같은 광역단위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배송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 학교 물류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체차량 및 지입차를 활용하고 있음.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의 경우 대기업을 배송업체로 활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급식학교 3~4개교당 배송차량 1대를 운영(오전 7시부터 9시까지)하고 있지만,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경우 학교와의 강력한 신뢰관계 바탕으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배송차량 1대가 8개 이상의 학교를 배송하고 있음

□ 소분/포장/피킹/전처리

- 학교급식지원센터별로 상이하며, 소분/포장/피킹/전처리를 모두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접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소분/포장/피킹/전처리 모두 수행 :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양평 지방공사,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김해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 그 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산지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클린팜당은 거점조직을 통해, 그리고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쌀만 공급하기 때문에 소포장 기능만 수행함

□ 검수검품 및 안전성 검사

- 산지 물량에 대한 검수검품은 대부분 샘플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방법은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며,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당도검사 및 잔류농약검사까지 실행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는 자체 안전성검사소와 분석실을 운영하여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
  - (사)클린팜당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샘플 검사 실시
- 학교에서의 검수검품은 영양교사와 대면 검수검품이 일반적이나,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검품기준이 불명확해 학교(영양교사)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학교, 산지 및 보조금 정산

- 학교와의 정산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직접 정산이며, 월단위로 정산함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배송업체가 계약주체로 학교와 배송업체 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배송업체와 산지 정산 후 산지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정산을 하는 체계임
- 산지와 정산도 학교와의 정산과 함께 월단위 정산이 대부분이며, 선지급 능력 여부에 따라 1일, 1주 또는 2주 단위 정산이 이루어짐
  - 월단위 정산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양평 지방공사(요청시 선지급)
  - 2주단위 정산 : (사)클린팜당(농협중앙회 선지급 활용)
  - 1주단위 정산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자체 선지급 운영)
  - 1일단위 정산 :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 □ 클레임 발생 및 대응

- 클레임 발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클레임 종류는 대부분 상태불량, 규격 미달, 중량 미달, 미입고, 표기 사항 오류 등의 순임
- 클레임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접 대응하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배송업체, (사)클린팜당은 배송업체와 거점조직이 대응함
- 클레임 처리비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규모, 경험, 학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5% 정도임

### 3.5.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기구 운영 현황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협 신선편이센터
학교급식 관련 관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li> <li>- 학교급식가격심의위원회</li> <li>- 산지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li> <li>- 납품배송협력업체선정심의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li> <li>- 학교급식공급가격결정협의회</li> <li>- 생산자가격결정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협의회 없음</li> <li>- 행정/영양교사/사업주체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가격 조사(월단위) 실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행정/농협/시교육청/생산자/영양사 참여 단가, 물량, 거래방법, 공급주체 등 협의</li> </ul>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학교급식 관련 관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 협의회 부재</li> <li>- 교육청 주관 간담회(년2회)</li> <li>-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급식관련 주요방향 결정, 업체자격심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li> <li>- 학교급식 공급가격 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교육청/시청/생산자등 10여명 구성, 공급자 선정 및 공급단가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li> <li>- 학교급식실무협의회(매월1회) : 산지농협, 학교운영위, 농가대표, 영양교사대표, 행정, 교육청 등 15명</li> </ul>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 관련 관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별 수시 간담회 개최(생산자 미참석) : 현황 및 체계에 대한 설명 등 향후 협의체계 구축, 운영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입찰제로 바뀌면서 현장점검 중심으로 기능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공급단가협의회 운영 : 월1회 단가 협의(민원, 개선사항 함께 협의)</li> </ul>	

#### □ 학교급식 협의기구의 운영

- 서울 및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급식방향논의, 공급주체선정, 공급단가 결정 등을 위한 학교급식협의기구 운영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산지공급업체선

정심의위원회’, ‘납품배송협력업체선정심의위원회’ 등 기능별로 세분화 된 학교급식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공급가격결정협의회’ 외 생산자와의 가격결정 협의를 위한 ‘생산자가격결정협의회’를 운영
- 나주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학교급식에 대한 실무사항 논의를 위해 산지농협 및 학교운영위, 농가대표, 영양교사대표, 행정 및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실무협의회’를 주기적(매월1회)으로 운영
- 이외 안성시와 문경시, 목포시, 순천시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군에서는 매월 공급단가 결정을 위한 ‘학교급식공급단가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
- 한편, 영주시와 양평군 등에서는 공식적인 학교급식협의기구 없이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학교급식협의기구 운영현황비교]

구 분	학교급식지원센터구분										
	서울	팔당	양평	안성	김해	순천	문경	나주	영주	목포	청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		○	○	○	○	○		○	
산지공급업체 심의위원회	○										
납품배송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공급가격협의회	○	○		○		○				○	
생산자가격 결정협의회		○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추진 중				○			

- 학교급식사업의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단계의 협의기구 운영은 미비한 수준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공식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사업의 실무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은 미비한 실정임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1~2회, 학교급식방향과 공급주체의 선정, 공급단가결정 등 한정된 주제와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실무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및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사)괄당클린의 경우 세분화된 기능을 가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간담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3.6. 사업주체 수행기능별 운영형태 모델링<sup>12)</sup>

#### □ 유통센터 운영, 배송 통합 직영형

구분	협의구조	유통센터운영 (물류센터)	유통/물류	생산자 계약(거래)주체	학교계약주체
유통센터 운영 배송통합직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실무단위협의회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실무단위협의회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양평지방공사	협의구조 부재				학교급식지원센터
영주농협 급식지원센터	협의구조 부재				학교급식지원센터

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학교급식센터 운영모델은 공동구매단 존재여부를 모델 분류의 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조사에서는 공동구매단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류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양평지방공사 등은 유통센터와 배송기능이 통합된 ‘유통센터 운영, 배송 통합 직영형’의 학교급식사업 형태를 띠고 있음
- 이 유형에서는 사업주체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통센터 및 배송 물류기능, 기타 생산자 및 학교와의 계약기능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유통센터운영, 배송분리형’에 비해 실무단위협의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이 유형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주로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단위에서는 간담회 형태의 실무관련 조정 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유통센터 운영, 배송분리형

구분	협약구조	유통센터운영 (물류센터)	유통/물류	생산자 계약(거래)주체	학교계약주체
유통센터운영 배송분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유통업체)	지원센터 유통업체	지원센터 유통업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실무단위협의회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유통업체)	별도(유통센터)	별도(유통업체)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실무단위협의회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유통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실무단위협의회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유통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은 유통센터와 물류기능이 분리된 ‘유통센터 운영, 배송분리형’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와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이 배송기능만 분리되어 운영되는데 반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유통센터 기능 외 배송, 생산자와의 계약, 학교와의 계약 등을 다른 연계조

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광역단위 학교급식과 관내 생산기반이 전무한 서울시 학교급식사업 여건과 연관되어 있음

- 특히, '유통센터 운영, 배송분리형' 모델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분화하여 다양한 세부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각종 실무단위 협의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유통센터 미운영, 총괄조정형



- (사)클린팜당은 자체 유통센터가 없이, 생산자 및 학교와의 계약주체 및 사업총괄기능을 수행
- 그 외 유통센터 및 배송은 관리조직(산지수집), 거점조직(소분, 포장, 가공 및 배송) 및 지역별 배송업체(학교배송)와 연계하여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운영
- 이러한 운영구조로 (사)클린팜당은 학교급식사업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광역단위에서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결정협의회, 생산자가격결정협의회, 생산자회의(출하회장단회의) 등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3.7.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급 현황

#### [취급 농산물 및 관내 취급률]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팜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협 신선편이센터
취급 농산물 및 관내 취급률	100% 관외 물량 사용 지역	엽채류 3-10월, 과채류 5-9월, 구근류 6-8월 정도 관내 농산물 수급 가능기간. 쌀 포함 잡곡류 미취급	쌀/사과/배/버섯류 100%, 과채류 5-10월, 당근 9-2월, 감자 7-2월, 양배추 9-10월, 대파 3-10월, 수박 6-9월, 참외 5-7월 관내 수급	잡곡류 80%, 구근류 51%, 양채류 48%, 조미채류 10% 정도 관내 수급 가능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취급 농산물 및 관내 취급률	과채류 80%, 구근류 100%, 엽채류 100%, 조미채류 100% 관내 물량	대부분 관내 조달 가능	(친환경)쌀만 취급 100% 관내	-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취급 농산물 및 관내 취급률	양파, 감자, 오이, 버섯, 당근, 대파, 무, 호박, 도라지, 생강, 깻잎, 시금치 등	쌀, 잡곡류, 구근류, 나물류, 엽채류, 과일류, 버섯류 등 대부분 관내 조달 가능	브로콜리 등 과채류 관외 조달	

#### □ 취급 농산물과 관내 취급률

- 대부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나,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친환경쌀만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음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등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대부분을 관내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이 가능하며,

그 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품목 또는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관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관·내외 농산물 조달 비율 및 경로]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관내 농산물	조달 비율	0%	25%	40%	30%
	조달 경로	-	자체 출하회(원), (거점)산지거래	농가 순회수집(직구매)	산지 직구매 (계통농협)
관외 농산물	조달 비율	100%	75%	60%	70%
	조달 경로	품목류별 전국 4개 주산지 지정	(거점)도매상 구매, 산지거래	산지 직구매, 농가계약재배	도매상 구매 산지 직구매
	공급 조건	친환경 인증 산지별 책임 출하	채소류 무농약↑, 과일류 저농약↑	인증/규격	인증 필수, 규격 중요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관내 농산물	조달 비율	80%(품목당 3농가 수준)	84%	100%	
	조달 경로	농가계약재배 (100%)	농가계약재배 (100%)	농가계약재배 (수매)	산지 직구매 (100%)
관외 농산물	조달 비율	20%	16%	0%	
	조달 경로	산지 직구매 (100%)	산지직구매	-	산지 직구매 (100%)
	공급 조건	경북/제주의 과일류 위주 조달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 인증 전남도 생산 우선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내 농산물	조달 비율	15%	100%(전남권) 70%(목포인근)	60%	
	조달 경로	산지직구매, 도매상 구매	산지 직구매 도매상 구매	산지 직구매 농가계약재배	
관외 농산물	조달 비율	85%	1~2%	40%	
	조달 경로	도매상 구매, 작목반 거래	-	산지 직구매 작목반 거래	
	공급 조건	가격/품질	-	인증기본, 주거래 법인/작목반	

## □ 관내 농산물 조달 비율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관내 농산물 사용이 전혀 없으며, (사)클린팜당, 안성마춤농협, 양평지방공사 등 중부지역이 약 25~40% 수준,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목포시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의 경우 60~80% 수준임
- 관내 농산물 사용 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인 농업생산 기반과 밀접히 연관되며, 학교급식의 중요품목인 구근류의 생산이 가능하고 엽채류의 연중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기후를 가진 남부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내농산물 사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지만 100% 관내 농산물로 조달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음

## □ 농산물 조달 방법

- 계약재배
  -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조건인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양평지방공사,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등임
  - 양평지방공사는 관외 농산물 중 일부품목만 타산지와 직접 계약재배,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쌀만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일부 품목에 한해 관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는 100%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사용물량의 80% 이상을 관내에서 수급하고 있음
- 계약재배 이외(산지직구매, 도매상구매 등)
  - (사)클린팜당,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양평지방공사,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목포시농협유통센터 등은 산지 직구매와 도매상 구매를 통해 관내외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사)클린팔당과 양평지방공사는 자체 출하 농가조직을 통해 관내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으며, 관외 농산물의 경우 산지직거래 및 도매거래로 필요물량을 공급함
-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목포시농협유통센터 등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산물을 조달하며, 관외 농산물의 경우 산지직거래 및 도매거래로 필요물량을 공급함
-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계약재배 이외의 물량에 한해서만 산지직거래로 농산물을 조달함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품목을 구분하여 4개 농산물 공급산지를 선정하여 농산물을 조달하는 형태임
-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내 농산물 조달 비율이 계약재배 이외 방법으로 농산물을 조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3.8. 유통시설 운영현황

#### □ 유통시설 보유 현황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선별포장장(물류장), 저온저장고, 안정성 검사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클린팔당은 보유시설이 없음(향후 광주시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예정)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목포시농협유통센터만 전처리 시설이 없으며(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쌀만 취급), 대부분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팜당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선별포장장	330㎡	-	990㎡	264㎡
저온저장고	500㎡	-	330㎡	300㎡
전처리장	-	-	500㎡	925㎡
기타창고		-	-	-
배송차량	-	-	-	지입차량 10대
기타	안전성 검사소	-	-	자체 분석실
시설인증	친환경 인증	-	HACCP 기준시설 (필요시 인증추진)	GAP인증, 친환경 재포장 인증
구분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선별포장장	230㎡	495㎡	660㎡ (도정 및 포장시설)	110㎡
저온저장고	330㎡	661㎡	264㎡	55㎡
전처리장	66㎡	661㎡	-	825㎡
기타창고	250㎡	-	-	-
배송차량	자체 5(순회수집) 지입/기타 8(배송)	자체 차량 5대	자체 차량 2대 (탑차, 1톤트럭)	자체 2, 지입 6
기타	출하냉장고 330㎡		친환경쌀	-
시설인증	GAP 인증	GAP, HACCP	없음 (향후 GAP 등 계획)	GAP 인증
구분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선별포장장	115㎡	200㎡	2,220㎡	
저온저장고	200㎡	200㎡	610㎡	
전처리장	400㎡	-	550㎡	
기타창고	180㎡	-	-	
배송차량	자체 차량 7대	자체 차량 12대	지입차량 10대	
기타	-	-	-	
시설인증	없음	-	HACCP 기준시설 친환경재포장 인증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는 자체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실 및 검사소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현황]

구 분	학교급식지원센터구분										
	서울	팔당	양평	안성	김해	순천	문경	나주	영주	목포	청원
선별포장장	○		○	○	○	○	○	○	○	○	○
저온저장고	○		○	○	○	○	○	○	○	○	○
전처리장			○	○	○	○		○	○		○
기타창고					○				○		
배송차량				○	○	○	○	○	○	○	○
시설인증	○		○	○		○		○			○
안전성검사소	○			○							

\* 도정 및 포장시설

□ 사업범위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 시설 평균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기초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두 학교급식 사업운영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

[학교급식사업범위별 급식지원센터 평균 유통시설규모]

구 분	선별 포장장	저온 저장고	전처리장	배송 차량	평균 매출규모	평균 학교수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330㎡	500㎡			255억	249개
광역 급식지원센터 연계/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453㎡	320㎡	497㎡	11대	105억	146개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관내/관외 학교급식)	495㎡	661㎡	661㎡	5대	38억	118개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관내 학교급식)	661㎡	266㎡	443㎡	9대	21억	54개

\* 주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만 적용



##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 4.1. 학교급식지원센터별 특징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의 주체로써 총괄기능과 함께 농산물 물류기지 운영, 안전성 검사 등 제한적 기능만 직접 담당하여 사업 부담을 완화
- 농산물 공급을 위한 품목별 4개의 산지주체와 학교 배송을 위한 6개 배송업체를 지정, 각 주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으로 학교급식사업 진행
  - 산지주체의 APC 및 소비지종합유통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소분·포장·전처리 상태로 입고되어 피킹까지 실시함으로써 사업초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부담을 완화
  - 배송업체를 통해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 배송, 클레임 처리 기능을 아웃소싱

#### □ (사)클린팜당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경기도G마크농산물(친환경)학교급식사업의 주체로써 총괄기능과 함께 최소한의 기능만 직접 담당하여 사업 부담을 완화
  - 소규모 인력(4명)으로 계약업무와 사업총괄 관리, 안전성검사 기능만을 담당하며, 16개 시군의 200240여개 학교급식사업을 수행
- 3개의 거점조직(유통센터)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 거점조직을 통해 수발주, 물류, 클레임 처리 기능을 아웃소싱
-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노력 병행

- 11개 시·군의 16개 친환경출하회를 조직하여 경기도 G마크농산물(친환경)을 학교급식에 공급 노력
- 관내 (친환경)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해 학교급식사업의 안전성 확보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양평지방공사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시군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

- 학교급식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유통사업을 하는 대규모 시설운영 조직으로 관내 학교급식사업 외 광역학교급식체계의 거점조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특히,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 아래 사업경험을 축적하여 관내 학교급식사업은 안정기에 접어 들었음
-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관내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
- 자체 농가조직을 통한 농산물 공급 체계로 특히 업체류의 관내조달 비율이 높으며, 경기도내 친환경생산기반이 우수한 지자체임

□ 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센터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체계 아래 사업초기 학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는 대규모 시설운영조직으로 양평지방공사와 마찬가지로 관내 학교급식사업 외 광역학교급식체계의 거점조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관내 지역농협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역농협 중심의 한산지기반이 우수하며, 특히 학교급식 주요 품목이면서 경기도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구근류의 생산기지로 육성이 가능한 지역임

-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관내 조달률 80%, 자체 회원농가 대상 농가계약재배 100%의 강력한 산지결합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수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관내, 경남도 인근시군, 서울시 등 학교급식 출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품목당 회원농가 3명 수준의 사전적 작부체계 운영 및 계약재배 실시
  - 관내 학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배송차량 1대당 평균 8개교를 배송하는 물류 효율성을 보임
-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 (관내·외 사업영역)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관내 조달률 84%, 자체 조합원 대상 농가계약재배 100%의 강력한 산지결합을 통해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수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가격협의회 운영을 통한 순천시를 대표하는 조직체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
  - 학교급식 배송 차량(오전)을 산지물량 수집 차량(오후)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류 효율화 도모
  - 우수한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 문경영강영농조합법인 : (관내외 사업영역)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관내외 학교에 (친환경)쌀을 직접 계약재배, 가공, 유통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10억원 내외로 적음
  - 회원 농가의 학교급식 업무 협조 체계 구축

- 학교급식에 쌀만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명명하기에는 다소 모호함

□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된 학교급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친환경 쌀을 포함한 지자체의 지원이 강력함
- 안성마춤농협과 마찬가지로 관내 지역농협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생산기반이 우수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교 배송은 대기업(한화 푸디스트)을 통해 실시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 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식자재 유통사업 중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높지만 현재까지 매출액은 10억 수준으로 타학교급식지원센터에 비해 낮은 편임
- 관내 생산 가능한 농산물이 과일류, 쌀, 일부 버섯류 정도로 관외 농산물 의존도가 높음

□ 목포시농협유통센터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농협중앙회 산하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사업을 진행
- 관내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생산기반과 지역농협을 통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하나 시장형 원물조달 체계로 인해 지자체 및 지역생산자단체와 결합도가 떨어짐
- 2009년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목포시농협유통센터를 제외한 관내 20여개 급식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 대응)하면서 사업규모가 전년 대비 1/3로 축소되었으며, 남

은 학교도 면단위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으로 사업규모 축소와 더불어 낮은 유통 효율로 어려움이 가중

□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 친환경농산물 선도 조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온라인판매가 주사업
-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으로 관내 40여개 학교와 수의계약 추진
- 학교급식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근류 위주의 관내 계약재배를 실시하며, 지역농협의 선급금을 활용한 주단위 농가정산

## 4.2.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 이슈별 특징 및 시사점

□ 사업범위 및 규모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범위는 최소 시군단위 이상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및 규모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순이며, 일부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10억 내외의 매출규모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인력 및 유통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인력 및 시설 운영, 원활한 원물확보를 위한 사업범위 및 규모는 최소한 도시지역을 포함한 시단위 이상이어야 함

□ 학교급식사업 관련 지자체 지원

- 대부분 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를 통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 이 중 학교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방식은 지역농산물 사용 또는 학

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통한 우수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명확한 보조금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함

#### □ 학교와의 계약방식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간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대부분이며, 계약기간도 1개월~1학기로 다양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학교와의 계약업무 간소화를 위한 수의계약 및 최소 분기단위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적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현행 학교단위 계약방식이 아닌 확장된 공동구매제를 통한 시군 지자체(교육청) 단위 계약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 수발주 시스템

- 학교급식지원센터 대부분 자체 수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에서 발주를 받아 재입력하는 수준으로 업무량이 과중함
- 학교에서 사용하는 NEIS와 연계된 통합적 수발주 시스템이 필요
- 또한, 공동식단체를 적용한 시군 지자체(교육청) 단위 수발주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 공급 농산물 확보 및 물류 체계

- 일부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관외물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재배 비율이 대부분 낮아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의 지역 확대와 함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학교 배송과 관련하여 차량 1대당(학교당 약 30분 정도 소요) 평균 3~4개 학교만을 배송하는 비효율 발생
- 학교배송의 효율화를 위해 검수검품 시간 절약 방안(시군 교육청 단위 검수) 또는 전일 배송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 클레임 발생 및 처리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클레임 발생에 따른 매출손실은 평균 5% 정도로 적지 않음 규모이며, 상태불량, 규격 미달, 중량 미달, 미입고, 표기사항 오류 순임
- 클레임 발생은 크게 생산, 유통, 검수검품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생산 부분은 계약재배,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유통 부분은 철저한 유통상의 기준을 통해, 그리고 검수검품 기준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함으로써 해결 가능함
-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검수·검품 기준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기준의 해석 및 적용을 통일하는 것이 시급함

#### □ 학교 및 산지와의 정산

-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두 각 학교별 정산이 이루어지며, 1개월 단위 정산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와의 정산(보조금 포함)에 대한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임
-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단위 학교별 정산 체계를 시군 지자체(교육청) 단위 정산체계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 학교와의 정산이 1개월 단위로 실제 생산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45일이 소요됨으로써 산지, 특히 농가의 자금 흐름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음
- 계약재배에 대한 선급금 지원 등 산지유통 지원자금의 활용도 제

고 및 별도의 자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협의기구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각 학교급식지원센터별 역할 및 기능이 상이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체도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협의기구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납품배송협력업체선정심의위원회, 공급가격결정협의회, 산지(생산자)가격결정협의회, 학교급식실무협의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교육청)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산하 각종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필요

□ 유통시설 운영

- 대부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유통시설을 보유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시설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제외하면 전무하며 학교급식사업을 위한 필요시설도 부족한 실정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별 기능은 다르지만 농산물 물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저온저장고, 물류장 등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높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속도로 증가될 것임
-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 전국의 산지유통전문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광역학교급식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5. 산지유통전문시설의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 분석<sup>13)</sup>

### 5.1.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 관련 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 관련 지원 사업]

구분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사)클린팔당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양평지방공사
관련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2010년 신규, 급식사업 전용)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2012년 준공 예정_광주)	지자체 사업 (맞춤농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구분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김해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나주시농협 공동사업법인
관련 지원사업	소규모 RPC (지자체 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지자체 사업 (지역농협 창고 개보수 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구분	목포시 농협유통센터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 신선편이센터	
관련 지원사업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건립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현행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통시설 대부분은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이나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산지유통전문시설(APC) 또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 학교급식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개보수 한 기존 시설임
- 학교급식사업만을 위해 유통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유일함
- 결론적으로 신규 유통시설보다는 기존 APC를 활용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부분으로, 학교급식사업에 필요한 전처리시설(절단, 탈피, 실링

13) 산지유통전문시설의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 분석은 향후 별도 전문적 연구 용역을 통해 최소 사군단위까지의 분석결과 도출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 비교를 통한 가능성을 추정함

등), 소분포장, 분류(피킹\_Picking) 및 배송을 위한 물류장(공간) 등에 대한 일부 시설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음

## 5.2. 전국 산지유통전문시설 현황과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

### □ 지역별·규모별 산지유통전문시설 현황

#### [지역별·규모별 산지유통전문시설 현황]

시·도	산지유통전문시설 규모(개)						시도별 시·군·구(수)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기타	합계	시	군	구	계
강원	5	4	2	11	2	24	7	11		18
경기	1	0	1	9	0	11	27	4		31
경남	1	7	7	17	2	34	10	10		20
경북	4	10	15	22	5	56	10	13		23
광주	0	0	0	2	0	2			5	5
대구	0	0	0	2	0	2		1	7	8
대전	0	0	0	0	0	0			5	5
부산	1	0	0	1	1	3		1	15	16
서울	1	0	0	0	0	0			25	25
울산	0	0	2	1	0	3		1	4	5
인천	0	0	0	0	0	0		2	8	10
전남	3	3	14	25	10	55	5	17		22
전북	3	2	1	11	4	21	6	8		14
제주	2	2	6	5	2	17	2			2
충남	2	2	5	22	4	35	7	9		16
충북	0	1	1	5	1	8	3	9		12
<b>합계</b>	<b>22</b>	<b>31</b>	<b>54</b>	<b>133</b>	<b>31</b>	<b>271</b>	<b>77</b>	<b>86</b>	<b>69</b>	<b>232</b>

\* 자료 : 2010,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설명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위 표에 제시된 산지유통전문시설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전국산지유통시설 현황조사 자료에 파악된 시설만을 의미함

\* 산지유통전문시설 규모는 집하선별시설 및 저온저장고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10,000톤 이상(초대형), 5,000톤 이상(대형), 2,000톤 이상(중형), 2,000톤 미만(소형)으로 구분

[시설금액별 산지유통전문시설 현황]

구분	시설금액	시설현황						
		개소수 (개)	집하 선별장	저온 저장고	예냉고	일반 창고	기타	합계
대형	50억 이상	9	4,182	1,581	28	448	5,881	12,120
중형	10억~50억 미만	102	1,309	1,218	80	326	515	3,447
소형	10억 미만	160	751	636	45	187	277	1,896
합계/평균		271	1,077	889	58	252	582	2,858

\* 자료 : 2010,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설명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전국 산지유통전문시설은 총 271개이며, 규모별로는 초대형 22개, 대형 31개, 중형 54개 소형 133개, 기타 31개임
- 전국 시·도별 산하 시·군은 총 155개로 전국 산지유통전문시설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개소수를 단순 비교하면 충분한 수준이지만, 경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시·군 개수보다 산지유통전문시설이 부족함
- 산지유통전문시설 개수가 부족한 시·군의 산지유통전문시설 규모 및 처리량을 고려한다면, 산지유통전문시설이 전무한 서울, 인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 활용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유통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임

□ 주요 품목별 산지유통전문시설 기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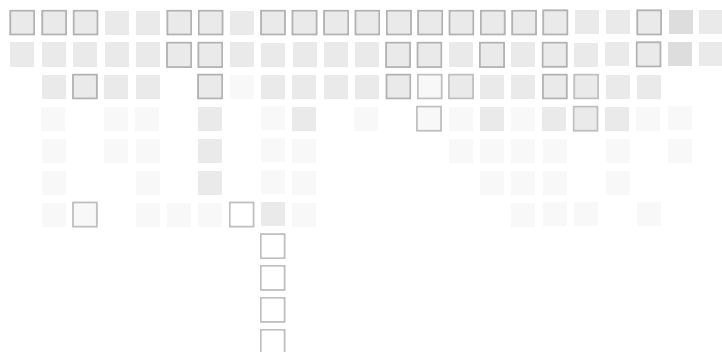
품목	개소수	시설능력(A)			전국생산량 (B)	비중 (A/B)	학교급식 년사용량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합계			
감자	13	78,010	56,439	134,449	604,592	22.2%	11,451
당근	4	640	4,150	4,790	99,581	4.8%	6,528
마늘	15	44,419	28,163	72,582	375,463	19.3%	3,017
양파	35	90,447	79,888	170,335	1,035,076	16.5%	15,949

\* 자료 : 2010,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설명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전체 사용량 대비 산지 유통전문시설 처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함
  - 당근의 경우 단순 비교시 학교급식 년사용량이 시설능력보다 많으나, 월별 사용량으로 비교하면 활용 가능함

### 5.3. 산지유통전문시설의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 분석에 따른 제언

-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별 학교급식 공급 품목별 수급량 파악
  - 대상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별 학교수, 학생수 현황 및 공급 품목별 수급량을 우선적으로 파악
-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별 학교급식 체계 마련
  -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별로 학교급식 체계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유통시설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존 학교급식 사업주체의 유통시설 현황 파악을 통한 필요 시설 규모 산출
  - 기존 학교급식사업 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유통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유통시설 규모 산출
- 해당 광역단위 및 시군단위별 활용 가능한 산지유통전문시설의 규모, 처리능력, 가동률 고려
- 최종적으로 산지유통전문시설의 학교급식 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제 4 부

# 지역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



# 1. 지역 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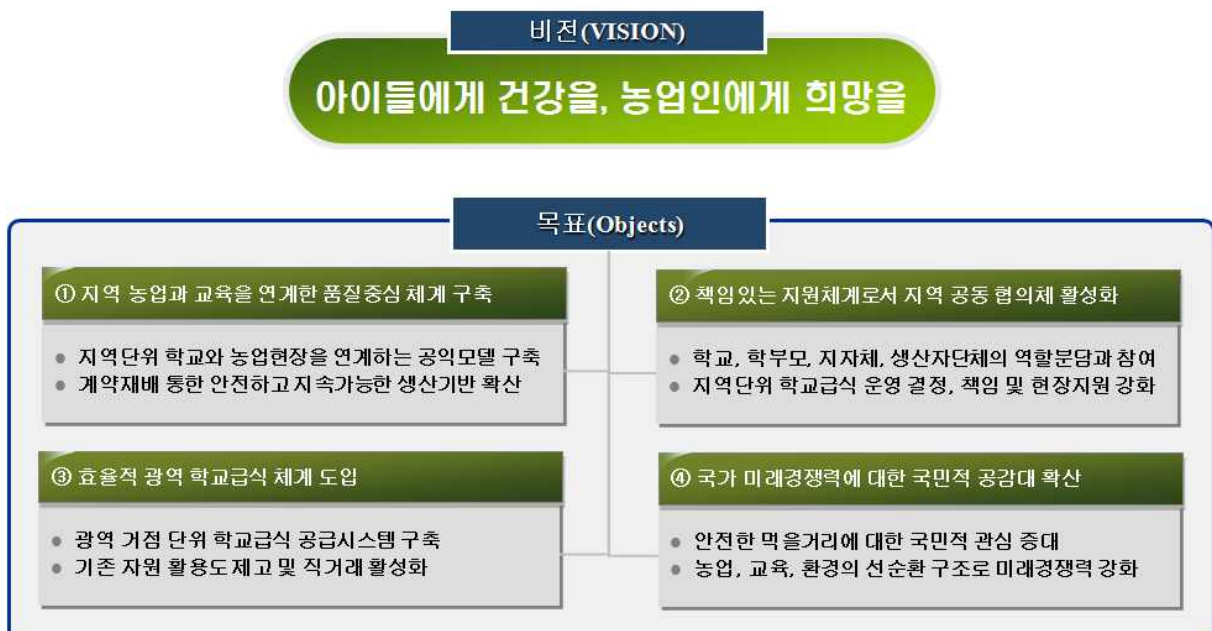
## 1.1. 학교급식 접근방향

- 품질중심 학교급식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미래세대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식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함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농식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과 안정적,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 생산자단체와 학교의 직거래에 의한 공익적 수급체계 구축
- 지역단위의 공동협의체 활성화, 책임단위 격상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확대 및 정책연계 강화
  - 교육 및 농업관련 각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구조의 지역공동 협의체를 활성화, 단위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과 책임으로 격상
- 농수산사업의 성과를 학교급식에 접목, 효율성 확보
  - 농수산사업으로 진행한 지역 대표조직 육성, 안전성과 규모를 갖춘 기반시설 설치의 성과를 학교급식에 접목
  - 지역사회의 공동 협의에 의한 방향설정을 전제로 식재료 수급체계, 유통 및 물류부문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 1.2. 지역 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비전 및 목표

### □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업인에게 희망을

- 생산과 소비, 농식품산업과 교육의 상생을 통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의 실현
- 학교급식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
- 또한, 농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
-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로 지역 농업과 교육을 연계한 품질중심 학교급식 체계 구축, 책임 있는 지원체계로서 지역 공동 협의체 활성화, 효율적 광역 학교급식 체계 구축, 국가 미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추구함





- 목표1, 지역농업과 교육을 연계한 품질중심 학교급식 체계 구축
  - 지역단위의 학교와 농업 생산현장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공익 중심의 학교급식 모델 구축
  - 가격경쟁력 중심의 공급체계를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의 시행
  -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방식의 도입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우수농산물인증 농산물 등 인증농식품 생산기반 확산
  
- 목표2, 책임 있는 지원체계로서 지역 공동 협의체 활성화
  -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 학교급식 관련주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활성화, 지역 학교급식 운영방향 및 방법 등 주요 의사 결정 기능 수행
  - 제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병행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실질적 책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각 주체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역할분담체계 적용
  - 단위학교에 과중하게 부여된 상당한 부담과 책임을 시군단위 이상의 지역 공동협의체로 격상하고, 협의체에서 협의 및 결정된 사항이 단위학교와 공급주체간에 추가적인 행정 절차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
  
- 목표3, 효율적 광역 학교급식 체계 도입
  - 품목 및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시도차원의 거점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주산지간 원물조달시스템 확립
  - 푸드마일<sup>14)</sup> 최소화를 기준으로 시군내, 도내, 도외의 순서로 품목

별 사전 계획 생산체계 구축

- 농림수산사업의 산지유통주체 육성 및 자금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 공급주체로 육성, 직거래 활성화
-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은 RPC, APC 및 정책자금이 투입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목표4, 국가 미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안전한 학교급식은 농업농촌 및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임
-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활 태도 개선으로 우수농산물 소비를 확대
- 농업, 교육,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상호 선순환 구조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의 미래경쟁력 강화

---

14) 농산물 등 식료품이 생산자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를 뜻한다. 푸드마일이 길면 길어질수록 탄소배출량은 늘어나고 그 식품의 안전성은 떨어지게 된다.

## 2. 지역 우수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전략과제

### 2.1. 품질중심의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

#### □ 학교급식에 사용가능한 농산물

- 학교급식에 사용가능한 농산물의 기준으로 각종 인증 농산물 외 표준규격품 중 '상'등급 이상의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제약에 따라 표준규격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우수식재료의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GAP),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 농식품부의 인증농산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력추적이 가능한 얼굴있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로써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수농산물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자체 사업을 설계하면서 지자체의 표시 인증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활용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관리(GAP)품 확대 필요

- 단순물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서류는 급식전체 물량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19.6%(저농약 제외할 경우 27.2%)를 채소류는 급식전체 물량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8.3%(저농약 제외할 경우 17.3%)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물량임
- 급식소요량 전체가 한꺼번에 친환경농산물로 대체될 수는 없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증가세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별, 지역별 수급균형을 고려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임
-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속하였던 친환경농산물 확대가 학교급식

이라는 예견된 변수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이와 함께 과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대체품은 7대농산물 인증제도<sup>15)</sup>의 경우 학교급식식재료기준에도 부합하는 국가인증제로서 효과적임, 현실적으로는 GAP 농산물 및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을 공동선별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 수요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인증제의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약재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역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사업시행지침이나 지원조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계약재배 자체가 식재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약속에 의해 생산자에게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고 생산과정을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높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음
- 지역내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시장을 통한 식재료의 조달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생산자 단체를 특정하여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는 사례도 안전성과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재배는 조건을 특정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학교급식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

15)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인증제도로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지리적 표시제, 우수 농산물 관리(GAP), 전통 식품 품질 인증제도, 가공 식품 KS 인증제도, 식품명인 제도를 일컫음

## 2.2. 생산자단체를 유통센터 운영 및 공급주체로 육성

### □ 계약재배가 가능한 생산자단체의 유통센터 운영

-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측면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생산자단체를 통한 식재료의 조달은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 확인 및 체험활동 등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음
- 생산자단체는 지역단위의 계약재배를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주체로서 가장 적합하며, 영리추구 성격이 강하지 않고 각종 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지침 및 해설 규정에서도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식재료 조달을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 과제임

### □ 일선학교의 혼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 계약재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주체와의 거래를 약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권장하는 경쟁입찰과는 배치됨으로써 일선학교의 혼란을 가중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또는 유사기구를 통해 내용적으로는 공급주체가 정해져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형태를 취하거나, 비리근절 대책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량쪼개기 형태의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공급자 및 품목에 대한 지원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학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경쟁입찰의 사례가 발생

- 이는 추가적인 부담과 혼선을 일선학교와 공급업체 등 현장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지역협의체의 의사결정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지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기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2010. 5) 방안을 통해 납품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일반경쟁 방식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지역 등의 소규모학교, 계약재배를 통한 식재료조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조달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안 제시
-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교육 및 농식품주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에서 지역단위의 학교급식 운영 방향 및 의사결정을 주도함은 물론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약 등 업무를 학교급식센터 내에서 담당하고 일선학교는 위생관리 및 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자단체 육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수급체계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또는 식재료 공급주체로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
- 2000년부터 시행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를 견인하였듯이 주체를 육성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당히 큰 변화의 폭을 가진 농산물 유통에서 성공하는 핵심요인임
- 생산자단체를 급식사업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전문역량의 축적

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관련 자금지원, 시설운영 등 정책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생산자단체를 학교급식의 공급주체로 육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임.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물류비 등 비용증가로 상당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공급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생산자단체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또는 식재료 공급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면서 안정적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품화 및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유통주체가 담당하는 농산물유통의 일반적 성공사례들이 갖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산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적 측면의 수요자인 학교의 안정적 조달의사가 명확해야 하는 것임. 학교의 안정적 식재료 구매가 있어야 생산자단체 유통주체의 작부체계 설계 및 계약재배에 의한 원물조달,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자금의 활용 등 사업측면의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 생산자단체 육성에 따른 지역대표 조직의 선정

- 생산자단체를 학교급식의 공급주체로 육성하는 데 있어 지역대표 생산자단체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지역대표 생산자단체로 농협 및 계열조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방공사 및 친환경 또는 품목 대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다양하였음
- 지역별로 참여 농업인의 범위 및 제한여부, 사업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겠지만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의한 유통조직,

지역대표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 유통시설 운영주체 등 기존 농수 산사업을 통해 역량이 검증된 단체 중 지역대표성이 큰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3.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운영

####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지역협의체 활성화

- 생산자단체를 유통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공급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생산자단체 중에서 대표성을 갖춘 조직을 발굴하거나 선정하는 문제 이외에 특정사업을 배타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음
-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본 성격에 기초하여 더욱 중요성을 갖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단위 협의체의 구성임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도적으로 협의체 기능과 유통 및 배송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유통 및 배송기능을 갖는 운영 및 공급주체가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도 협의체 기능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가 필수적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례에서도 협의체는 모두 운영하고 있음. 제도적 기반 및 협의체 구성원, 운영실질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업초기 2~3년간은 활발한 협의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지역협의체에서 급식사업 운영방향 및 상호 이해가 걸린 중요사항에 대해 지역공동의 공익적 협의



기구로써 의사결정을 내리고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참여주체의 역할 및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임

- 농식품계의 입장에서 특정한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원물조달, 식재료 공급, 지자체 보조금 사업 집행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과제 발굴, 시행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가격결정 및 사업추진 주체간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인 학교급식 사업부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협의체는 총괄 의사결정기구와 분야별 실무협의기구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 협의기구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시된 사항<sup>16)</sup>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실무 협의기구를 참여주체로 크게 구분할 경우 지원주체 중심의 구성, 교육계 중심의 구성, 농업계 중심의 구성, 교육계와 농업계의 공동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실무 협의기구를 내용적으로 크게 구분할 경우 지원방법 등 사업

16) 제3부 2장에 기술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제시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5가지 기능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 7가지 참조

시스템과 총괄 교육 및 홍보, 식단구성 및 영양개선·식생활 습관 개선, 계약생산을 위한 품목 및 가격 결정 등 생산조정, 공급가격 결정, 유통·배송 등 공급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지역적 공통성을 가진 각종 단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의 장점을 살려 식생활교육 및 농촌체험활동을 발전시켜 학교와 농업·농촌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2.4. 거점 유통시설의 확보

### □ 안전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

- 안전한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통시설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HACCP등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수산물이력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산물의 경우 산지유통센터(APC)가 2010년 현재 3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8월 현재 50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산지유통센터(APC)가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았음
- APC, RPC 외에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거래물량이 많지 않은 도매시장 등에도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안전성을 갖춘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통시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확정된다면 안전성 향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유통시설은 거점 시설을 활용하는 광역단위에서 설계, 운영

- 유통시설이 시군마다 설치될 필요는 없으며, 도단위에서 계획되어 몇몇 시군을 관할하는 거점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거점 유통시설이 자체 완결성을 가지고 각각 운영하는 형태와 도차원의 광역체계를 기본으로 거점시설이 계열화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즉, 거점 계열화 단일 광역급식체계, 거점중심 광역급식체계, 시군별 급식체계가 가능하며 시군단위를 뛰어넘는 광역체계가 원료조달 및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학교급식 유통시설 운영 사례에서도 관외시군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일반 단체급식사업 및 신선편이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원활한 원물조달과 시설의 회전을 향상 등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현재 시군단위의 학교급식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인근 시군 및 광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단위 거점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며, 시도별 광역학교급식 공급 종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조정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시설의 규모 및 지역별 배치

- 시군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중, 농산물 생산 규모와 소비 규모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학급급식지원 세부 시설도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 물류 시설

(물류장, 저온저장, 입출고장 등)을 설립할 경우 취급하는 농산물의 양에 따라 1천톤 미만시 10억원(200m<sup>2</sup>), 1~2천톤은 15억원(400m<sup>2</sup>), 2~3천톤은 20억원(600m<sup>2</sup>) 정도가 투입됨

- 시군 자체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전제하여 개별적으로 학교급식지원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시군에 따라 농산물의 과잉 또는 과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비효율적 학교급식지원 시설이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와 관련하여 국승용(2010)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타당성 분석에서 시군별 채소류 자급률과 취급량을 산정한 후 31개 시군·4개 거점·광역 단위 학교급식체계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비용은 각각 405억원, 160억원, 120억원이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는 각각 385억원, 222억원, 124억원이 소요됨으로 광역단위 학교급식체계에 따른 시설 설립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였으며, 타산지 농산물 구매와 같은 거래 비용 절감, 효율적 제고 관리를 통한 유통 비용 감소, 광역 차원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급률 제고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음
- 결론적으로 학교급식 유통시설은 광역단위에서 설계, 운영해야 한다는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시도별 광역학교급식 공급 종합 계획에 광역학교급식체계를 기본으로 한 시설 규모와 배치를 고려하여 포함시켜야 함

#### □ 기존 시설의 개보수 활용이 효율적

- 거점 유통시설은 신규로 설립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APC, 도매시장, 산지유통종합센터 등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방안에서는 APC통합 및 계열화 조직에 한하여 신규시설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확대하되 지자체의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전제로 사업능력을 갖춘 사업자 위주의 보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성 미흡과 지자체별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생산자단체의 수요 및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시설이 건립되어 나타나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방향설정임
  - 학교급식 유통시설 설치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부문이므로 별도의 시설 설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육성책일 수 있으나 새로운 정책방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과 관련된 수요를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지도가 따라야 할 것임
- 시설의 내용은 지역여건 및 역할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은 선별포장장과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및 창고, 안전성검사소, 교육시설 중 지역여건과 수행 역할에 맞추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유통시설을 겸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장 외 전처리장 등 원물을 가공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반해 도시지역의 유통시설은 소분 및 피킹이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저장고와 선별포장장 중심의 시설이 설치됨
  - 주요 품목인 구근류 등의 장기저장이 가능한 대규모 저온저장고를 갖춘 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및 수익성 제고 등에서 효과적이며, 전처리시설은 탈피 등 1차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일반 단체급식의 경우처럼 식단의 표준화, 식재료의 규격화가 이루어진다면 절단 등 2차 전처리 시설의 활성화도 기대됨

- 안전성검사소, 교육장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영양(교)사 및 급식학생의 견학이 가능할 경우 차별성을 부각하여 부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5. 품목부류별 지역농산물의 활용 전략

### □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위적 원칙

-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제도상 '우수농산물'이라 칭하더라도 내용상 '친환경농산물'이 일반적이며 지역농산물의 사용은 '강제사항'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당위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짐
- 이전 연구<sup>17)</sup>에서도 학교급식에서 지역사회 농산물의 이용필요성에 대한 설문(응답자 4,086명)에서 학부모의 90.0%, 영양(교)사의 84.5%, 행정실장 85.4%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적으로 88.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하였음
- 푸드마일, 로컬푸드 운동<sup>18)</sup>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차이가 없이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과제임

17) 2003.10. 양일선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발 및 지원방안, 농림부

18)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자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활동.

- 특히, 지역농산물의 이용은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 감소, 지역사회 및 농업·농촌, 전통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 확산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임

#### □ 품목부류별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

- 쌀은 경지면적이 전혀 없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군단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생산이 이루어지며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음
- 과일 및 채소류는 시군단위 자급은 불가능함. 사용량이 많은 구근류 및 엽채류의 연중공급이 가능한 남부지방의 일부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을 제외하고는 관외 농산물 사용량이 많음. 특히 전체적인 생산량이 관내 소비량을 넘더라도 시기별 주산지 이동에 따른 관외 조달이 불가피함
- 축산류는 경영체의 규모화·기업화가 진전되었고 광역브랜드 경영체가 일반화되는 경향으로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광역 공급망이 일반적임. 지역의 축산농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 품목부류별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

- 당위적 원칙인 지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작부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의 안정적 계약이 우선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자체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군을 우선으로 하고, 인근시군 및 해당 시도로 확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이며 바람직함. 도단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지역적 측면보다는 주산지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나 직구매 또는 산지유통주체간 거래가 일

### 반직임

- 쌀은 시군단위의 조달을 기본으로 함. 도시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많은 주산지의 통합RPC 등과의 계약에 의한 조달이 바람직함
- 과일 및 채소류, 특히 사용량이 많은 구근류와 엽채류는 시군단위의 작부계획을 수립하되 도단위까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 원물을 주고받는 사업체계를 짜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주산지가 특정되는 구근류나 일부 과일류의 경우 관외 조달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시기별 부족분은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sup>19)</sup> 등 사업역량을 갖춘 산지유통주체와의 약정에 의한 전국단위의 원물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축산은 현행 체계와 같이 시군 및 도단위의 축산농협,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등을 통해 원물을 조달하는 하는 것이 위생관리 등에서 신뢰할 수 있음
- 수산은 도단위를 초월하는 광역단위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변동여지가 크지 않음

### □ 단계적 접근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가공식품 공급으로 효율성 제고

- 가공품의 경우 현재 일반 유통업체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생산자단체가 연관성을 가지는 장류, 김치류, 두부류, 콩나물 등은 사용물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으며, 농수축산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물류비 절감 등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공식품에도 접근이 가능함
- 수급불안정 및 가격변동 요인이 큰 농산물의 공급주체가 가공식품류까지 일괄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역량구

19)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에 의거 2011년부터 산지유통대형조직, 산지유통중형조직으로 변경 예정



축을 통한 실질적 신뢰관계가 형성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공급주체로서의 사업 진행을 통해 사업역량을 확보하고 공익성에 기반한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류 및 김치류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임
- 시민사회단체는 가공식품의 원료 농산물이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저가의 수입산이 대부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예산상의 제약을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나 국내산 또는 우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공급 확대 방안이 정책 및 사업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6.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안정적 실천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으로 토대를 마련

-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 교육위원회’ 및 민간조직인 ‘식생활 교육 국민네트워크’가 구성, 운영
- 2010년 4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선진국<sup>20)</sup>과 같은 범국가적 식생활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의 기반을 구축함
- 기본계획에서는 식생활의 3대 핵심가치를 ①환경, ②건강, ③배려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 개념<sup>21)</sup>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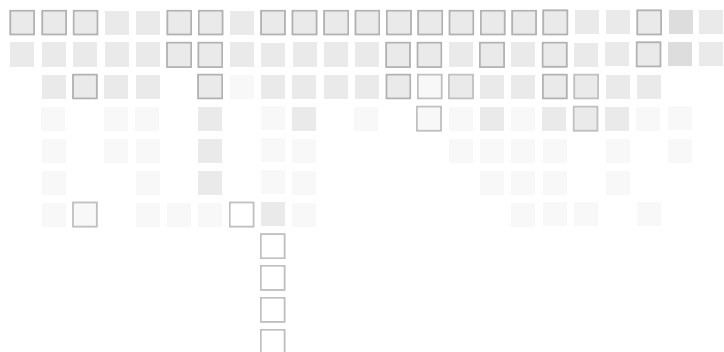
20) 일본 : 식육기본법 제정, ‘건강일본21’ 프로젝트, 지산지소운동 추진, 프랑스 : 어린이 미각·조리개발 계획 추진, 미각주간 캠페인 전개, 이탈리아 : 스쿨가든(학교농장)채택, 미각의 산지운동과 ‘맛의 방주’선언

21)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

- 조사 및 연구, 지침서 발간, 푸드마일리지 등 표시 인증제 도입, 홍보 외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권장, 지역 농식품 소비촉진 조례 제정, 식생활 연구학교 및 녹색 식생활체험 교실 운영, 전통 식생활 교육 추진, 농어촌 체험교육 강화 등 학교급식과 직접적 연계를 갖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식생활 교육의 추진체제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시군단위 지방정부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자발적 범국민운동의 전개를 위한 민간조직을 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함
- 범국가적 추진체제로써 긴밀한 협의와 역할분담에 따른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중앙정부 각 부처간 협조와 예산확보, 지역 추진 기구 및 계획의 형식적 운영 방지, 민간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도력 확보 등이 중요 과제가 될 것임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조직 및 사업운영에서의 조정과 촉진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안정적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제 5 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



# 1. 주요 이슈별 대응방향 총괄

## 1.1. 식재료 공급체계 주요 이슈

### □ 학교급식공급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관련 주요 과제는 제4부에서 기술하였으며 여기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 외 학교급식 공급시스템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유사기구 및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학교와 공급주체간 계약 방법은 내용상 거래주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이슈가 됨. 학교단위의 계약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음
- 수발주프로그램의 전산화 여부는 규모에 따라 자체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며, 학교와 공급업체간 일정한 숙련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학교로의 배송 물류는 일정한 시간대에 대면검사를 고수하는 영양(교)사와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대해 업무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급업체가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학교의 검수검품은 공급업체와 학교간에 가장 많은 문제를 촉발하는 부분이나 상호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만 영양(교)사별 개인성향 및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타 수발주, 산지물류, 소분·포장·피킹, 전처리 및 가공, 산지물량 검수·검품, 안전성검사, 보조금 정산은 특별한 이슈가 없음

- 지자체의 지원방식은 생산자조직에 대한 현물지원이 바람직
  - 지자체의 지원방식이 학교로의 현금지원과 공급주체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크게 나뉘짐
  - 학교에 대한 현금지원은 지원조건에 따라 다시 세분되기도 함
  -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정산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서 학교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주체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방식
  - 현금지원은 해당학교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학교가 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좀 더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공급자간 경쟁시스템으로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 등 정책적 방향설정 및 목표 달성이 모호해 질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시행시에 지원조건 및 기준을 밝힘으로써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현물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봄
  - 지자체의 지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 현물보조는 공급주체의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농수산사업의 운영 사례에서 확인하여 현재 일반적 방향으로 확립된 개별농업인 지원이 아닌 생산자조직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금지원의 경우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임

## 1.2. 학교와 운영주체간 계약방법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운영주체 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이미 상호 거래의사가 분명한 상태이며, 가격 등 각종 거래조건도 별도의 협의기구나 지침을 통해 결정된 상태임
  -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형식적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개별학교가 몇 번에 쪼개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러한 계약형태는 학교급식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처사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일선학교의 행정실은 입찰 및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 급식실은 위생관리, 물가정보조사 등을 실시해야 등의 업무 가중과 시간낭비가 나타나고 있음
  - 공급주체의 경우에도 빈번한 계약을 위한 각종 서류의 구비 및 학교방문 등에 따른 비효율 증대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 및 거래조건이 협의된 경우 일괄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선학교의 계약업무 상위 기관 이관 검토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든 업무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관리감독만 수행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등 제반 과정을 거쳐 원하는 학교만이라도 계약업무를 시군 및 시도교육청에서 대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는 위생관리 및 식생활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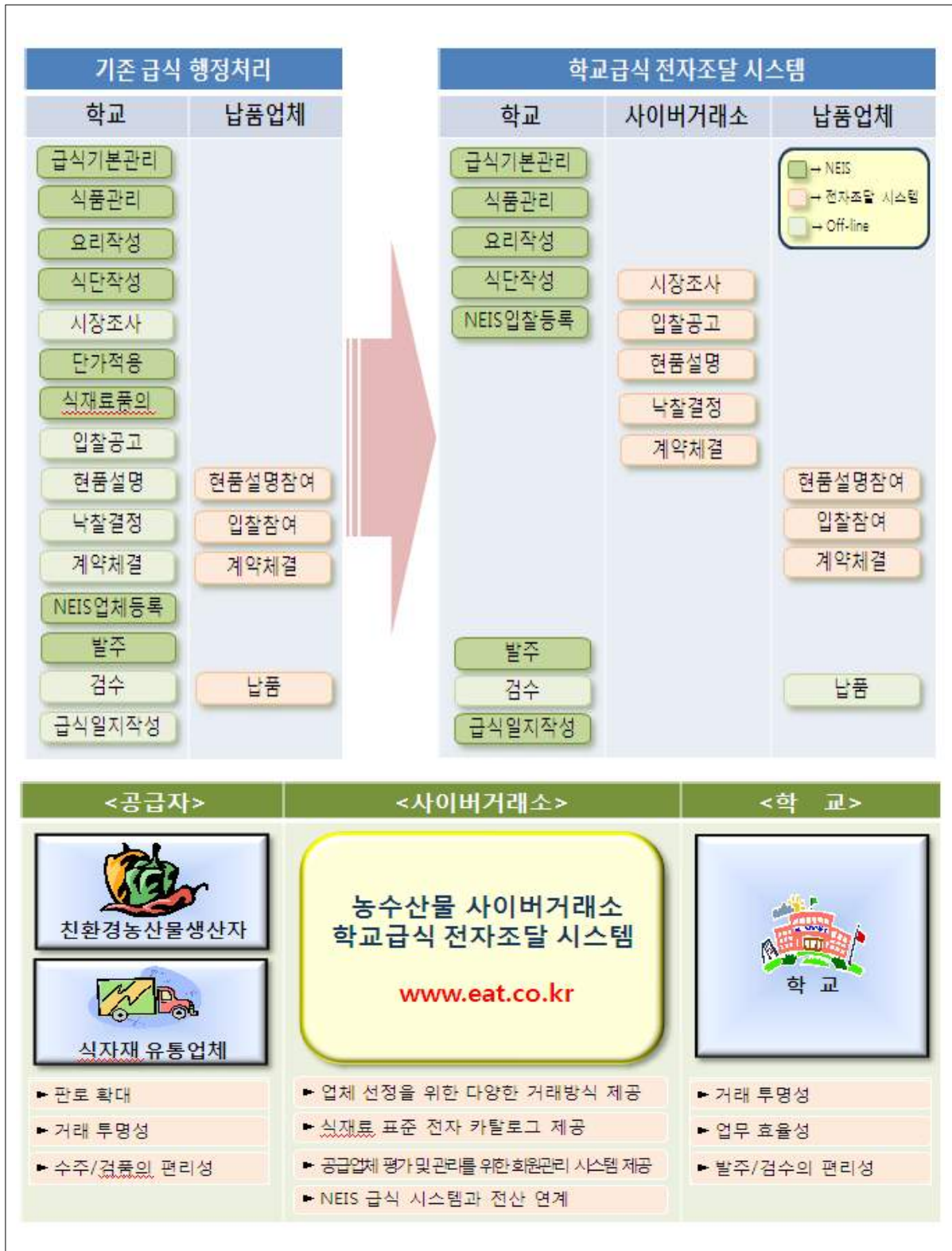
- 일선 학교가 계약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점도 있음
- 즉,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계약관련 업무를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제도내에서는 규모를 대폭 확장한 공동구매제가 검토되어야 함

#### [참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 2010년 4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학교급식 B2B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 발표
- 이는 2009년 1월 개소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의 꾸준한 활동의 산물로, 2010년 8월에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문을 열게 되었음
- 거래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 유통 활성화를 통한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으로 구매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
- 2012년까지 식재료 거래 1조원 규모(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38% 수준)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용 제도화 추진, 식자재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분쟁소지 사전예방 및 구매편의를 위한 식재료 표준 전자카다로그 구축, 정책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참조,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및 기대효과]



### 1.3. 수발주프로그램의 전산화

#### □ 수발주프로그램의 전산화 여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조달 및 발주시스템이 제외되어 있어 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이메일을 통해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학교급식 공급업체에서는 사업경험이 누적되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이를 자체 수발주에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 영세한 생계형 급식공급업체는 팩스 전송 등을 선호하기도 하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해 수작업으로 이를 수행하면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초기단계의 업체는 숙련기간동안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NEIS 급식시스템에 전산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전산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 식재료의 규격화, 표준화 촉진 필요

- 식재료의 규격화 및 표준화는 상당기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나 개선이 쉽지 않음
- 일반 단체급식의 경우 식단의 메뉴별 표준화로 수량만을 전송하는 방식까지 발전하였으나 학교급식은 품목코드 단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표준매뉴얼 보급 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의 협조가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해결방법이 표류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 품목에 대하여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표준 메뉴별 거래표준도 구축할 예정임
- 학교단위를 뛰어넘는 공동식단체, 공동구매제 등 식재료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1.4. 배송 물류 및 검수검품 기준

##### □ 학교로의 배송 물류

- 학교로의 배송 물류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임
- 오전 7시~9시 사이에 한정하여 매일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차량으로 1일 3~4개교 내외의 배송이 이루어짐
- 학교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전일 또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배송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정전사고, 품질관리 애로, 위생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음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함

##### □ 학교의 검품 및 클레임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아주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 공급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검품기준의 확립과 함께 학교 또는 영양(교)사의 성향에 따라 검품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임

- 공급업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마다 각기 다른 기준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서서히 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채택하는 것이 현실임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위학교로 배송되는 최종 물류시설에서 소분·피킹작업 전후 단계에서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 품온이상, 배송과정상의 품위저하 등의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질 및 규격, 중량에 관한 클레임은 최종물류시설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발하거나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문제임
- 즉, 학교에서의 최종 검수·검품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상태 불량 등 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단위에서의 동일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함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영양(교)사가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검품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학교단위의 클레임을 총괄하여 공급업체에 전달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은 교육청 단위에서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감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
- 브랜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단체의 식재료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역할 수행 사례 등을 준용하여 학교급식 검품에 적용할 수 있음
- 검수, 검품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나 담당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라

는 공익적 영역에 설치되어 객관적 기준을 갖고 운영될 경우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단위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고 공급업체의 착오를 수정하는 여유 시간의 발생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도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 지역 우수 농산물 확보

### 2.1. 우수 식재료의 현실적 범위 확대

- 우수 식재료가 친환경농산물에 국한되는 것은 문제
  -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영양균형과 성장 및 학습력 증대를 도모
  - 지방자치단체가 우수농산물 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체 사업을 설계하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차원에서 지자체의 인증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활용토록 유도
  -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그동안 농림수산물부 등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그러나 우수 식재료의 범위가 친환경농산물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 문제임. 일반적으로 표준규격품을 사용하고 우수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치우치는 것은 좀 더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임
  
-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증농산물 활용 증대
  - 친환경농산물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이 연중 고르게 공급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법상의 우수식재료기준에 제시된 것은 물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우수관리인증(GAP)농산물이 가장 가까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식재료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농산물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 로컬푸드(local food)실현으로 푸드마일리지 최소화

-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하여 소비함으로써 푸드마일리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수 식재료의 확보방안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생산-유통-가공-소비활동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효과 탁월
-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소비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생산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 교육 및 생태교육 효과가 있음
- 또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질병 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음

## 2.2. 생산자단체 육성 관점의 접근 필요

#### □ 학교급식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육성

- 생산자단체는 지역단위 농가조직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비영리적인 성향과 각종 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 유통시설의 활용으로 학교급식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교급식사업 전면에 등장

-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계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같은 생산자단체 육성 차원의 정책접근이 필요함
- 생산자단체를 급식사업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전문 역량의 축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관련 자금 및 시설운영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생산자단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의 특성을 살린 반복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사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 및 품질관리를 통한 클레임 최소화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
- 소지역단위의 생산자조직별 사업운영 및 관리감독체계를 확립
- 학교급식 식재료 품위에 맞는 재배기술 및 인증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재배의 안정화를 위한 출하약정관련 교육을 통한 사업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시장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 배양이 필요함



[ (사)클린팔당 출하회별 교육프로그램 사례 소개 ]

<< 팔당 친환경 농가조직화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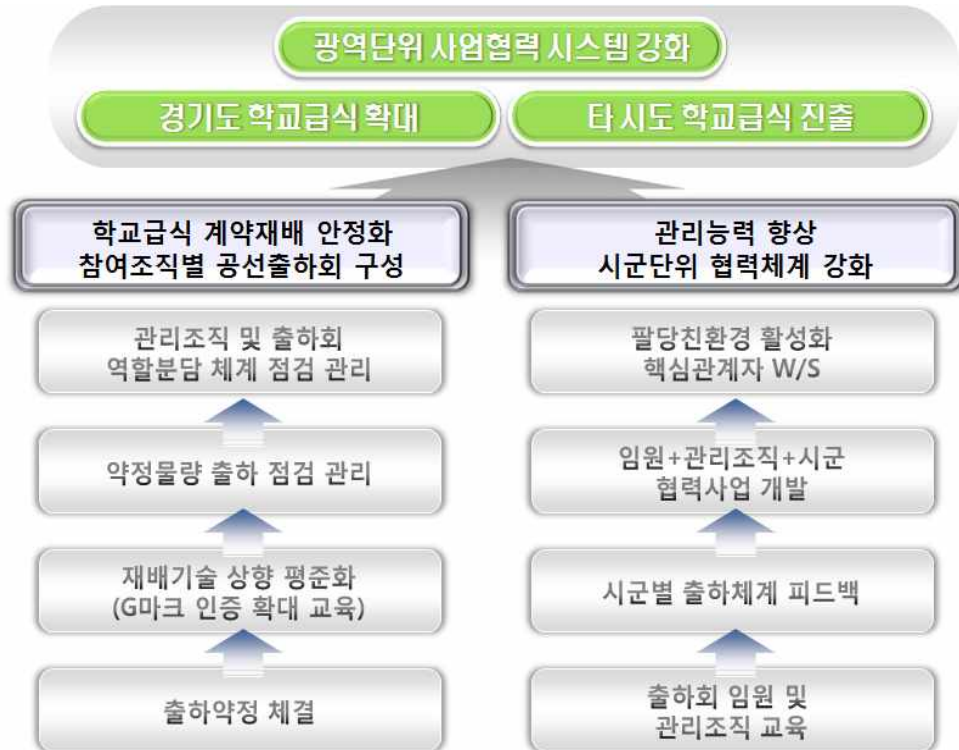


기조직된 농가조직(12개 출하회)과 신규 농가조직의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체계 안정화를 통해 강력한 팔당마케팅법인 중심의 계열화 실현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산지조직**

- 시군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시스템 및 품질관련 클레임 대응 체계 교육 및 관리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품위에 맞는 재배 기술 교육
- 학교급식 계약재배의 안정화를 위한 출하약정 관련 체계 구축 및 관리
- 시군별 협력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출하회 운영 및 관리 감독 체계 마련



#### □ 산지유통혁신 112운동 등 자발적 조직육성 확산

-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은 농협이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공선출하회 육성 및 연합사업단 활성화를 통한 산지유통에서의 역할 증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에게 안정적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협은 지역의 대표적 생산자단체로서 학교급식 사업에 공적인 역할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생산자단체 육성측면에서도 농협의 자발적 움직임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2.3. 주산 단지화와 계약재배의 실현

#### □ 품목별·지역별(주산지) 단지화

- 품목 및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시도차원의 거점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원물조달시스템 확립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류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품목별·지역별(주산지) 단지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확산은 물론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지역별 농산물 작부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 규모화와 단지화를 통한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은 거점유통 운영 및 거점유통시설간의 연계를 통한 활용도 증진도 가능하게 함

#### □ 계약재배의 활성화

- 지역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들로 하여금 농산물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 및 수익성 증대가 기대됨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주체로서 영리추구 성격이 강하지 않고,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확보도 가능함
- 특히, 대규모 시장에 비해 거래량이 분산적이며 우수 식재료의 공급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적은 물량의 변화에도 큰 가격 변동을 보이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됨

### 2.4. 공동구매제도 활성화 등 제도개선 뒷받침

#### □ 공동구매제도 활성화

- 지역 인근학교가 표준식단제를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물량에 대해 공동구매제도 운영
- 식재료 조달의 규모화로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단위로 격상함으로써 물류효율화 촉진
- 학교측면에서도 단위학교의 급식행정업무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한적 조건에서의 수의계약 허용

-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개별학교단위의 식재료 조달 및 계약 체계가 지속되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의 계약이 허용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증대와 함께 공급주체가 지역의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형식과 내용의 괴리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의 경우 일괄적인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유통시설 및 자금지원 지속

- 산지유통 정책은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대응 부문까지 그 폭을 넓히고 있으며, 농수산사업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 학교급식 사업에서도 우수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관련된 사업 뿐만 아니라 상품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등 농수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임

### 3.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효율적 공급시스템

#### □ 생산자단체와 학교간 직거래 활성화

- 농식품 식자재유통의 영세성과 다단계 유통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식품안전 사고발생 및 식품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지역단위의 학교와 생산자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
- 개별단위 학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와 배치되며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에 의한 기본적인 거래단위를 충족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와 학교간 직거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매개로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교별 구매계약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학교간 이루어지는 공동구매제도를 학교급식지원센터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 지역단위 표준식단제 운영을 통한 메뉴의 통일

- 구매계약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 식재료의 선정이며 이는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결정됨
- 현행 체계는 구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식재료의 선정도 개별 학교의 고유 업무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즉, 효율적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공동 식단을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지역을 일정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회전식 메뉴

를 운영하여 공급자의 안정적 식재료 조달에 도움을 주기도 함

-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학교급식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도한 물류비로 공급업체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임
- 지역단위의 공동식단은 식재료의 공동구매로 이어지고 이것이 농산어촌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지역공동체의 배려가 될 수 있음
- 식단의 공동구성은 구매계약 단계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식재료의 규격화<sup>22)</sup>도 이를 수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임

#### □ 학교로의 배송물류의 개선

-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임
- 특히 오전 7시~9시 사이는 교통 혼잡이 심한 시간대로 물류차량이 시내를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한함
- 학교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나 대형냉장고를 설치하고 전일 또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배송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정전사고, 품질관리에로, 위생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음
- 학교의 관리소홀 등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단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시설설치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접근이 가능함
- 소규모 차량으로 1일 3~4개교 내외의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22) 단체급식이 메뉴단위 발주(성인용 된장찌개 A형 200식)가 가능한 것은 표준화 외에 사전 약속에 의한 규격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즉, 학교의 경우 된장찌개의 주문할 때 영양(교)사별로 작성하는 레시피가 서로 다르고(표준화의 미흡),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규격이 달라(에호박, 반달썰기 1mm, 반달썰기 3mm, 사각썰기1\*1, 사각썰기 2\*2 등....) 효율성이 떨어짐

구조에서는 소규모 공급자가 오전 배송 후 오후에 다양한 곳에서 식재료 조달하기 위해,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만 적정효율을 이룰 수 있음

□ 유통비용에 대한 세부적 분석으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에서는 통합된 식품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급업체는 식품비를 세분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음
- 생산자가 수취하는 농산물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인 유통비용은 가공·소분·저장·운송·상하차·포장·감모 등 직접비용과 점포 및 시설유지관리비·인건비·접대비 등 운영비, 그리고 마진으로 구분
- 부피가 크고 규격화와 선도유지가 어려운 반면 무게와 부피에 비해 단위당 가격이 낮은 편인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유통비용이 많은 편이며,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에서는 유통비용의 절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마진이 제한되고, 시설비 지원 등으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직접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직접비용은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생산자단체가 직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제한된 식품비(가격)에서 원재료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함임
- 즉, 학교에서는 단일한 식품비로 인식하는 것을 생산자는 원재료비와 운송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직접비용이 줄어들 경우 가격을 인하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임

##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의 핵심기능



###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상 핵심기능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정의에서와 같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는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급식품 유통을 담당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체계 역할 수행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기능을 세분화하면 실무협의체 운영 및 관리, 식재료 수급 관리, 유통 수행 및 관리, 기타 실



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식교육, 공동식단체, 정책적 제안 등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기능도 포함시킬 수 있음

#### 4.1. 실무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원활한 학교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 및 관리 기능 수행
  - 학교급식 방향 논의, 공급주체 선정, 공급단가 결정 등 학교급식 사업부문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단계의 학교급식 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임
  - 협의체는 총괄 의사결정기구와 분야별 실무협의기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급식 실무협의기구로는 식재료 공급, 배송업체 및 유통주체 선정, 공급가격 결정 등이 기본적이며,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야 함

#### 4.2. 식재료 수급 관리

-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핵심
  -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 예상 소요량을 시기별로 파악하고,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와의 계약재배가 필수적임
  - 특히,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노력과 함께 관외 농산물 수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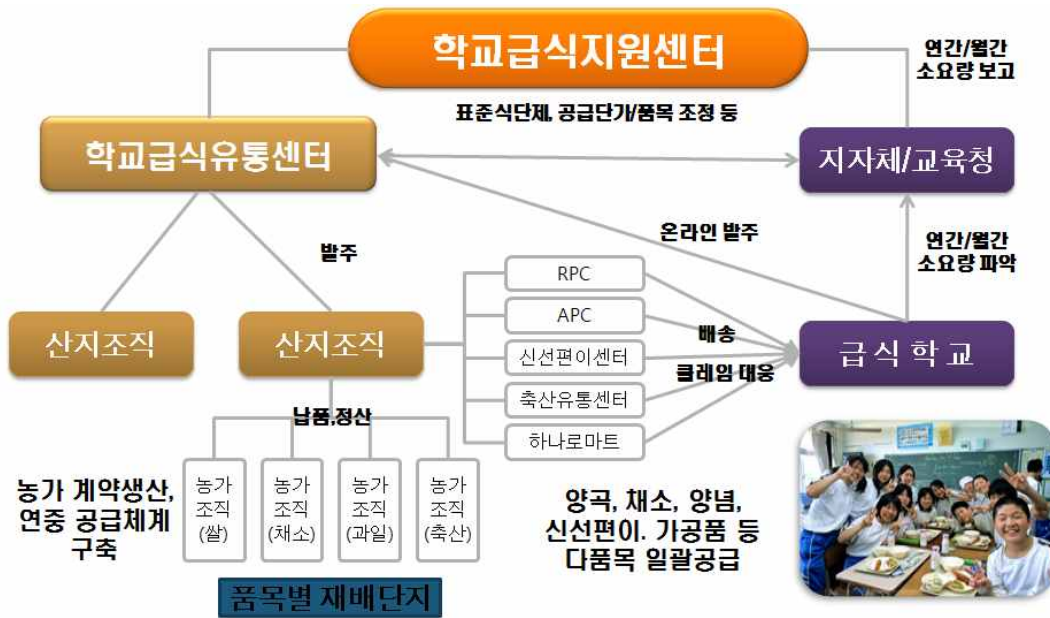
### 4.3. 유통 수행 및 관리

- 관내 생산자가 출하한 물량을 물류장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 또는 관리 기능
- 또한 원물에 대한 소분·포장·피킹 및 검수검품 등에 대한 직접 수행 또는 관리 기능
  - 학교급식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소분·포장·피킹 기능을 실행하고, 유통시설 입출고시 검수검품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함
- 급식품의 최종 목적지인 학교까지의 배송 기능의 직접 수행 또는 관리
  - 물류 시설에서 상품화 및 검수검품이 완료된 급식품을 최종 수요자인 학교까지의 마지막 물류에 대한 직접 수행 기능 또는 관리 기능 필요
  - 별도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철저한 관리기능 필요

### 4.4. 기타 실무 및 부차적 기능

- 기타 실무 기능으로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 및 정산, 클레임 대응 등이 있음
  -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 및 정산, 클레임 대응은 가급적 직접 수행 필요
- 그밖에 기능으로 식교육, 공동식단제, 정책적 제안 등의 기능도 수행해야 함
  - 식교육과 공동식단제는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학교급식 주요 이슈이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도 중요한 기능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기능 흐름(안)]



## 5.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학교 역할 및 과제

### 5.1.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 광역단위 학교급식 협의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학교급식 관련 모든 주체들이 참여, 조정과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단위 협의기구 활성화
  - 도내 기본계획에 의한 공통 사업 방향 설정 및 지원사업 진행
  
- 도내 시군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 도내 학교급식 지원체계, 지원품목, 지원방식 등 시군단위 학교급식 지원체계 설정 및 표준화
  - 도내 부족 농산물에 대한 전국단위 식재료 수급체계 구축
  
- 식재료 수급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시군단위 작부계획 수립 및 식재료 수급체계 구축
  - 타 광역단위 학교급식사업과 연계, 전국단위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 식재료 수급을 위한 핵심 사업주체 육성
  - 품질 중심의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주체 육성
  - 종합자금제 등 총괄지원사업 시행

- 도단위 수급계획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각 지자체별 사업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유통시설 개수 및 규모 산정
  - 거점 및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조정, 계열화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
  
- 농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 과일 및 채소류의 경우 시군단위 자급이 불가함에 따라 광역단위 사업시스템으로 통합·지원
  -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도단위를 초월하는 광역단위 수급체계가 이미 구축됨에 따라 광역단위지원 유지
  
- 관내 지역별 특화사업(시범사업) 발굴 및 육성
  -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광역사업체계에 안착
  - 시군단위의 특화사업 중 일반화가 필요한 사례의 전파

## 5.2.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 실질적 사업집행 단위로서 지역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 학교급식사업 주체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 분담
  - 학교급식의 공공성에 기반한 기준을 관련 제주체들과 공유
  - 학교급식사업 주체들에 대한 교육 기획 및 진행

- 시군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 광역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 식재료선정 및 계약 등 업무의 통합실행 기본단위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전략 시행 단위
  
- 광역단위 학교급식사업과 연계, 식재료 수급 네트워크 구축
  - 광역협의체계를 통한 시군별 작부체계 및 공급품목 등 협의
  - 광역사업과 연계,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 중심의 학교급식 수급주체 육성
  - 생산자조직의 적극 육성, 계약재배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또는 식재료 공급주체로 육성
  
- 시군별 특화사업 개발
  -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 향토음식개발, 체험활동 등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 실시
  
- 친환경 쌀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 관내 자급이 가능한 친환경쌀 중심의 학교급식사업 지원

### 5.3. 단위학교

#### □ 위생관리 및 식교육 강화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감독 기능 강화
- 식생활 교육 강화
  -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활태도 개선
  -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도
- 친환경 체험학습 진행
  - 지역단위 학교와 농업 생산현장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 □ 공동구매 및 공동식단제 참여

- 지역단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식재료에 대해 공동구매 추진
  - 공동구매제 활성화를 통해 학교단위 소규모 조달방식에서 지역단위 통합조달 방식으로 전환
- 권역별 공동식단제 운영
  - 지역내 권역별 공동식단제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물류효율화 및 공동구매 효과 증대

[주요 주체별 친환경학교급식 역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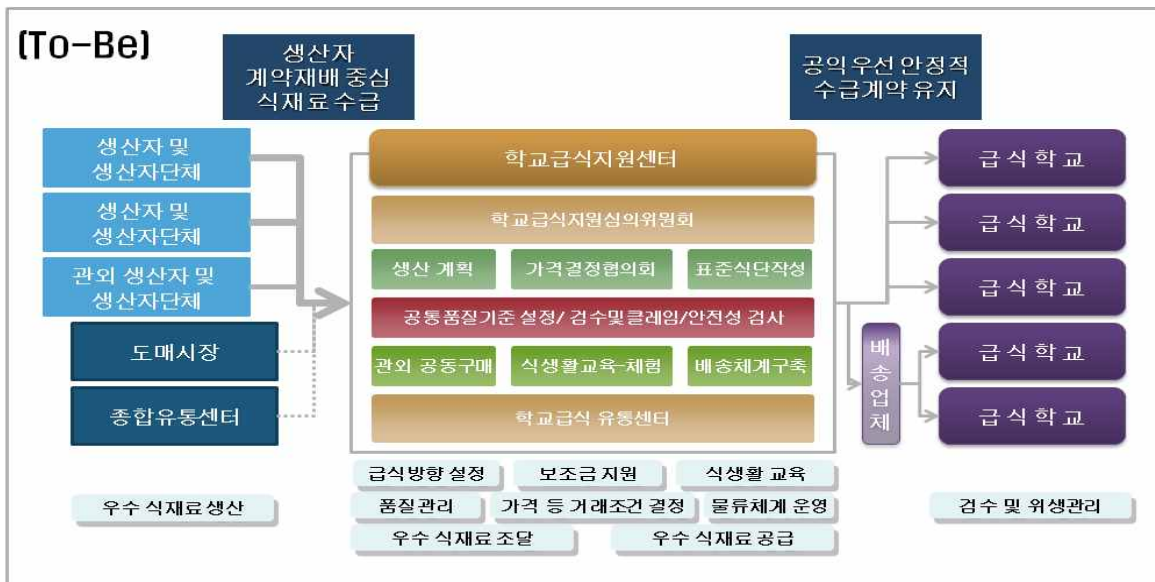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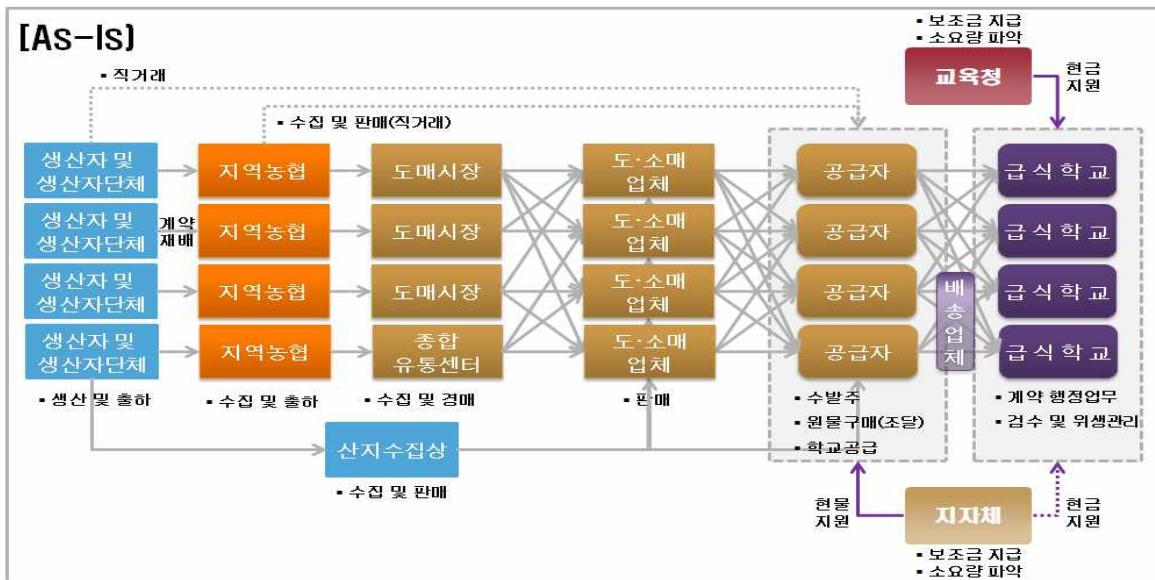
기 관	주 요 역 할
광역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단위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li> <li>-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li> <li>- 광역단위 식재료 수급을 위한 핵심사업주체 육성</li> <li>- 식재료 수급 전국네트워크 구축</li> <li>- 도단위 수급계획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li> <li>- 농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li> <li>- 관내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li> </ul>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단위 학교급식 협의체계 구성 및 활성화</li> <li>- 시군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li> <li>- 광역사업과 연계, 식재료 수급 네트워크 형성</li> <li>- 생산자단체 중심의 학교급식 수급주체 육성</li> <li>- 시군별 특화사업(특화품목, 향토음식, 체험활동 등)개발</li> <li>- 친환경쌀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li> </ul>
학교급식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협의체 운영 및 관리</li> <li>- 식재료 수급 관리</li> <li>- 유통 수행 및 관리(물량수집·소분·포장·피킹 및 검수검품, 직접배송 또는 배송관리 등)</li> <li>- 학교와의 계약, 수발주 및 정산, 클레임 대응</li> <li>- 식교육, 공동식단체, 정책적 제안 등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기능</li> </ul>
단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관리</li> <li>- 식교육 강화(식생활교육 및 친환경 체험학습 진행)</li> <li>- 공동구매 및 공동식단체 운영</li> </ul>



## 6. 농림수산물식품부 정책 제안

### 6.1. 사업방향 개선 모식도

#### □ 사업체계 변화



□ 사업체계 변화에 따른 역할변화



6.2. 농림수산물식품부 시행 사업 제안

□ 시도별 지역 식재료 연계 학교급식 공급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푸드마일 최소화 원칙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인증 등 인증 농식품 육성
- 시군>시도>관외 조달의 순서로 품목별 5개년 생산 계획 작성
- 지역단위 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포함
- 생산자조직 및 총괄 공급자 육성계획 포함
-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설치 및 운영 계획 포함
- 시도 단위의 총괄계획에 의거한 지역별 거점 조직 및 시설 운영 또는 계열화 방안 포함

- 자치단체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학교급식지원심의회 등 지역 협력기구의 교육 및 연수 지원
- 생산자 및 일선 학교 담당자 교육 및 연수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 광역 학교급식 공급조직 육성 종합자금 지원

-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사업 등을 준용하여 총괄공급자 등에 계약 재배 선도금 및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부처내 협의 필요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준용한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이용 지원 자금 지원
- 식생활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체험활동 등 학생, 영양사, 지역농업인 교육 및 홍보비 지원
- 2개 시·군 이상의 공급체계를 갖춘 거점조직에 지원
- 사업신청 및 평가에 의한 시범사업 실시로 사업효과 검증

□ 쌀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급식도입 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2007년)에 따르면 청소년(13세~19세)의 아침결식율이 36.9%에 달해 학교급식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아침급식은 영양상태의 증진과 학업태도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농식품산업적 측면에서는 1인당 8.74kg<sup>23)</sup>의 쌀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23) 아침급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쌀가공식품 중심의 간편식을 제공할 경우 1식당 44.6g의 쌀소비 가능. 44.6g\*196일 =8.74kg

- 학교의 시간 및 공간적 제약과 업무부담 가중, 비용부담, 메뉴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됨
- 사회적 기업, 노인 일감 갖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체계를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음

### 6.3. 전담조직 설치 및 부처간 협력강화 필요

- 학교급식은 규모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 인증농식품의 확대 등 사업적 측면에서도 상당하지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내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성과 위주로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농산물 및 농업생산, 산지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보다 규모화된 예산의 투입이 우선될 수도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기존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식생활교육기본법에 의한 협력체계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역단위의 실행구조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이 또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사업추진체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계약재배, 수급안정 등 산지유통활성화자금지원, APC 등 시설기반조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가조직화교육프로그램지원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 공모를 통한 자율 계획사업, 농식품인증사업 확대,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가 강화되도록 하여야 함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자금 형태의 독립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즉,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교급식 관련주체가 우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학교급식 영역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